

C2002-2 / 2002. 2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임 정 빈 부연구위원
이 재 옥 선임연구위원

연구 담당

임 정 빈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이 재 욱 선임연구위원: 연구참여

머리말

우리나라는 UR 협상결과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적절한 관세상당치나 개도국지위를 이용한 국내보조정책의 신축성 확보 등을 얻어냄으로써 나름대로 이행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WTO 체제에서 진행되는 농산물 협상의 기본 목표가 농업분야에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무역질서의 구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은 농산물 수입국들의 협상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고 농업부문의 이해와 직결되는 협상쟁점 중의 하나가 개도국지위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또한 지난 1996년 소위 선진국 모임이라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지위 졸업압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더 이상 개도국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농업부문은 국제경쟁력 미비와 구조적 후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들의 농업부문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향후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개도국지위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업분야가 향후 개도국지위를 재확보하기 위한 협상에 효과적인 대응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협상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결과가 관련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

2002.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목 차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범위와 방법	2
제 2 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분류 상황	4
1. 일반현황	4
2. 주요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기준과 현황	7
2.1. 국제연합(UN)	7
2.2. GATT/WTO	8
2.3. IBRD/IMF	12
2.4. OECD	13
2.5. FAO	15
2.6. 기타	16
3. 시사점	16
제 3 장 개도국지위 결정 기준의 변화동향	18
1. 고전적 결정기준	18
2. 현대적 결정기준	19
2.1. 현대적 결정기준의 도입	19
2.2. 신흥공업국가(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등장	21
2.3. 산업별·부문별·품목별 개도국지위결정의 필요성	22
2.4. GSP와 개도국지위	24
3. 시사점	25
제 4 장 한국의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여건변화	28
1. 국내외 여건변화	28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주요 지표의 검토	30

2.1. 개요	30
2.2. 경제적 지표	31
2.3. 비경제적 지표	34
2.4. 우리나라 농업여건의 낙후성	41
3. 시사점	44
제 5 장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46
1.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와의 관계	46
2.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48
제 6 장 GATT 및 WTO체제에서 개도국지위와 특별대우	51
1. 개도국 우대조치의 배경과 법적 지위	51
2. GATT 체제에서 개도국 우대조치	54
2.1 개요	54
2.2. GATT 제18조	55
2.3 GATT 제4부	56
2.4 권능부여조항	57
2.5 일반특혜관세제도	59
3.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60
3.1 개요	60
3.2 상품무역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61
3.3 서비스무역일반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68
3.4 지적재산권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69
3.5 분쟁해결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71
3.6 무역개발위원회	72
4. WTO의 개도국 분류기준에 관한 논의동향과 전망	72
제 7 장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방향	76
1.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일반적 평가	76
2. UR 이후 경제 상황 및 농업부문의 여건변화	77
3.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관련 대응논리	79
4. 주요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설득 노력	80

5. 조속한 국내 대응체제 마련	82
[부록 1] 환경관련 국제협약에서의 한국의 개도국지위	83
[부록 2] OECD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문제(요약)	84
[부록 3]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관련 OECD 문서 원문 해석	93
[부록 4] 다자체제하에서 최빈개도국 분류현황과 시사점	113
참 고 문 헌	137

표 목 차

제 2 장

표 2- 1 WTO에서 분류한 최빈개도국 및 식량순수입개도국 현황 (2001년 말기준)	11
표 2- 2 OECD DAC Lists	14

제 4 장

표 4- 1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한국의 협상여건의 변화와 대응책	29
표 4- 2 우리나라의 1인당 GNP 및 1인당 GDP	32
표 4- 3 주요 국가의 1인당 GDP(2000년 기준)	32
표 4- 4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비중	33
표 4- 5 주요국 GDP대비 농업총생산액*의 비중	33
표 4- 6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비교(1999년)	35
표 4- 7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별 순위	35
표 4- 8 주요 국가의 평균수명(남·여 평균)	36

표 4- 9	주요 국가의 영아사망률	36
표 4-10.	OECD 회원국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및 복지부문의 사회보장비 비율	36
표 4-11	국가별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비의 비율	37
표 4-12	주요 국가의 인간개발지수(1999년)	37
표 4-13	주요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구조* 및 노년부양비**(2000년)	38
표 4-14	주요 국가의 무역의존도*(2000년)	38
표 4-15	여성권한척도(1999년)	39
표 4-16	주당 근로시간(1999년)	39
표 4-17	보건서비스	40
표 4-18	교사 1인당 학생수	40
표 4-19	우리나라의 농가 호당 경지면적	42
표 4-20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생산액*	43
표 4-21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농가 가구당 조수입 및 농가부채	44
표 4-22	농가교역조건(95=100)	44
부표 1	우리나라와 유사국의 주요 경제지표비교(1999)	135

그 립 목 차

그림 4-1	농가 1호당 경지면적(ha, 1999년)	43
그림 4-2	주요국의 곡물자급률(% , 1999년)	45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1년 11월 9일부터 14일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21세기 국제교역질서를 관장하고 새로운 무역규범의 구축을 위한 뉴라운드 출범이 공식 선언되었다. 이에 따라 뉴라운드 출범과 관계없이 자동협상 의제(Built in Agenda)의 하나로서 이미 2000년 3월부터 진행되어 온 WTO 농업협상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뉴라운드의 일부로 본격적인 협상골격 마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WTO 농업협상은 과거 UR 협상과는 달리 이미 상당 수준 만들어진 협상골격하에 관세감축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그리고 국내보조의 재분류와 감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협상타결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UR 협상결과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적절한 관세상당치나 개도국지위를 이용한 국내보조정책의 신축성 확보 등을 얻어냄으로써 나름대로 이행약속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 UR 협상 당시 우리 나라는 농업의 취약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시장개방의 폭이나 이행기간에 있어 개도국 우대의 혜택을 받아 왔으며, UR 협상에서 확보한 우리 나라의 개도국지위는 실제로 지금까지 UR 농업협정을 비교적 원만히 이행해 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UR 협상 당시에도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더욱이 UR 이후 OECD에 가입하여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농산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압력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카타르 각료회의 선언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3년 3월까지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협상이 종료된 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각국의 시장개방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우리 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가 최대 협상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우리 농업이 새로운 WTO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다시 확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향후 협상 결과의 이행과 국내 농업에 미치는 효과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지위를 상실하고 선진국 지위로 협상결과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관세, 시장접근물량 확대, 국내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행약속 의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 순위가 높은 협상과제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 나라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논리와 전략개발을 통해 정부의 효율적인 협상추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측면 지원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범위와 방법

과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와 마찬가지로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일반적 정의 및 분류기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어떤 국가의 경제발전단계가 개도국수준에서 벗어났다고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은 해당국가 스스로가 자국의 지위문제를 결정하여 주장하는 것을 관례로 인정해 왔다. 다만 WTO는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각국의 통상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무역규범 및 이행약속 준수 등의 논쟁이 이루어지는 국제기구로서 상대국의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타 개도국에 비해 발전되고 실질구매력이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개도국지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는 외형적 경제발전규모나 실질적인 사회발전단계를 기초해 보더라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그 동안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해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나고 있어, 비록 농업분야가 취약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개도국지위를 통한 차등적이고 특혜적인 대우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WTO 농업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개도국지위에 관한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에 대한 우리 농업의 취약성 및 농업의 정치·사회적 중요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시장개방 속도 및 폭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가질 수 있는 개도국지위의 유지는 중요한 협상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WTO 차원에서 개도국지위는 종래와는 달리 좀 더 엄격한 조건과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개도국지위에 대한 대외적인 여건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도국 지위문제와 관련된 국제법적 성격, 그리고 다양한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 관행 및 기준,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유사국과의 경제 및 사회지표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개도국지위 유지를 위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서는 우선 개도국 지위와 연관되는 기존 연구보고서나 논문, GATT/WTO 문헌, 기타 국제법 및 국제기구(UN, UNCTAD, IBRD, IMF, OECD 등)의 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제 2 장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분류 상황

1. 일반현황

현재 국제법상 개도국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경제관계 내지 국제통상관계를 조정 및 규율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규정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며, 그 적용 또한 특정한 기준없이 관행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현재까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객관적 분류기준은 없으며, 주요 국제기구들은 기구 특성과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불리우는 국가들에 대하여 일률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단지 몇가지 객관적이고 계량가능한 경제지표만으로 판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계량적으로 산정가능한 일부 지표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은 일부 지표만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명확히 분류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과 국제적 합의는 없는데, 이것은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비경제적인 지표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그것들을 계량화할 수 없다는 한계도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¹⁾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이

1) Dr. Joachim Betz, Developing Countries, in: R. Wolfrum(ed.), United Nations: Law, Policies and Practices, Vol.1(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p.398.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이미 선진 산업화된 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게 있어서 국가의 발전 및 개발은 항상 진행형이며, 개도국들 간에도 경제 및 사회발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차이가 많으므로 개도국들을 일률적으로 분류하기에도 곤란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UN 체제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개도국이란 경제의 상당부분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개발상태에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며,² GATT 및 WTO에서도 개도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규정 없이 GATT 관행에 따라 개도국지위가 부여되는데 그치고 있다. 과거 GATT 체제에서나 UR 다자간 협상을 계기로 탄생한 현 WTO 체제하에서 개도국지위의 결정은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과는 관계없이 체약국이나 회원국의 자기선택에 대해 타 체약국이나 타회원국의 암묵적 동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최빈개도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은 명확히 분류되고 있다. 최빈개도국 문제의 중요성은 1964년 UN 무역개발회의(이하 UNCTAD)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며, 그 이래로 UN 총회는 일련의 결의를 통해 몇 가지 기준을 기초로 최빈개도국의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을 분류해 왔으며,³ 1971년 UN 총회는 개발계획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lanning)에 의하여 보고된 최빈개도국 명부를 처음으로 공표·승인하였다.⁴ 그 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인당 GNP, GDP대비 제조업비율, 산업고용비율, 1인당 전기소비량, 수출집약도, 신생아 사망률, 1인당 칼로리 공급량, 문맹률 등을 기준으로 최빈개도국을 선정하고 있다(2001년말 기준 49개국). 최빈개도국 선정지표 및 최빈개도국 지정은 3년마다 재검토되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UN에서 작성·공포하는 최빈개도국 명부를 필요에 따라 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GATT는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아니지만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을 통해 개도국을 두 가지 유형(초기 발전단계의 개도국과 일정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진 개

2)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1998, p.290.

3) A. A. Fatouros, Developing States, in: R.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1986), p.73.

4)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Vol.2, The American Law Institute(ST. PAUL, MINN.: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7), p.304. 이에 따라 UN은 최빈개도국 명부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최빈개도국의 지위결정은 UN의 최빈개도국 명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도국)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른 내용 및 수준의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있다.⁵ 이를 통해 간접적이거나 GATT 내에서의 개도국의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마찬가지로 많은 국제경제기구들 또한 선진국의 대개도국원조와 관련하여 편의상 몇가지 기준을 기초로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이상으로 개도국의 정의에 관한 국제법 및 국제사회의 관행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일반 국제법상 개도국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정의는 형성된 바 없다. 둘째, 다만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에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부 기준을 가지고 개도국의 범위가 개별적이며, 단편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셋째, 결국 어떤 국가의 개도국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성립된 지금까지의 관행은 ‘자기결정 또는 자기선택의 원칙’에 입각하여 타 회원국의 묵시적 동의에 기초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관련 당사국의 묵시적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국제법 이론상 개도국지위는 각국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발전 및 개발단계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도국지위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development)의 개념 및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발의 개념은 매우 복잡적이며, 개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많은 견해가 존재한다.⁶

통상적으로 개발의 개념과 성격은 한 국가와 그 국민의 물질적·경제적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그리고 정치적 발전의 총체적 의미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물론 1970년대 이후의 신국제경제질서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주권확립을 가장 중요한 개발의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⁷

개발도상에 있는 한 국가의 발전과 개발의 권리는 당연히 선진국과의 동등한 입장에서 개도국이 세계무역체제에 참여하는 권리와도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가간의 실질적 평등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5) GATT 제18조.

6) S. K. Chatterjee, International Law of Development, in: R.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1986), p.199.

7) 1974년 개최된 UN특별총회는 “신국제경제질서의 확립에 관한 선언(Declaration and the program of ac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를 발표하였는데, 모든 국가간의 주권평등, 상호의존, 공동이익 및 협력에 기초하여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문제해결을 위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경제자원 재배분과 기술의 대폭적 이전을 선진국의 도덕적 의무로 선언한 것이다.

하는 것은 좀 더 능력있는 국가와의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이 부족한 국가에게 유리하고 호혜적인 지위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의 능력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WTO를 포함한 모든 국제규범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발전배경을 갖는 국가들의 다양한 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제법상 개발은 매우 복잡적이며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특히 경제 및 사회적으로 발전도상에 있는 개도국의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개발의 개념은 일률적인 경제적 지표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치적·역사적인 배경 등이 충분히 고려된 복합적인 기준을 통해 비로소 정확히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개도국의 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국제기구의 개도국 분류기준과 현황

2.1. 국제연합(UN)

UN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개도국, 선진국, 고도선진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도국 또는 개발도상국이라 함은 국민총생산(GNP)과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나 경제의 상당부분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미개발상태에 있고, 국민의 대다수가 매우 가난한 상태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1963년 UN에 의하여 마련된 최초의 개도국 명부와 1973년이래 갱신된 개도국 명부는 모든 선진국들을 열거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개도국으로서 분류하고 있다. UN은 또한 1971년의 총회결의를 통해 최빈개도국 명부를 작성한 바 있다. 당시 최빈개도국 명부에 포함되기 위하여 고려되었던 기준으로는 1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1인당 GNP,⁸ GNP 대비 10퍼센트에 미달하는 제조업생산비율, 20퍼센트에 미달하는 15세 이상 국민의 교육비율 등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당시에는 25개국이 최빈개도국으로서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그 숫자가 49개국으로 증가하

8) 현재는 800달러임(외교통상부, WTO개황(2001)).

였다.

한편 UNCTAD는 선진국 분류표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나 그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⁹ UNCTAD가 제시하고 있는 소위 선진시장경제국가(Developed Market Economy Countries: DMEC)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U 및 EFTA국가, 일본 등이 포함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개도국들은 UNCTAD 내의 개도국모임인 77그룹의 회원국이며, 동 그룹의 회원국수는 오늘날 130개국에 이른다. 한편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77그룹의 정식회원국이었다가 1996년 12월 OECD 가입을 계기로 77그룹에서 이탈한 이래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옵서버(observer)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¹⁰ 따라서 UN체제에서 개도국은 최빈개도국을 포함하여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국가를 의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2.2. GATT/WTO

GATT에서의 개도국지위의 결정 역시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과는 관계없이 체약국의 자기선택에 대한 타체약국의 묵시적 동의에 입각하고 있다.¹¹ 이에 관한 GATT의 관행은 1964년 제1차 UNCTAD 회의에서 형성된 개도국들의 비공식그룹인 이른바 77그룹의 회원가입방식인 자기선택(Self-Selection) 및 신규회원선출(Co-operation)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즉 신규회원국이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면 77그룹의 의장이 그룹참여를 요청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위가 부여된다.¹²

이에 관한 일반적인 GATT(18조 4항 a) 규정은 “경제가 오직 저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최빈 개발도상국으로서 일정한 특별대우를 부여하고 있다.¹³ 또한 GATT 18조 4항 b의 규정은 “개발도상에

9) 1964년에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국제무역과 개발에 관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유엔보조기관으로서, 개도국들은 동 기구를 통해 1974년 5월과 1974년 12월 ‘신국제경제질서수립에 관한 유엔선언’과 ‘국가의 경제적 권리·의무헌장’을 각각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하게 하였다.

10) 1964년 제1차 UNCTAD회의에서 아시아·아프리카국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국가가 공동으로 77그룹(Group of 77)을 창설하였으며, 최초 77개국에서 현재 130개국 이상으로 회원국이 확대되었다. 이 모임은 특정 기구는 없지만 UNCTAD 총회 등 국제적 회의에 대비하여 각료회의를 열고 개발도상국의 의견조정, 선진국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요구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11) 최승환, op. cit., pp.290-291

12) Ibid., p.290.

있으나 앞서 언급된 최빈 개발도상국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 제시 없이 일정 정도의 특별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GATT 규정상의 개도국 분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18조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국가의 경제상태, 생활수준, 개발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관행상 GATT는 통상협정으로서 개도국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생활수준 이외에 수출능력을 중시하고 있다.¹⁴

그런데 이러한 개도국의 지위결정에는 ① 예외적으로 일국의 주요 수출품에 유리한 일시적인 요소들이 아닌, 오로지 통상적인 사정만이 고려되어야 하며, ② ‘개발의 초기단계’라 함은 1차 생산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산업화의 과정이 진행된, 어느 정도 발전된 체약국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함을 단서 규정을 통해 추가하고 있다.¹⁵ 그러나 이 역시 객관적인 결정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GATT는 전술한 개도국에게 인정되는 특별대우와 구분하여, 개발도상에 있는 체약국¹⁶에게 인정되는 우대조치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 모두 개도국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한편 GATT는 최근에 와서 1인당 GNP, 무역규모, 국제수지상황, 산업의 국제경쟁력 등의 객관적인 경제지표에 의해 일부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졸업’ 개념을 도입하여 선진국에 상응하는 권리·의무를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다.¹⁷

WTO 협정 내에서는 개도국 분류에 대한 특별규정은 없으나, 1994년 UR 협정에서 체결된 다수의 협약에서 개도국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관련된 개도국지위는 당사국 자신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¹⁸ 이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이 이의를

13) GATT 제18조 제4항. 본 규정은 ‘less-developed countries’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최빈 개도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14) 서헌제, 국제경제법-국제통상·통화규범, 1998, p.758.

15) GATT 1947 부속서 I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해석서. *Restatement of the Law*, op. cit., p.304.

16) 즉 그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으나, 오로지 낮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국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국가. 제18조 제4항 ⑥.

17) 서헌제, op. cit., p.758.

18) 특히 UR 농업협정은 농산물무역과 국내정책개입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 및 원칙들을 수립하면서, 개도국들의 특별이익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이행의무를 경감시켜주고 있는 등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였는데, 이때 각국은 선진국, 개도국 또는 최빈 개도국으로서 그들의 지위를 스스로 결정하였다. USDA-ERS, 개발도상국과 WTO 차기농산물협상, 국제식량농업 제41권, 제3호(1999. 3), p.7.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¹⁹ 이러한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WTO 회원국 중에서 지난 UR 농업협정에 기초하여 작성된 국내보조 양허계획서상 선진국 기준으로 감축 약속이행을 제출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남아공 등 13개국이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지위로 국내보조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WTO 통계국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별 분류에서 선진국은 EU 회원국(15개국), EFTA(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회원국,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WTO 회원국 기준으로는 10개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WTO체제 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분류가 모호한 실정이다.

다만 WTO에서도 최빈개도국(less developed countries)은 명확히 분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UN에 의해 지정된 최빈개도국 명부를 이용하여 최빈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으며, 협정문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으로 최빈개도국을 선정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정하고 있는 WTO 보조금협정에 관한 제7부속서는 협정상 우대조치를 적용받을 개도국의 기준으로, 우선 최빈개도국은 UN에 의해 지정된 국가를 언급하고 있으며, UN에 의해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당시 1인당 GNP가 1,000달러 이하인 국가로서 볼리비아, 카메룬, 콩고 등 20개국을 추가로 최빈개도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다만 세계은행의 1인당 GNP 자료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선정된 국가들의 연간 1인당 GNP가 1,000달러에 도달하면 일반개도국의 적용규범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UR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농업부문에서의 최빈개도국들(LDCs)과 식량순수입개도국들(NFIDCs)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마라케쉬 결정²⁰ 사항의 일환으로 1996년에 WTO 농업위원회가 최빈개도국과 식량순수입개도국에 포함될 국가를 선정한 바 있는데, 최빈개도국은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당시 선정된 48개 개도국을 언급하고 있으며, 식량순수입개도국은 대표적인 기간동안 기초식량에 대한 순수입국인 개도국으로서 바베이도스, 코트디브아르, 도미니카공화국, 이집트, 온두라스 등 16개국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농업협정 16조(최

19) 이창재,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문제,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부록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1, pp.351-352.

20) 공식명칭은 ‘농업개혁프로그램이 최빈개도국들과 식량순수입국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관련된 조치에 관한 결정.’

주: 3년 마다 평가되는 UN 최빈개도국명부상 현재 총 최빈개도국 수는 49개국임. 한편 UN 명부상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된 세네갈은 현재 WTO 농업위원회가 발표한 식량순수입개도국에도 포함되어 있음.

2.3. IBRD/IMF

개도국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대외원조와 관련하여 IBRD와 IMF는 다양한 형태의 수혜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단계의 경제개발수준을 개도국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IBRD는 일반적으로 1인당 GNP에 근거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으며,²¹ 개도국을 다시 저소득국가(1인당 GNP 610달러까지), 중소득국가(1인당 GNP 610달러에서 7,620달러사이), 그리고 선진국을 고소득국가 및 고소득 원유수출국(1991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소득 개도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1997년과 1998년 1인당 GNP는 각각 10,307달러 및 6,823달러(P) 기준).

이와 아울러 IBRD는 심각한 부채를 안고 있는 낮은 소득(SILICs) 및 중간소득(SIMICs)국가들을 분류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기준은 1) GNP 대비 부채비율(50% 이상), 2) 수출 대비 부채비율(275% 이상), 3) 수출 대비 채무지불 비율(30% 이상), 4) 수출 대비 이자지불 비율(20% 이상) 등이다.²² 그리고 IMF는 경제통계와 분석을 위한 목적으로 GDP 규모, 실업률, 대외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진국, 개도국, 시장경제전환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한국은 많은 자료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²³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몇몇 자료에서는 한국이 선진경제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컨대 매년 발간되는 'World Economic Outlook'에서는 국가들을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 1999년 현재 28개국),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1999년

21) OECD, OECD Statistics, Development Co-operation, DAC Lists, OECD/DAC Statistical Reporting System, DAC Country Lists; Aid to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DAC Lists, The DAC List of Aid Recipient(A Definition). <http://www.oecd.org/>

22) Dr. Joachim Betz, op. cit., p.404.

23) 서헌제, op. cit., p.759.

현재 128개국), 전환기 국가(countries in transition: 1999년 현재 28개국)의 주요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세 그룹은 또 각각 세부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선진경제국에는 주요공업국(major industrial countries: 소위 G-7 국가), EU 구성국(15개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cs: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되고 있다.²⁴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신흥공업경제국으로서 선진경제국 그룹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일정한 경제적 또는 기타 엄격한 기준에 의거한 것이라기 보다는 적절히 의미있는 통계수치를 제공해줌으로써 분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이러한 분류에서 누락된 국가도 있다.²⁵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선진국으로서가 아닌 신흥공업국 그룹의 일원으로 선진경제국 부류에 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 주요 선진공업국, EU 구성국 및 홍콩, 싱가포르, 대만과는 여러 가지 관련 지표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흔히 비견되는 그리스, 포르투갈, 이스라엘 등이 같은 선진공업국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특히 그리스, 포르투갈은 EU 및 OECD 구성국으로서 선진경제국 그룹에 속하고 있고, 멕시코, 터키는 OECD 회원국으로서 개도국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 분류는 매우 상대적임을 알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국제자본시장 등과 관련한 통계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지역의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과, 유럽지역의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등과,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과, 중동지역의 이스라엘 등과 함께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²⁶

2.4. OECD

OECD는 현재 EU 15개국, 여타 유럽 3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미

24) IMF,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October 1998(IMF: Washington, DC), pp.159-176.

25) Ibid., pp.159.

26) IM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Developments, Prospects, and Key Policy Issues(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September 1998, pp.188-189.

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전환기 시장경제이행 4개국(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한국, 멕시코, 터키 등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OECD에서는 일단 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를 개도국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 OECD의 가입사실을 선진국으로의 진입기준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에 관한 절대적인 합의나 기준은 없다.

경제발전의 도상에 있는 여러 지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OECD는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를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DAC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조공여에 대한 내부적인 상호심사를 하고 있다. DAC의 개도국명단은 공적개발원조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일부 국가는 이를 원조대상국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OECD에서의 ‘개도국’(developing country)이란 DAC 원조수혜국 명단의 Part I²⁷⁾에 속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1999년까지 우리나라는 DAC List Part I에 속하면서 1995년 기준 고소득국가(1인당 GNP 9,385달러 초과)로 분류되었으나 2000년 1월 1일부로 동 명단상의 Part II로 분류되었다.

표 2-2 OECD DAC Lists

Part I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Least Developed Countries	-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P<\$760 in 1998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P \$761-\$3,030 in 1998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P \$3031-\$9,360 in 1998
		High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P>\$9,360 in 1998
Part II	Countries and Territories in Transitio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New Independent Stat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More Advanced Develop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주: 1) 우리나라는 현재 Part II의 선진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음.

자료: OECD, DAC Lists of Recipient Countries 2001, 1월 기준 <http://www.oecd.org/>

27) OECD, OECD Statistics, DAC Country Lists, op. cit.,

DAC List에 의해 원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 캐나다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아메리카 국가들, 일본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 및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오세아니아 국가들이다. 유럽에서는 알바니아, 사이프러스, 지브롤터, 그리스, 말타, 터키 및 유고가 원조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DAC List는 2001년 현재 186개 국가들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데, 그 중 Part I에 분류된 국가는 152개국이며, Part II로 분류된 국가는 34개국이다.

OECD 30개 회원국 중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정책 및 사업을 검토하는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DAC 회원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에 대해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이면서 DAC 비회원국은 아이슬란드, 전환기 시장경제 이행 4개국, 한국, 멕시코, 터키 등 8개국이다. 이 중 멕시코, 터키는 전통적으로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그룹인 Part I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와 한국은 일반 전환기 시장경제이행국보다 발전된 개도국 그룹인 Part II에 속하고 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의해 2000년 1월부터 우리나라가 Part I 으로부터 Part II 국가로 이행됨에 따라 한국은 DAC 통계상 ‘개도국’(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OECD의 DAC 통계는 Part I에 속하는 국가만을 개도국으로 간주하면서 Part I 국가에 대한 원조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부르는 반면에 Part II 국가에 대한 원조는 OA(official aid)로 부른다. 그러나 통계목적상 원조대상국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DAC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Part II 국가로 이행되었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선진개도국으로 분류되었을 뿐이다.

2.5. FAO

FAO는 각국 농산물의 생산과 분배의 능률개선, 영양수준의 향상, 농민의 생활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UN의 전문기관으로서, 특히 국제 및 각국의 농업부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기구에서의

지위는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지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FAO는 통계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들을 선진국과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각종의 통계자료를 통해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식량 농업관련 지표에서는 식량수입개도국(food importing developing country)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93개국이 개도국목록에 포함되어 있다.²⁸ 이밖에 FAO가 자신의 효율적인 활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작성·발표하고 있는 다양한 통계목록에서도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 터키, 멕시코, 말레이시아, 브라질, 칠레,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²⁹ 이는 특히 식량·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지위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6. 기타

소위 세계은행(World Bank: IBRD)그룹의 하나로서 저소득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개발금융기구로 설립된 국제개발협회(IDA), 개도국에의 민간직접투자의 촉진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는 각각 자신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회원국을 선진국을 주축으로 한 제1부국(Part I Countries)과 개도국을 주축으로 한 제2부국(Part II Countries)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분류에 따라서 출자금 및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투표권 등에 있어서 차등이 두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제2부국에 소속되어 있다.³⁰ 한편 1994년 11월 APEC 내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관해서 한국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였다.³¹

3. 시사점

개도국의 정의 및 그 결정기준은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관행상 자신의 설립목

28) FAO(1997), "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towards 2010."

29) FAO STAT(1999)의 자료: FA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개도국의 농업발전, 교역 및 식량안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 국제식량농업, 제41권 제9호(1999. 9), pp.17-19.

30)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8, pp.75-92.

31) 이창재, op. cit., pp.351.

적과 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도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정의 및 기준은 도출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개도국지위의 결정기준으로는 당사국 스스로의 개도국선언과 각 국제기구가 내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1인당 GNP와 같은 단편적인 경제지표만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개도국지위의 결정기준에 있어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이고 비교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새로운 지침(guideline)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국제기구가 관행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다면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는 않으며, 고소득 또는 선진 개발도상국으로서 광범위하게 개도국의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각 국제기구의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따른다면 개도국지위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지위는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현재 선진국으로서 인식되기에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OECD 가입과 77그룹 탈퇴 이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개도국지위에 대한 대외적 졸업압력이 한층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지위가 해당국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라고 해서 국내총생산(GDP) 및 교역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포괄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개도국지위 유지를 계속 주장하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인당 GNP가 1만달러 수준에 달하였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농업부문의 낙후성 등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여러가지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해 볼때,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는 분야별로 완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문제는 앞으로 국제사회 혹은 WTO 협상의 장에서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제 3 장

개도국지위 결정 기준의 변화동향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근거이자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표준은 전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결정 또는 자기선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선 최소한 관련 당사국의 묵시적 동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객관적 표준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도국의 정의 및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일반국제법규범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개도국의 지위를 결정하는 표준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매우 다양한 내용의 기준이 제시되는 등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마찬가지로 관련 국제기구들도 어떠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각자의 고유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편의상 나름대로의 기준에 기초하여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1. 고전적 결정기준

사실상 개도국분류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1인당 GNP 기준이다. 관련 국제기구들 또한 동일한 방법에 따라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는데, IBRD와 IMF 및 OECD는 모두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고 있다.³² 즉 GATT 제18조 제1항과 관련한 패널, UN, 세계은행 그룹, OECD의 DAC, 국제개발협회(IDA) 등은 1인당 GNP가 일정 수준 이하인 국가를 저개발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GSP 제도 운영에서도 주로 1인당 GNP나 무역규모, 제조업의 국제경쟁

32) Dr. Joachim Betz, op. cit., pp.398-399.

력 등을 고려하고 있다.³³⁾

개도국에 대한 명칭 역시 역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전통적으로는 개도국과 관련하여 빈곤국(poor countries) 또는 후진국(backward countries)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으며, 1940년대 후반에는 저개발국(underdeveloped countries)이라는 명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50년대에는 미개발국(less developed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현재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용어사용의 다양성은 ‘경제적 발전’이라는 중심적 문제의 관념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³⁴⁾ 따라서 현대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개념에 있어서 단지 일정 단계에 있는 상태의 관념(developed)이 아닌 진행성, 연속성, 계속성(developing)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과거 GATT 패널은 1인당 GNP를 주요한 근거로 개도국지위 여부를 판정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958년 GATT 제18조에 따라 1955년 기준 1인당 GNP(128 달러)와 단지 GNP의 10%에 해당하는 제조업비율을 가진 스리랑카의 개도국지위를 인정하였다. 세계은행이 개발원조금공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를 결정하는데 채택된 객관적 기준 또한 1인당 GNP이다. 한편 국제개발협회(IDA)도 1인당 GNP 기준을 신용대출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다만 IDA는 이 밖에도 인구규모, 채무지불능력(신용등급) 등과 같은 부가적인 표준도 사용하고 있다.³⁵⁾

2. 현대적 결정기준

2.1. 현대적 결정기준의 도입

실제적으로 일국의 경제개발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가장 편리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표준은 당해 국가의 1인당 GNP이긴 하나, 이러한 기준은 매우 가변적인 국가통계수치, 국별 비교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절대적으

33) 서헌제, op. cit., pp.757-758.

34) A. A. Fatouros, op. cit., p.71.

35) Ibid., p.73; Restatement of the Law, op. cit., p.304.

로 적절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우며, 심지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경우에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할 것이다.³⁶ 따라서 현재에는 1인당 GNP 기준만을 가지고 개도국을 분류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기타 당해 국가에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동원하여 개도국지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에는 전통적으로 채택되어 온 단편적인 분류기준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적 지표와 함께 사회적·정치적 개발지표가 종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UN 개발계획(UNDP)은 1인당 GNP와 평균수명, 문맹률, 교육수준, 일국내에서의 여성과 아동의 지위, 사회적 기반(infrastructure)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인간개발지수(indices of human development)를 개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UNDP는 일국이 개도국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인간개발의 기준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유럽,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일본을 제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싱가포르 등과 같이 비교적 높은 1인당 소득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을 개도(developing)국으로서 분류하고 있다.³⁷

결론적으로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개도국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단순한 2분적 기준 및 분류방법 대신에 각 국제협약이나 국제기구의 목적에 맞게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하겠다. 이렇게 개도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분류하였을 때, 개도국 상호간에 증가하고 있는 개발정도의 차이는 개도국들간의 개발수준의 차이일 뿐이지 개도국의 단계를 넘어 전통적인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왔던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상당한 개발수준을 달성한 국가들 역시 기존의 선진국들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개도국들과 공유하는 바가 더 많으며, 또한 역사적으로도 기존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개도국의 개념 및 구체적인 범위는 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세분화되어 왔으나, 전통적인 선진국의 범주는 거의 변화없이 결정적인 것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므로 기존의 개도국을 새로이 선진국으로 재분류하여 선진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인 것이다. 특히 규범의 문제에 있어서 특정 주체에게 권리를 부여할 때보다는 의무를 부과할 때

36) A. A. Fatouros, *ibid.*, p.72.

37) M. J. Trebilcock & R. Howse, *Trade and Developing Countries*, in: Robert Howse(ed.), *The World Trading System*, Vol. I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8), p.227, Note.1.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2.2. 신흥공업국가(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의 등장

신흥공업국가군은 대개 중소득국가들과 중복되고는 있으나,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에 관한 소득 내지 기타 다른 지표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다. 그러므로 신흥공업국가의 성격 및 관련 지표는 자료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신흥공업국가라는 용어는 이미 전통적인 개도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산업화과정을 겪었던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이러한 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률, 산업부문의 역동성, 수출 드라이브 정책 및 전체 수출중 높은 공산품 비율이라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은 상대적이며 이론적으로도 확립된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신흥공업국가를 개념화하기 위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데, 농업구조 및 생산잠재성, 경제통합과 동질성, 그리고 사회적 성숙과 국제경쟁력 등이 개념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일반적으로 신흥공업국가에는 브라질, 멕시코, 대만, 홍콩, 한국 및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유고 등이 포함되고 있다.³⁸ 선진국들의 이들 선발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미국, EU 등의 개방압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앞으로의 구매 잠재력을 감안할 때 신흥공업국가 시장의 상업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공업국가들은 그 성격상 선진국은 분명히 아니며, 그 발전 단계에 기초하여 단지 개도국들 중에서 특수한 지위에 있는 국가들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철강,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신흥공업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개도국지위를 항구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받기는 어려운 처지이며, 국제사회의 개도국지위 졸업압력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는 앞으로 우리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는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의 확립과 국

38) Dr. Joachim Betz, op. cit., pp.403-404.

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위해서도 능동적인 협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대내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우리경제는 많은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압축 경제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여러가지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파생시켜 왔다.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업부문이 낙후하였으며, 지역격차가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발전도 크게 위축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과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모든 분야에 걸쳐 개도국지위를 졸업한다면 급속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현실을 감안해 볼 때, 개도국 지위의 졸업문제는 분야에 따라 완급이 필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대내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3. 산업별 · 부문별 · 품목별 개도국지위결정의 필요성

개발의 단계에 있어서 각 개도국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어느 한 개도국 내에서도 산업에 따라서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상 개발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소위 압축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 온 대부분의 개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특정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낙후된 산업부문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특히 빈약한 품목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대표적인 부분은 농업부문으로서 특히 대부분의 농산물에 있어서 아직도 대외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채, 농촌경제구조는 상대적으로 선진국수준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개발 및 개도국 관념으로 볼 때 이러한 개발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국의 산업과 품목별로 개도국지위를 각각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한편 1989년 1월 15일 한국 정부는 GATT 제18조국 졸업 및 제11조국 이행을 결정, 동년 6월에 GATT에 통고함으로써 GATT의 국제수지위원회는 1989년 10월 27일 GATT 제18조 B절에서 한국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1990년 1월 1일부터 국제수지방어를 이유로 한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국가(GATT 제18조 B국가)에서 졸업하되, 우리나라의 잔여수입규제품이 주로 정치적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농축산물인 점을 감안하여 1997년 7월까지 8년간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우리나라에 부여하였다.³⁹⁾

이처럼 개도국지위결정의 중요한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GATT 제18조국 졸업절차에 있어서도 농산물 품목과 같이 특히 기존 개도국의 일정 부문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일국의 산업부문과 특정 품목별로 개도국지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면에 있어서 IMF 금융위기가 현실화된 지난 1997년을 전후로 하여 농업부문지표는 상대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또한 그 여파로 여전히 많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기존의 개도국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의 졸업문제도 현단계에 있어서 그 발전수준 및 경쟁력 확보를 기준으로 각 산업별, 부문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가입 당시 농업 및 기후협약부문에서 일정기간 개도국 유지의 필요성을 천명하여 승인 받은 바 있다⁴⁰⁾.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와 1인당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OECD뿐만 아니라 특히 WTO 등 국제사회로 부터 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졸업압력은 증대될 것이 분명하다.

향후 개도국지위의 상실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부문은 무엇보다도 농업부문이다. 앞으로 WTO 농업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문제는 우리 농업의 취약성과 농업의 정치사회적 중요성을 감안 할 때,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과제이다. 이외에도 환경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위문제도 큰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계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수요증가라는 상황에 비추어,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는 기후협약에서 상당기간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OECD 가입시 천명한 대로 농업과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개도국 지위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받기 위한 대응책 마련과 설득 논리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39)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7, p.741.

40) OECD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각기 1996년 8월과 9월 농업부문과 환경분야에 대한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 입장을 수용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2.4. GSP와 개도국지위

일반특혜제도(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이하 GSP)는 개도국의 수출신장과 공업화 및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 등의 상품에 대해 보상없이 최혜국대우에 따른 관세율보다도 더 낮은 저율의 관세 내지 무관세를 부과하는 일방적인 특혜제도를 말한다.⁴¹ 따라서 GSP는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해 일반적·무차별적·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국제무역에 있어서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⁴² GSP는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principle)의 예외로서 개도국의 일부 수출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특혜관세제도는 개도국 상품의 대선진국 시장접근기회 확대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SP 제도도 선진국들의 재량에 의하여 대상품목이 제한되었으며, 수차례에 걸친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통해 일반관세가 인하함에 따라서 특혜폭(the margin of preferences)이 감소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중이다.

선진국의 대개도국 원조조치의 하나로서 UNCTAD에서 달성된 합의를 기초로 일단 GATT의 의무면제조항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GSP는 1979년 11월 28일 동경 라운드(Tokyo Round)에서 채택된 ‘대개도국 특별대우에 관한 결정’의 권능부여조항에 따라 정식제도화 되었다.⁴³ 이러한 GSP는 특혜관세라는 수혜조치가 일정 기준을 구비한 모든 개도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일방적인 특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⁴⁴ 그러므로 개도국지위의 결정과 특혜관세부여의 구체적 기준 등은 선진국의 개별적 판단에 일임되고 있다. GSP의 구체적인 운영 역시 선진국에 따라 상이하다. 미국과 EU는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41) 장효상, 신고 국제경제법, 법영사, 1998, p.272; 이재옥·최윤국,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평가와 수입관리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12, p.60.

42) 이영준, 국제경제법론, 법문사, 1997, p.81; 최승환, op. cit., p.295.

43) GATT 25조(의무면제조항)에 근거하여 1979년 동경라운드협정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를 위한 결정문을 채택하였는데, 이를 권능부여조항이라 부른다. 권능부여조항은 그 자체가 개도국에게 특별대우를 할 법적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지만 GATT 제1조상의 무차별원칙의 예외적 적용을 명문화하고 합법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44) 이은섭, op. cit., 1999, pp.113-114.

등을 고려하여 GSP의 수혜대상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홍콩, 싱가포르 및 대만은 1989년 1월 미국의 GSP 적용으로부터 졸업하였으며 EU의 GSP 적용으로부터는 1996년 졸업하였다.⁴⁵⁾

미국의 경우 GSP의 운영에 있어서 통상법은 대통령에게 GSP 수혜적격 대상국을 결정,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최혜국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는 공산권국가의 상품,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유사 카르텔 협정의 회원국, 미국 외의 선진국들에게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국가, 마약류규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국가, 미국시민과의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이행을 거부하는 국가, 국제법에 위반하여 자국투자자의 투자를 수용하였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권리를 침해했던 국가 등은 대통령이 그 국가를 수혜대상국으로서 지정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 경제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품목별로는 섬유 및 의류제품, 시계, 수입에 민감한 철강 및 전자제품 등을 포함하여 국내산업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상품들은 GSP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⁴⁶⁾ 또한 GSP는 경쟁력충족기준과 관련한 자동적 제한규정을 통해 수혜국이 1년 동안에 미국의 특정품목 수입총액의 50% 이상을 수출하였거나, 특정품목 수입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⁴⁷⁾ 미국대통령이 당해 품목의 수입에 관해 GSP 수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⁴⁸⁾ 특정 수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이 충분히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보다 낮은 기준으로도 수혜가 정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SP의 졸업은 GSP 혜택의 임의적 철회로서, 품목별 또는 국가별로 결정되고 있다. 특정국의 졸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1) 해당국가의 일반적 개발수준, 2) 특정 품목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경쟁력, 3) 해당 국가의 무역, 투자, 노동관련 관행, 4) 계속적인 공여가 미국의 관련 생산자, 근로자 및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포함하는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다.⁴⁹⁾

결국 GSP는 선진국의 대개도국원조라는 제도의 취지에 기초하되, GSP 공여국의 입장에서 자국의 정책적·전략적 고려를 최대한 우선순위에 둬으로써 국가별

45) 최승환, op. cit., p.295.

46) Restatement of the Law, op. cit., pp.303-304.

47) 이는 매년 미국의 GNP 변동에 맞추어 별도로 조정된다. 이재욱·최윤국, op. cit., p.65.

48) 이병조·이중범, op. cit., p.741.

49) 서헌제, op. cit., p.752.

로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그 공여의 성격은 다분히 선진국의 자율적 판단에 근거한 일방적인 특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의 여부를 개도국지위 결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는 그 제도의 실질적 운영과정에 있어서 내용의 빈번한 변경과 폭넓은 예외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도국 여부에 별 관계없이 자국의 국내사정에 입각하여 편의상 제도가 운영될 여지는 무척 크기 때문에 공여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곧 개도국지위의 졸업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그 특혜대상품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예시된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식(Negative List)을 채택하기로 한 공산품의 경우⁵⁰와는 달리 Positive List제를 채택하여 대상품목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대상의 폭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은데서 알 수 있듯이,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GSP의 공여 여부를 직접 개도국지위와 연계시키는 것은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특히 EU의 GSP 수혜범위는 농산물을 제외하고는 무관세이며, 농산물의 경우에는 관세인하나 수입과징금인하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어,⁵¹ 농산물분야는 정책적인 목적상 일반적인 GSP 수혜제도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GSP 수혜의 부여 또는 철회 여부가 곧 개도국지위의 취득과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개도국의 일원으로서 선진국들로부터 GSP 혜택을 받아왔으나 우리의 경제규모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특히 OECD에의 가입을 계기로 GSP 수혜에 대한 졸업문제와 함께 더 나아가 GSP 특혜의 공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⁵²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GSP 도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GSP의 제도적 성격과 현실적인 운영양태에 비추어 보아 GSP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곧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수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GSP는 국제공정무역질서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비교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일방적이며 선별적으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히 기존 개도국의 입장에서조차 최빈개도국 및 기타 일반 개도국에 대하여 경쟁력조건을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50) 그러나 미국, EU 등은 여전히 Negative List제를 고수.

51) 서헌제, op. cit., p.753.

52) 이재욱 · 최윤국, op. cit., p.61.

요컨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특히 농산물분야에 있어서) 반대로 공여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모두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 내지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시사점

현대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관행상 개도국에 대한 정의 및 기준은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전통적 기준 대신 다양하고 실질적인 기준이 분야별로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 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기준으로 볼 때, 종합적 지표는 선진국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분야별로는 그 특수성에 따라 낙후되어 있고 경쟁력 측면에서 아직도 유치산업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문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⁵³ 국가내의 분야별 특수성과 그 개발의 정도를 고려해 보건대, 한편으로는 분야별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developed) 또는 산업화된(industrialized) 분야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개발이 진행과정에 있는(developing) 분야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각종의 국제협약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developed와 develop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개도국의 경우 특히 그 개발의 진행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별·국가별로 그 내용과 정도는 동일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이 그러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도국지위에 따른 특별대우의 문제는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경쟁력 및 경제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제기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개별적인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애가 아닐 수 없다. 현대의 국제무역질서의 기본관념이 무조건적인 자유(free)화에 있지 않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조건과 능력의 차이를 감안한 공정(fair)무역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과거의 단편적인 개도국지위 결정 기준관념에서 벗어나 분야별 취약성을 고려하여 각 부문

53) 1인당 국민소득기준으로 볼 때 2-3만 달러가 넘는 대다수 중동 산유국들을 일률적으로 모두 선진국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별로 개도국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공정무역질서를 달성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제 4 장

한국의 개도국지위와 관련한 여건변화

1. 국내외 여건변화

1990년대에 들어 우리나라의 대외적 통상관계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개도국지위와 관련한 협상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체로 1990년을 전후로 한 IMF 8조국(일반적 IMF 의무이행국) 및 GATT 11조국(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으로의 이행, 선진국으로부터의 GSP 수혜 종료, 1990년대 중반까지의 경제적 성장의 지속,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의 돌입, OECD에의 가입 등이 개도국지위 유지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여건으로 꼽힐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부문간 불균형적인 경제발전, 금융위기로 인한 IMF 금융지원체제로의 전환,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필요성 등이 개도국지위 유지협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까지의 높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부진, 농가소득액(증가율 포함) 등 농업관련지표와 여건의 상대적 정체성 및 UR과 IMF 금융지원체제를 전후로 한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침체와 경기악화라는 상황은 최소한 WTO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한국의 협상여건의 변화와 대응책

구분	내 용	대응책
부정적 여건	· 1990년을 전후로 한 IMF 8조국 및 GATT 11조국으로의 이행 · 선진국으로부터의 GSP 수혜 종료	· 비슷한 이행과정을 경험한 국가들과의 비교분석과 GSP의 성격에 대한 올바른 고찰을 통해 이를 개도국졸업의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 없음을 부각
	· 1990년대 중반까지의 경제적 성장의 지속 ·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의 돌입	· 기형적 경제성장과 불균형성,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요구, 단순한 GNP 기준의 선진국분류의 불합리성 지적
	· OECD에의 가입	· OECD에의 가입은 곧 자동적으로 개도국지위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로 개도국들이 가입해 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 · 가입시 농업 부문과 환경부문에서의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은 사실 지적 · OECD 가입에 따른 선진국진입과 WTO 농업협상에서의 개도국지위 문제는 별개임을 지적
긍정적 여건	·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기형적인 경제발전 · 금융위기로 인한 IMF 금융지원체제로의 전환,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지속적 필요 · 1990년대 중반까지의 국가의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구조조정의 부진 및 상대적 낙후성 · 농가소득액(증가율 포함) 등 농업관련지표와 여건의 상대적 정체성 · UR과 IMF 금융지원체제를 전후로 한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침체, 악화	

따라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전개된 여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유리한 여건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실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IMF 제8조국 및 GATT 제11조국으로 이행하였으며 대만, 홍콩, 싱가포르 역시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우리나라를 전적으로 개도국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OECD에의 가입사실을 선진국으로의 진입증거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으나,

그 설립협정이나 활동목적 등에 비추어 OECD에의 가입은 특별히 선진국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은 개별협정이나 협상을 통해 정해지고 있으며, OECD 자유화규약 제17조에서 개도국의 가입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ECD에 가입한 사실 자체로써 자동적으로 개도국지위가 상실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시 농업부문과 환경부문에서는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고, 멕시코와 터키도 개도국지위의 상실없이 OECD에 가입한 바 있다. 따라서 OECD 가입 이후에도 사안별, 분야별로 필요한 경우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특히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기존의 환경협상이나 UR 협상과정에서 확보한 개도국지위도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고 본다.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주요 지표의 검토

2.1. 개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와 관련해 고려할 수 있는 각종 지표는 비록 특수한 상황이긴 하나, OECD 가입과 UR 이후 IMF 체제를 겪으면서 상당히 악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경제지표라 할 수 있는 1인당 GNP와 GDP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상당히 악화되어 왔으며, 비교대상국가와도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밖에 대외채무의 급격한 증가, 국제경쟁력의 약화, 국가신용도의 하락 등 관련지표가 일제히 OECD 가입전보다 악화되거나 정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기타 관련 지표로서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 생활수준을 나타내주고 있는 인구노령화지수,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인간개발지수 등 소위 사회적 지표들도 모두 기존의 선진국의 수준과는 많은 격차가 있다. .

농업부문 관련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왔는데, 특히 농가소득액의 감소,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농가부채의 증가 등이 이와 같은 상황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비중이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농림어업비율 및 농

가 호당 경지면적 등의 지표도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농가현실이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1992년부터 실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통한 구조조정의 목표는 도달하지 못한 채,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지원의 감소로 향후 계속적인 경제적 비용과 시간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된 경제적 및 비경제적인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현단계의 발전수준이 선진국의 발전수준과는 아직도 많은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여러 발전지표들은 여타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오랜 동안 농업부문에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선진국과 달리 구조조정의 초기단계에 있는 한국 농업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와 관련한 경제적·비경제적인 다양한 지표와 여건에 대해 분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2. 경제적 지표

경제적 지표로서 대표적인 것은 1인당 GNP와 GDP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GSP 수혜 종료, IMF 8조국 및 GATT 11조국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1989·1990년, UR 협정의 타결과 시행에 따른 WTO 설립, 농업부문에서의 개도국지위가 인정된 1993·1994년, OECD에의 가입과 이에 따른 한국의 개도국지위에 대한 논란이 격화된 1996년, 금융위기로 인한 IMF 체제하의 1997·1998·1999년 등 경제적 격변기의 상황을 보면, 1990년대에 들어서도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1995년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나 IMF 금융지원체제를 겪으면서 1998년에는 6천 달러대로 하락했다. 이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의 1인당 GNP와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이며, 1994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GNP인 약 2만 달러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좋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 우리나라의 1인당 GNP 및 1인당 GDP

단위: 달러

연도 구분	1989년	1993년	1994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인당 GNI	5,210	7,811	8,998	11,380	10,307	6,723	8,551	9,628
1인당 GDP	5,235	7,822	9,014	11,417	10,363	6,843	8,660	9,675

자료: 국제통계연감 2001(통계청, 2001).

표 4-3 주요 국가의 1인당 GDP(2000년 기준)

단위: 달러

국가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홍콩	영국*	멕시코*	대만	한국
1인당 GNI (당해년가격)	35,777	22,217	19,549	38,003	23,962	24,697	3,700	14,216	9,628
1인당 GDP (당해년가격)	35,793	22,458	20,126	37,537	23,912	24,034	5,810	13,925	9,675

자료: 국제통계연감 2001(통계청, 2001), 한국주요경제지표(통계청, 2001)

* GNI의 경우, 영국은 1999년 기준이고, 멕시코는 1997년 기준임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비중은 지난 1990년의 16.7%, 1995년 11.6%로 각각 감소한 이래 1999년 현재 10.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99년 기준 인도네시아(49.1%), 태국(57.2%), 말레이시아(19.4%), 멕시코(22.1%), 터키(46.9%), 폴란드(22.2%) 등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9.9%), 아르헨티나(10.0%), 브라질(17.3%), 칠레(16.1%), 사우디아라비아(10.7%), 크로아티아(9.1%), 그리스(17.3%), 헝가리(11.1%), 포르투갈(13.2%), 러시아(10.8%) 등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2.4%), 미국(2.2%), 이스라엘(2.8%), 일본(4.3%), 싱가포르(0.2%), 불가리아(7.5%), 프랑스(3.5%), 독일(2.6%), 스페인(7.7%), 호주(4.7%), 뉴질랜드(9.1%)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⁴⁾

54) FAO 농업생산연감(FAO Production Yearbook, 1999).

표 4-4 주요 국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비중

단위: %

연도 \ 국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그리스	영국	멕시코	헝가리	한국*
1990년	2.8	3.4	5.5	7.3	23.0	2.2	27.8	15.2	16.7
1995년	2.4	2.8	5.0	5.4	19.7	2.0	24.5	12.8	11.6
1997년	2.3	2.6	4.8	4.8	18.5	1.9	23.3	11.9	10.5
1999년	2.2	2.4	4.7	4.3	17.3	1.8	22.1	11.1	10.4

자료: FAO 농업생산연감(FAO Production Yearbook, 1997, 1999).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2001)

또한 국내총생산에 대한 농림어업비율을 2000년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의 선진국들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멕시코, 체코 등에 비해서도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4-5 주요국 GDP대비 농업총생산액*의 비중

단위: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미국	2.77	2.75	2.63	2.65	2.58	2.62	2.46	2.17	2.00	1.92
캐나다	2.86	2.85	2.93	3.12	3.18	3.33	3.27	3.10	2.92	2.81
호주	5.30	5.37	5.44	5.18	5.66	5.50	5.28	5.04	5.04	4.79
일본	2.46	2.37	2.18	2.34	2.14	2.05	1.94	1.95	1.85	1.86
터키	18.62	17.58	17.39	18.75	18.66	18.33	16.44	18.76	17.00	14.03
체코	15.80	13.33	11.80	9.85	8.51	8.40	7.57	7.03	6.06	5.51
헝가리	17.87	13.40	12.24	12.38	12.57	14.71	11.64	10.62	9.43	9.52
아이슬랜드	3.59	3.09	2.40	2.25	2.25	2.07	2.05	2.00	1.91	1.76
폴란드	13.85	14.99	15.59	12.97	14.07	13.16	10.86	9.89	8.24	6.77
멕시코	8.77	7.51	7.32	6.71	7.28	7.60	6.94	6.65	5.77	5.49
한국	8.85	8.31	7.48	7.23	6.85	6.72	6.46	6.66	6.57	6.04

자료: OECD 데이터베이스

*농업총생산액은 농가가격(at farm price)기준임.

아울러 IBRD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빈곤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IBRD는 '2000년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지난 1997년 9%에 그쳤던 도시빈민 인구가 1998년에는 배가 넘는 19%로 급증하는 등 심각

한 빈민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⁵⁵ 이 비율은 하루 소득이 4달러(약 5600 원)가 채 안되는 도시인구 비율로서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 및 경제적 기반이 선진국에 비해서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고, IBRD는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에는 UNDP가 우리나라 인구의 약 천만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절대빈곤층에 속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 내지 1/5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요컨대 현단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과 지표는 선진국수준과는 아직 많은 차이가 나며, 산업·경제구조 역시 선진국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개도국형태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2.3. 비경제적 지표

최근에 개별 국가, 산업,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유용한 틀로써, 경쟁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히 1987년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세계경쟁력 연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순위를 발표하면서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정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⁵⁶ 물론 이러한 데이터가 일국의 발전단계에 대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외적인 인식과 신인도, 투자환경의 조성, 장래의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점차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도국지위는 상대적인 기준을 토대로 결정됨을 감안할 때 그 활용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IMD의 국가경쟁력결정에는 경제적인 요인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그 평가기준은 국제기관이 발표하는 각종의 경제·사회통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⁵⁷ 개도국지위결정의 현대적 기준에도 잘 부합

55) 조선일보, 1999. 12. 9(목), 1면 및 12면.

56) 1999년에는 47개 주요국(OECD 회원국 29개국, 신흥경제국 18개국)의 국가경쟁력을 분석하여 그 순위를 발표했다. 조사대상국의 수는 점차 많아지고 있다. 차동화,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세계경제 1999년 7월호, KIEP, p.47.

57) Ibid., p.48.

된다고 할 것이다. IMD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조사대상국 중 26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순위는 계속 하락하여 1999년 현재 38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대만(18위), 중국(29위) 뿐만 아니라 같이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말레이시아(27위), 필리핀(32위), 태국(34위)보다도 뒤진 순위이다.⁵⁸

표 4-6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비교⁵⁹(1999년)

국가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태국	한국
순위	18위	27위	19위	32위	34위	38위

한편 요인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각 요인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비교대상국들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7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결정요인별 순위⁶⁰

요인	국내경제	국제화	정부	금융	사회 간접자본	기업	과학기술	인적자원
순위	43위	40위	37위	41위	30위	42위	28위	31위

기존의 선진국들이 특히 선진국지표로서 간주하고 있는 평균수명 및 영아사망률에서도 아직은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72세 안팎으로 선진국의 80세 안팎과는 차이가 있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도 1996년도 기준 출생아 1,000명당 약 7.7명으로(남아 8.0명, 여아 7.4명) 지난 1993년도의 9.9명보다는 낮아졌지만 일본(1998년도 기준 3.6명) 등의 선진국 수준을 2배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년 12월 발표).

58) Ibid., p.47.

59) Ibid., p.55.

60) Ibid., pp.49-51.

표 4-8 주요 국가의 평균수명(남·여 평균)

단위: 세

국가 기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그리스	홍콩	멕시코	스위스	한국
1995년 ~ 2000년	76.7	79.0	78.2	80.0	78.1	78.5	72.2	78.6	72.4

자료: 국제통계연감 2001(통계청, 2001).

표 4-9 주요 국가의 영아사망률

단위: 1,000명 당

국가 기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그리스	홍콩	멕시코	스위스	한국
2000년 ~ 2005년	7	5	5	3	6	4	28	5	7

자료: 국제통계연감 2001(통계청, 2001).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 역시 선진국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컨대 OECD 회원국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및 복지부문의 사회보장비 수준, 국가별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비의 비율 등의 측면에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등의 기존 선진국 뿐만 아니라, 터키, 그리스 등과 같은 국가의 수준에 많이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0. OECD 회원국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및 복지부문의 사회보장비 비율

단위: %

구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포르투갈	터키	그리스	한국
사회복지지출*	18.03	29.52	29.24	14.96	25.29	19.31	11.59	22.73	11.09
복지부문 사회보장비**	10.62	22.24	19.61	9.87	16.27	13.78	7.63	17.22	8.71

*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감(2001), 1998년 기준

**자료: 고경환 외 OECD 추계방법에 의한 한국의 순사회복지 지출 추계,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0. 한국은 1998년 기준, 나머지 국가들은 1997년 기준.

표 4-11 국가별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비의 비율

단위: %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영국	칠레	미국	일본	한국
46.3	445.8	42.8	36.1	34.3	28.7	21.3	12.4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2001)

캐나다는 1997년, 일본은 1998년, 나머지는 1999년 기준임.

근래 UNDP에 의하여 개발되고 있는 인간개발 개념의 핵심은 복리(well-being) 수준이며, 이것은 소득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인간개발지수는 인간개발의 세 가지 기본적인 측면인 수명, 지식 및 생활수준을 기초로 하여 국가의 평균적 성취도를 측정하게 되며, 인간개발복합지수인 HDI(Human Development Index)는 평균수명, 교육성취도, 1인당 실질 GDP 등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개발지수를 기초로 한 국가별 분류에서 한국은 인간개발 상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그 순위는 1999년 기준 27위로서 기존의 선진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리스(23위), 홍콩(24위), 이스라엘(22위), 싱가포르(26위) 보다도 뒤쳐져 있다. 동시에 UNDP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소득별 국가분류에서는 중소득국(1994년 기준 1인당 GDP 726달러 이상, 8,955달러 이하), 개발 정도에 따른 국가분류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다.⁶¹

표 4-12 주요 국가의 인간개발지수(1999년)

국가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그리스	홍콩	멕시코	스위스	한국
지수	0.934	0.936	0.936	0.928	0.881	0.880	0.790	0.924	0.875
순위	6	3	2	9	23	24	51	11	27

자료: 국제통계연감 2001(통계청, 2001).

이밖에도 한 국가의 개도국지위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관련지표에는 인구구조 형태, 무역의존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지표를 토대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사회구조와는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나 노인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여타 선진국보다

61) 이상 UNDP,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1997, 빈곤퇴치와 인간개발, UNDP 한국대표부, 1998. 12.

낮으며, 국민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경제구조가 대내외적 충격이나 불확실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표 4-13 주요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구조* 및 노년부양비**(2000년)

단위:%

국가 구분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스페인	한국
65세 이상	12.5	15.9	12.1	17.1	16.4	16.0	12.8	17.0	7.1
노년부양비	19.2	22.9	18.1	20.9	22.7	24.5	17.7	22.6	10.0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감(2001).

*인구는 2000년 추계연앙인구임

** 노년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표 4-14 주요 국가의 무역의존도*(2000년)

단위:%

국가 연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멕시코	터키	중국	한국
무역의존도	20.5	74.5	36.5	18.1	43.6	59.3	39.3	42.2	72.7

자료: 통계청, 국제통계연보(2001)로부터 재구성.

*무역의존도(수출액+수입액)/GDP×100

한편 유엔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권한척도가 조사대상국 64개국 가운데 6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31위), 싱가포르(35위), 말레이시아(38위), 필리핀(46위) 등 아시아권 가운데서도 아주 낮은 수준이다. 참고로 여성권한 척도는 여성의 의회의석 점유율, 관리직 및 전문직 비율, 소득에 있어 여성의 비중 등 여성의 정치 및 경제참여도를 기초로 작성된다.

표 4-15 여성권한척도(1999년)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미국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	그리스	한국
점수	0.836	0.809	0.763	0.738	0.520	0.507	0.503	0.502	0.358
순위	1	3	5	10	31	37	38	39	61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1)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추정된 개인별 주당 노동시간 조사결과 한국인은 평균 1주일당 50시간을 일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긴 시간 동안 일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행복한 삶과 복지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 주당 평균 노동시간 측면에서도 우리 근로자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낙후된 버마, 인도(47시간), 방글라데시(46시간), 태국(45시간)보다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여가시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표 4-16 주당 근로시간(1999년)

단위: 시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노르웨이	싱가포르	멕시코	한국
근로시간	41.7	37.4	38.7	38.9	41.4	36.6	49.2	45.4	50.0

자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2001)

이외에도 국민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척도로 활용되는 인구 천명당 의사수나 국민교육의 효과성의 척도로 활용되는 교사 1인당 학생수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의료 및 교육서비스의 현실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1.3인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교사 1인당 학생수는 말레이시아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표 4-17 보건서비스

단위: 1,000명당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체코	헝가리	핀란드	멕시코	한국
의사수	2.7	1.9	2.5	2.3	3.0	3.1	3.1	1.6	1.3

자료: 통계청,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2001.12)

주: 한국, 뉴질랜드, 핀란드는 1999년 기준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1998년 기준임.

표 4-18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위: 명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스페인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95/96	95/96	97	96/97	95/96	96/97	97/98	98	2000
초등	16	16	18	19	17	28	19	19***	28.7
중등	15	19	15	12	15	16	14	19	20.0
고등	16	10*	16	15	18	9	10*	14**	47.8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1), * 94년과 95년의 평균, ** 95년과 96년의 평균

*** 97년을 나타냄.

2.4. 우리나라 농업여건의 낙후성

지난 1997년 중반 3개 ASEAN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와 한국에서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타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금융위기가 촉발된 아시아지역 국가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등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세계금융위기는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식량경제전망을 둘러싼 가장 불확실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⁶²⁾

이러한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ASEAN 국가들과 한국, 러시아의 식량경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식품구입비의 높은 비중과 식량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칠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가계지출액에서 식품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호주, 일본, 캐나다, 홍콩, 뉴질랜드, 대만, 미국 등은 10% 내외의 식품구입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⁶³⁾ 또한 이들 국가에서는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불안 등의 요인들로 인해 인프라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감축되고 있으며, 그 중 투자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부문의 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축되고 있다.⁶⁴⁾

결국 지난 세계금융위기는 한국을 비롯한 관련 아시아국가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들 국가의 식량경제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아시아 개도국들의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개발단계도 상당한 정도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따라서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의 농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식량농업수산물국(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62)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태평양경제협력이사회: PECC), 금융위기가 아·태지역의 식량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식량농업, 제41권 제4호(1999. 4), pp.25.

63) Ibid., pp.29-30.

64) Ibid., p.27.

DFAF)은 1999년 3월 30일 한국의 농업정책을 검토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는 바,⁶⁵ 동 보고서는 1979-1997년 간 한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과 발전 과정 및 향후 농업정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97년 말의 금융위기는 한국의 농업 및 농업정책 이행에 영향을 미쳤으며 농업부문의 하부구조 개선을 위한 과도한 재정지출은 연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한국의 지난 20여년간의 빠른 경제성장은 상대적으로 농업부문의 위축을 가져왔으며, 1970년 고용의 50%, GDP의 27%를 차지하였던 농업부문의 비중이 1997년에는 각각 11%, 5%로 감소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한국농업은 소규모 영세 자영농이 특징으로 호당 경지면적은 1.3헥타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1.3ha 내외에서 거의 정체 상태로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전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가량으로 아직도 여타 선진국에 비해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농가소득은 농산물 가격변동에 민감하고 농업생산 및 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체질이다.

표 4-19 우리나라의 농가 호당 경지면적

단위: 10a

1989년	1993년	1994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0년
12.00	12.90	13.40	13.15	13.55	13.74	13.65

자료: 농림업 주요통계(농림부, 2001).

65) 1998년 4월 검토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 1999년 1월 6일 OECD 농업위원회 및 무역위원회
의 승인을 얻어 채택.

그림 4-1 농가 1호당 경지면적(ha, 19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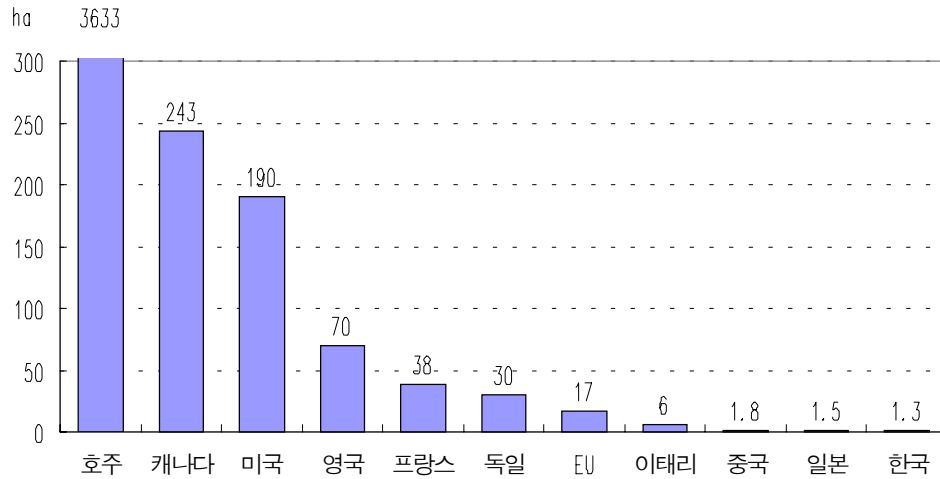


표 4-20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생산액*

단위: 10억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P)
부가가치	18341	20,042	20,876	21,767	20,350	21,690	21,927
전년대비 증가율		9.40	4.16	4.27	-6.51	6.59	1.09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2001)

* 각 년도의 생산액은 1995년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격임.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현실을 보면, UR 이후 농업 총생산액은 1996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증가율은 감소하고, 1998년에는 생산액 자체가 감소하였다. 1999년 이후에는 농업생산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1997년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같은 기간 중 농가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UR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1997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반전되어 1998년에는 전년 대비 13%나 감소하였다. , 1994년에는 20%에 달하던 농가소득 증가율이 1995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7%대에 머물다가 1998년에는 13%가 감소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상대적 비율은 크게 감소하여 2000년 기준으로 농가소득은 도시가계소득의 8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농가부채증가율은 1998년에 30%를 넘고 부채총액 또한 급격히 증가

하고 있어 농가 경제는 매우 피폐한 상황이다.

표 4-21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농가 가구당 조수입 및 농가부채

단위: 천원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농가소득	13,105	14,505	16,928	20,316	21,803	23,298	23,488	20,494	22,323	23,072
증가율(%)		(11)	(17)	(20)	(7)	(7)	(1)	(-13)	(9)	(3)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13,903	16,273	17,734	20,416	22,933	25,832	27,448	25,597	26,696	28,643
농업조수입	10,097	10,778	12,927	15,347	16,012	17,284	17,284	16,630	18,638	19,514
농가부채	9,192	5,683	6,828	7,885	9,163	11,734	13,012	17,011	18,535	20,207
증가율		(-38)	(20)	(15)	(16)	(28)	(11)	(31)	(9)	(9)

자료: 농림업 주요통계(농림부, 2001).

UR 이후 농가의 판매가격지수의 상승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여 생산농가의 교역조건은 크게 떨어져 농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1995년의 100을 기준으로 할때 2000년도 농가의 교역조건은 86에 불과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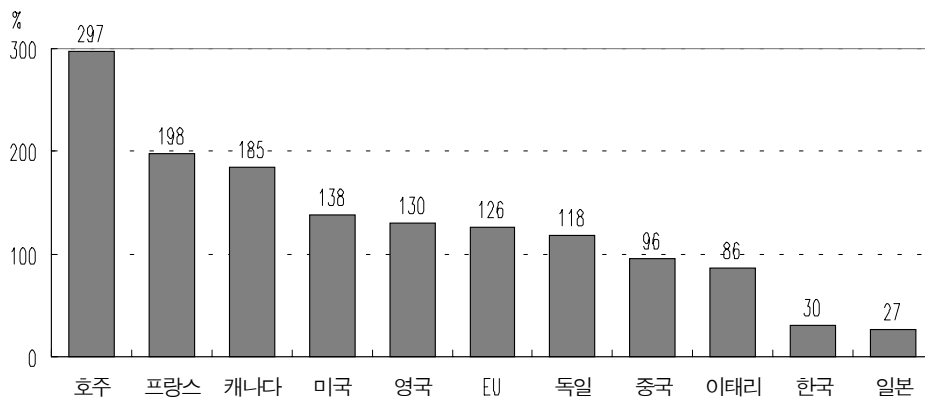
표 4-22 농가교역조건(95=100)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농가판매가격 총지수(A)	81.2	84.5	84.7	91.7	100.0	105.2	102.2	101.9	108.5	109.6
농가구입가격 총지수(B)	84.4	90.2	90.9	94.4	100.0	104.3	106.7	118.0	121.2	127.5
농가교역조건 (A/B)	96.2	93.7	93.2	97.1	100.0	100.9	95.8	86.4	89.5	86.0

자료: 농림업 주요통계(농림부, 2001).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률이 30% 이하로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식량의 해외의존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사료용은 자급률이 10% 이하 수준에 불과하고, 사료용을 제외하더라도 자급률이 50% 수준이다.

그림 4-2 주요국의 곡물자급률(% , 1999년)



3. 시사점

개도국문제는 원래 특수한 정치적·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해 볼 때, 단순한 몇 가지의 외형적인 경제적 지표만을 가지고 개도국의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도국지위의 결정은 어느 한 국가와 관련된 종합적 지표와 특수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경제적 요소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역사적 요소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적 추세에 비추어 이러한 요소들로 추정되는 것들로는 일반적으로 1인당 GNP 및 GDP 등 경제적 지표 이외에 무역의존도, 평균수명, 영아사망률, 환보유고 및 대외채무규모, 대외신용도, 인간개발지수, 여성권한척도, 복지예산규모 등 다양한 비경제적, 사회적 지표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의 전반적 분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미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개발이 완료된(developed)단계가 아닌, 아직도 개발이 진행중인 단계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부분은 개발의 진행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현단계의 발전수준에 비추어 보아 고전적인 범주의 개도국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 각종의 관련 지표 및 국민의 심

정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진국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는 여타 선진국들에게서 보여지는 개발지표와는 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UR 협정의 이행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금융위기로 인해 아직까지도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부문 역시 UR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제 5 장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1.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와의 관계

OECD는 협정문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원국의 경제성장 도모 및 세계경제발전의 공헌, 개도국에 대한 원조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경제협력기구로서, GATT/WTO와 같이 시장개방이나 국가간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기구 내지 국제규범을 직접 교섭하거나 제정하는 기구는 아니다. OECD에서는 정책토의를 통하여 일반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때문에 특정 회원국이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일반적인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의 특수사정에 따른 규정적용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결국 OECD는 WTO와 구별되는 별도 협의의 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⁶⁶ 따라서 OECD에 가입한 사실과 WTO에서의 지위는 필연적인 연관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OECD 가입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성숙도와 능력에 따라 부문별로 결정되는 문제이다. 즉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은 개별협상별로 정해지므로(이는 GATT/WTO에서도 마찬가지이다) OECD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의 개도국지위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이미 WTO 농산물협정이나 지구환경협약 등에서 확보한 개도국지위는 OECD 가입과는 별개로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⁶⁷

66) 채욱, OECD 개요, OECD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1, pp.357-358.

67) 채욱, OECD 가입의 의의 및 효과,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에 가입하려면 다원적 민주주의국가로서 시장경제체제를 보유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일 것 등이 요구되고 있을 뿐, 가입과 관련한 어떠한 선진국기 준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일정 소득 이상의 선진국만이 OECD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며, 설립협정(제16조) 및 양대자유화규약(제14조)에서 알 수 있듯이 개도국도 정치체제 및 경제운용방식이 OECD의 가치와 이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가입이 가능하다.⁶⁸

구체적으로 OECD 설립협정은 개도국의 참여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며(제1조(b)·제2조(e)), 실제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및 터키 등이 최근까지도 개발원조와 관련하여 개도국으로 취급되어 왔다. 또한 OECD 자유화규약 제14조에서는 개도국인 회원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하고 있어 기존 개도국의 가입가능성과 함께 OECD 가입으로 개도국지위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멕시코와 터키는 DAC 개도국명단에 속해 있으며 WTO 협정내에서도 개도국지위를 누리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가입시 이사회는 77그룹에 속하는 것이 OECD 가입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멕시코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OECD는 멕시코가 개도국지위를 포기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았다. 결국 OECD 가입과 관련해서 개도국에 대한 객관적 정의는 존재치 않으며, 일부 개도국의 획기적인 경제성장으로 개도국 개념 자체가 유동적인 것이 되어 왔다. 요컨대 OECD는 주로 선진국모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긴 하나 적어도 일정 부문에서는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간주하는 국가들을 항상 포함하여 왔다.⁶⁹

OECD 가입희망국에게는 가입전에 흔히 개도국졸업지표라고 일컬어지는 GATT 11조국 및 IMF 8조국으로의 이행이 권고되고 있다.⁷⁰ 그러나 이러한 이행은 말 그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권고적 사항으로서 관련당사국에게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결정, 협정 내지는 선언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관계없이 이미 지난 1988년 12월에 IMF 8조국으로, 1990년에 GATT 11조국으로 이행하였다. 또한 칠레, 그리스,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도 GATT 11조국으로 이행한 바 있어⁷¹, 이는 OECD 가입에 있어서 개도국지위결정

1996. 11, p.18.

68) 김완순·한복연, op. cit., pp.305-307.

69) 이창재, op. cit., pp.352-353.

70) 채욱, OECD 개요, op. cit., pp.363-365.

71) 김학수,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0-01, 1990. 3, pp.56-58.

의 유일한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GSP 수혜 여부 역시 OECD 가입과 관계없이 그 나라의 경제수준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UR 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GSP의 실질적 혜택폭은 사실상 크게 감소되었다. OECD 회원국인 터키, 그리스, 멕시코와 같은 국가는 개도국지위의 상실없이 UR 농산물협정이나 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GSP 수혜를 받고 있다.⁷²⁾

2.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우리나라의 가입과 관련하여 OECD는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세계무역 및 투자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없이 세계경제의 효과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정책대화를 시작하였으며, 아시아 신흥공업국들 중 싱가포르를 소규모 도시국가임을 이유로, 홍콩은 중국에의 편입을 이유로, 대만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만 가입권유를 하기에 이르렀다.⁷³⁾ 이는 한국의 OECD 가입과정에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일반의사를 기초로 해서가 아닌 여타 요인들이 고려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특히 가입이 제외된 여타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입과정의 비경제적 요인과 형평성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정에서 가입을 심사·검토하는 무역위원회(1996. 5. 3) 및 환경위원회(1996. 5. 10)를 통해 각종 국제협약에서 우리의 개도국지위 유지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994년 UR 협정의 여러 부문, 특히 농업부문에 있어서 개도국지위에 따른 특수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고,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아직까지 한국이 개도국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중에 있고 OECD 가입이 한국의 선진국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환경협약부분에서도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다.⁷⁴⁾

72) 채욱, OECD 가입의 의의 및 효과, op. cit., p.19.

73) 채욱, OECD 개요, op. cit., pp.362-363.

74) 이창재, op. cit., p.350.

특히 농산물 및 기후변화협약 관련 환경분야에서는 개도국지위의 유지가 불가피함을 역설하면서, 한국의 영농구조와 여건상 호당 경지면적은 1ha 내외로써 매우 영세하고 토지·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나 기술 및 경영발전수준도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실정이며, 따라서 농업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고 보아 UR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로 참여하였고 UR 협정의 이행도 기본적으로 개도국으로서 이행할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것이 한국의 산업구조 및 경제성장단계상 비현실적임을 밝힌 바 있다.

OECD 무역위원회 및 환경위원회는 각각 96년 8월 28일과 9월 24일에 이상의 한국입장을 수용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여 이들 부문에 있어서의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런데 OECD 가입 당시 받아들여졌던 우리나라의 이러한 입장에 비해 당시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욱 악화된 현재의 단계에 비추어 보아 가입 당시의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최소한 농업부문에 있어서 만큼은 개도국지위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OECD 가입당시 우리나라는 농업 및 기후변화협약을 제외하고는 향후에 논의될 통상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였으며, OECD 무역위원회 및 환경위원회는 이와 같은 한국입장을 수용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영국, 호주는 신규회원국들의 가입시 개도국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⁷⁵⁾ 그러나 OECD 협약체제에서는 이에 관한 어떠한 근거규정도 없고, 우리나라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입시 일정 부문에서는 이미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으므로 사후 입법 등을 통한 소급적 적용은 우리에게 해당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자동적으로 개도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기본입장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OECD 가입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성숙도와 능력에 따라 부문별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 입장은 OECD 가입후에도 지금까지 WTO 등 국제협약에서 확보한 개도국 지위는 계속 유지해 나가되, 우리 능력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의무이행시기를 단축하여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WTO의

75) Ibid., p.346.

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과 관련된 의무이행을 개도국의 이행기간보다 1~4년 앞당겨 시행한 바 있다.

다만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이라는 3개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동질적 집단으로, 이러한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여 잘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동료압력(peer pressure)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OECD 가입시 천명한 농업과 환경분야에서의 개도국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우리의 이행 수준이 OECD가 기대하는 수준이 되지 못할 경우 한국은 지속적인 동료압력(peer pressure)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전략은 한 국가의 지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것으로, 발전단계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국제사회에 적극 공헌하겠다는 의지 표명뿐만 아니라 실천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에 OECD 동료회원국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6 장

GATT 및 WTO 체제에서 개도국지위와 특별대우

1. 개도국 우대조치의 배경과 법적 지위

GATT/WTO 체제에서 개도국지위 문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47년 GATT와 1948년 국제무역기구(ITO) 헌장의 채택을 위한 다자간 협상에서도 개도국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과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이유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가 요구된 바 있다. 이러한 개도국들의 주장은 GATT 제18조 등에 반영되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의 특수사정을 인식하고 이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상호주의(reciprocity)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GATT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에 대한 예외조치를 인정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선진국들은 유치산업의 보호 또는 국제수지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도국들이 취하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통한 수입규제조치들을 인정하여 주었다. 또한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principle)의 예외로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일부 수출품목에 대하여 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제공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상호주의 및 비차별원칙의 적용면제를 의미하는 특별대우규정은 동일한 무역관련규칙의 일반적·비차별적 적용에 따른 개도국의 이익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결국 국제무역에 있어 실질적 형평성·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GATT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1973~79 기간중 동경라운드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확대되었다.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소위 4개의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s) 중의 하나가 개도국 우대조치에 관한 것이다.⁷⁶ 이 합의에서 GSP 제도를 영구화하였으며, 동경라운드 협정에서 개

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개도국들간의 지역협정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1979년 동경라운드의 타결은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명료화하면서 개도국에 대해서도 경제발전에 따라 국제교역체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소위 개도국지위 졸업(graduation) 조항을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즉,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와 함께 개도국에 대해서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GATT의 권리와 의무에 좀 더 완전히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GATT 및 WTO 체제상 개도국은 선진국에 대해 일부 규정에 입각하여 특별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지금까지 GATT/WTO에 규정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는 개도국들을 세계경제질서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선진국들의 의도도 다분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들이 대다수 개도국들의 경제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선진국들이 관세장벽을 낮추고 교역의 확대를 통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한데 비하여 개도국들은 교역의 이점을 크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도국들이 대외교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비관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개도국들의 교역패턴은 농산물, 광물, 임산물 등 일차산품을 선진국들에게 수출하고 이들로부터는 공산품을 수입하였는데 개도국의 교역조건은 점점 악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차산품에 대한 수요 및 소득의 탄력성이 공산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낮기 때문이다. 개도국으로부터 일차산품의 수출공급이 증가하면 비탄력적인 수요로 인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악화하였으며,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증가하여도 일차산품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보다 급속하게 증가하여 일차산품의 상대가격이 하락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개도국 교역조건 악화로 인하여 수출이 증가하여도 경제성장이 촉진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축되는 소위 빈곤화성장(immiserizing growth) 현상이 우려되었다. 따라서 많은 개도국들은 수출에 대해 비관적 견해(export pessimism)를 갖게 되었으며, 수입대체산업과 국내유치산업을 육성하고 공업화를 추구하는 경제발전 전략을 택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많은 개도국들은 대외교역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관세인하를

76) 4개의 Framework Agreements는 다음과 같다 : 1.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 2. Declaration on Trade measures Taken for Balance of Payments Purposes ; 3. Safeguard Action for Development Purposes ; 4. Understanding Regarding No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

목표로 하는 GATT 무역협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외교역과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인식에서 주목할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수출에 대해서 비관적 견해를 갖고 있던 많은 개도국들은 이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외교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산물, 광물, 임산물 등 일차산품을 수출하는 개도국들은 수입대체전략을 탈피하면서 수출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수입자유화의 추진 등 대외지향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1986~1993년 동안에 진행된 Uruguay Round 협상에서 개도국들은 과거 협상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대외교역을 중요시하는 이들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UR 협정 이행 이후 개도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선진국 시장 장벽은 더욱 높아져서 개도국 농산물의 선진국 시장진입 기회가 오히려 더 좁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은 금번 WTO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과제로 개도국의 선진국시장에 대한 실질적 시장접근기회 증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특별하고 차별적 대우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 주요 수출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의 대폭적 인하, 시장접근물량의 특혜적 배분, 국내보조 사용의 융통성부여, 선진국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개도국의 주장에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개도국 우대 조치 및 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개도국 지위부여에 관한 GATT 관행은 1964년 제1차 UNCTAD 회의에서 형성된 개도국들이 비공식그룹인 이른바 77그룹(Group of 77) 방식이 준용되고 있는데, 신규회원이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면 77그룹의 의장이 그룹참여를 초청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위가 부여된다. 즉 GATT에서의 개도국 지위결정은 특정한 법적 절차나 기준과는 관계없이 체약국의 자기 선택에 대한 타체약국의 묵시적 동의에 입각하고 있다.⁷⁷⁾ 이에 따라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함한 신흥공업국과 방글라데시 등과 같은 최빈개도국(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이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다만 최빈개도국의 지위결정에 대해서는 UN의 최빈개도국 명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⁸⁾

77) O. Long, Law and its limitations in the GATT Multilateral Trade System(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5), p. 94.

78) 'WTO 설립협정' 제11조 2항은 UN에 의해 최빈개도국으로 인정된 국가는 자국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의 필요나 행정적 및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약속이행과 양허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다수 개도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지난 UR 협상 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분류기준의 설정 문제를 놓고 선진·개도국간 많은 논란이 진행되었으나, UR 협상 타결의 마지막 순간까지 미합의 상태로 종결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차기 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WTO 협정상 개도국지위 부여문제는 주요 협상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종래와는 달리 좀 더 엄격하고 투명한 조건과 기준에 의해서 개도국 지위부여와 특별대우가 제공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GATT 체제에서 개도국 우대조치

2.1 개요

GATT 체제에서 개도국 우대조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자국상품의 선진국 시장진출 둘째, 자국산업의 보호권리에 관련되어 있다. 이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지배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즉 만성적인 국제수지 문제와 수출 비관주의(export pessimism)를 고려하여 개도국 수출제품 특히, 개도국의 공산품은 선진국 시장진출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받아야 하며, 국제규범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도국 유치산업의 보호에 대하여는 예외조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GATT에서 규정한 개도국 우대조항을 살펴보면 제18조, 제28조 b의 3항, 제4부, 그리고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합의된 사항(the Enabling Clause)을 들 수 있다. GATT 18조는 일반협정에서 개도국 교역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가장 중요한 조문이다. 경제정책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GATT 18조는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전략에 따라 경제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반영한다. 또한 제28조 b에서는 관세협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3항에서 경제개발 및 정부재정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개도국의 관세부과 필요성을 관세협상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개도국 이외의 다른 체약국들에게도 재정수입, 개발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조항이 개도국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된 우대조

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1964년 제1차 UNCTAD 회의의 결과로써 1965년에 교역과 경제개발(Trade and Development)이라는 제목의 GATT 4부가 일반협정에 추가되었다. 일반협정의 4부는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GATT 36조는 개도국의 경제개발의 필요성,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성, 일차산품 가격의 안정화, 경제구조의 다양화 등을 인정하였다. 특히, 이 조문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였다.⁷⁹⁾

GATT 협정의 제1조는 최혜국대우조항(the most-favored-nation clause)으로서 영연방 특혜제도를 비롯하여 몇 가지 특혜관세조치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조치를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서 GATT 4부에서 규정할 것을 개도국들은 당초에 주장하였지만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대신에 상호주의의 면제원칙(the principle of non-reciprocity)이 제36조에 규정된 것이다.

위에 언급한 GATT 제제상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한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 GATT 제18조

GATT 제18조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규정한 최초의 조항으로서 1955년 GATT 검토회의(Review Sessions)에서 개정되었다. 우선 제18조 2항은 개도국이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개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입에 영향을 초래하는 보호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필요를 인정하여 이러한 조치가 본 협정의 목적달성을 촉진하는 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제18조 4항은 특별대우가 인정되는 개도국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① 경제상태가 저생활수준에 있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개도국과, ②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으나 ①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개도국으로 구분하여 각각 특별대우를 달리하고 있다. 즉 ①항에 속하는 개도국은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정산업의 설립을 증진시키고자 할 경우 관련 체약국과 관세인상을 위한 협의를

79) 36조 8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The 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do not expect reciprocity for commitments made by them in trade negotiations to reduce or remove tariffs and other barriers to the trade of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체약국과 합의하는 경우 관세양허표상의 양허내용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고(제18조 A절),⁸⁰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국제수지의 악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특정수입제품에 대한 수량제한 또는 가액제한을 실시할 수 있으며(B절),⁸¹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정산업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본 협정상의 다른 규정에 합치하는 조치로써는 동 목적을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체약국단의 승인을 받아 GATT 규정상의 의무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C절), ⑥항에 속하는 개도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특정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체약국단의 승인을 받아 GATT 규정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D절).

2.3 GATT 제4부

개도국의 주도로 1964년 11월 26일에 채택되어 1966년 6월 27일자로 발효된 제4부(무역과 개발)는 ‘1947년 GATT’에 세 개의 조항(제36조~제38조)을 추가시켰다. 먼저 제36조는 개도국의 수출소득의 확대, 경제개발의 필요에 상응하는 무역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세계 1차산품 시장에서의 더욱 유리한 접근보장, 국제통자기관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등을 위해 관련 체약국의 의식적이고 목적있는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 또는 완화를 위한 무역협상에 있어 개도국이 행한 이행약속(commitments)에 대하여 선진국은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제36조 8항은 비상호주의(non-reciprocity)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규정으로서, 경제적 여건차이를 고려한 실질적 형평성·공정성을 반영한 것인데, 상호주의적 관세양허협상에 입각한 GATT 법원칙의 실질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⁸²

80) 관련체약국과의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 해당개도국은 체약국단에 동 문제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도국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약국단은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제18조 7항 ⑥)

81) 체약국단은 국제수지를 이유로 시행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검토하여 관련개도국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제한 조치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적절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제18조 12항). 제12조 역시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예외적인 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하나, 제18조 B절이 개도국에만 적용되는데 비해 제12조는 모든 체약국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개도국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의 완화 및 제거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개도국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세 또는 비관세 수입장벽의 도입 또는 강화를 삼가고, 주로 개도국에서 생산되는 1차 제품의 소비증가를 저해하는 재정조치를 완화·제거하고 그러한 재정적 조치를 삼간한다(제 37조 1항). 제3조는 제36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체약국들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무역개발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가 설치되었다. 비록 제4부 규정들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선진국에게 법적 의무를 직접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지만⁸³, 상기 규정들은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공정성에 입각한 통상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4 권능부여조항

국제무역에 있어 실질적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개도국들의 공동노력은 1979년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s)이라고 불리는 네 개의 동경라운드협정의 채택으로 결실을 맺었는데, 동 골격협정의 하나인 ‘개도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와 상호주의 및 보다 완전한 참여에 관한 결정’(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and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의 제1항~제4항을 이른바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이라고 불린다.⁸⁴ 개도국에 대해 GATT 제1조상의 무차별원칙의 예외적 적용을 성문화한 상기 결정은 GATT 제25조(의무면제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무역관계와 국제경제법에 있어 최초로 확립된 권능부여조항은 개도국에

82) O. Long, *supra* note 56, p. 99.

83) J.H. Jackson, W.J. Davey and A.O. Sykes, *supra* note 46, p. 1112.

84) 골격협정 또는 기본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무역의 수행을 위한 골격에 관한 협정’(Agreements relating to the Framework for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Trade)이다. 동 골격협정은 상기 특별대우에 관한 결정, 국제수지를 위한 무역조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rade measures for Balance of Payments Purposes), 개발목적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결정(Decision on Safeguard Action for Development Purposes), 통보와 협의 및 분쟁해결과 감시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Regarding No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 등 총 네 개의 협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 즉 특별대우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들어 개도국에 대한 GSP 조치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러한 대개도국 특혜조치는 GATT최혜국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법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권능조항에 대한 합의로 대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국제법적 합법성을 가지게 되었다.

위에 언급한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관련된 결정은 제1항에서 체약국들은 “GATT 제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적용은 ①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입각하여 개도국제품에 부여되는 특혜관세대우, ② 비관세조치에 관한 GATT 규정의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 ③ 관세의 상호인하 혹은 철폐를 위해 개도국들간에 채택된 지역 또는 보편협정, ④ 개도국에 대한 일반적 또는 특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타체약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최혜국대우원칙에 입각한 관세 및 기타 무역규제를 제거하고 완화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개발, 재정 및 무역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변경될 수 있다(제3항). 제4항은 개도국의 특별대우에 대한 상기 규정의 적용에 관한 통고와 정보제공 및 신속한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권능부여조항은 그 자체가 개도국에게 특별대우를 할 ‘법적 의무’를 체약국에게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GATT 체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무역특혜’(trade preferences) 개념이 명문화되고 합법화된 것을 의미한다.⁸⁵

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은 각종 무역장벽을 최혜국대우에 따라 제거 또는 완화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특히 ‘특별대우에 관한 결정’ 제7항은 경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무역사정이 개선된 개도국이 GATT 협정상의 권리·의무의 틀에 ‘보다 충분히’(more fully)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GATT 규정의 준수’와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라는 두 개념간의 일종의 공존이라 하겠다.⁸⁶ 즉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경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특정부문이나 전부문에 걸쳐 선진국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 개도국은 GATT 규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함으로써

85) O. long, *supra* note 56, p. 102.

86) *Ibid*, p. 103.

다자간 경제체제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2.5 일반특혜관세제도

선진국이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해 일반적·무차별적·비상호적으로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 GSP)는 국제무역에 있어 개도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GSP는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관계로 GATT 자체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1964년 UNCTAD 제1차 회의에서 초대사무총장 프레비시(Prebisch)에 의해 제안된 보고서에 입각하여 UNCTAD 체제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UNCTAD의 합의를 기초로 GATT 체약국단은 1971년 5월 25일 GATT 제25조 5항상의 의무면제규정을 통하여 GSP를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⁸⁷

GATT 의무면제조항에 의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GSP는 1979년 11월 28일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특별대우에 관한 결정’의 권능부여조항에 따라 제도화되게 된다. 그러나 개도국지위의 결정과 특혜관세부여의 구체적 기준 등은 개별 선진국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GSP의 구체적 운영은 관련 선진국에 따라 상이하다.

한편 GSP가 모든 개도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비해, 선별적 특혜관세 제도는 일부 선진국이 자국과 역사적·지리적으로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의 개도국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영국과 영연방국가, EU와 아프리카국가 및 지중해연안국가, 미국과 카리브연안국가들은 각각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선별적으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⁸⁸

87) GATT, BOSD 18 Supp.24(1972). GSP의 도입에 대한 UNCTAD에서의 논의에 대해서는 최승환외, 「국제거래법」(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pp. 93~94 참조.

88) 선별적 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준성, “WTO/GATT 체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통상법률」(통권 제9호, 1996. 6), pp.137~138 참조.

3.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3.1 개요

동경라운드 타결이후 1986년 제8차 GATT의 다자협상으로 UR 협상이 출범하였으며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UR 협상의 최종타결이 이루어졌다. 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과거 GATT체제와 달리 광범위한 국제무역 질서를 관리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창설되었다. 1995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WTO 설립협정’은 그 전문에서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이 국제무역의 발전과정에서 자국경제개발의 필요에 상응하는 몫을 확보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기본입장을 선언하였다. 또한 제11조 2항에서 특히 최빈개도국은 자국의 개별적인 개발, 금융 및 무역의 필요나 행정적 및 제도적인 능력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약속이행 및 양허를 하도록 요구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WTO 설립협정”에 부속된 대부분의 다자간 무역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WTO 설립협정⁸⁹⁾ 제4조 제7항에서 무역과 개발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최빈개도국(the least-development country members)에 관한 특별조항들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WTO는 크게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개발도상국의 특별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WTO내 다양한 협정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조항을 두고 있으며, 무역개발위원회에서 개발도상국 관련 과제를 추구해 나가고, WTO 사무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원조(주로 각종 훈련 및 교육사업)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WTO 협정에서 약속을 이행할 기간의 제한을 정할 때,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추가적인 이행 및 유예기간 부여(농업, 서비스 등), 개발도상국의 무역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장접근의 폭을 넓히는 조항(섬유, 무역관련 기술장벽 등), WTO 회원국이 국내, 또는 국제적인 조치(반덤핑, 긴급수입제한 등)를 적용

89)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할 때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다양한 수단에 관한 조항(동물과 식물의 건강기준, 기술표준 등의 약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도움 제공) 등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사항들이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는 국제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WTO 체제의 주요한 임무이다. 수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고려가 없는 다자간 무역규범은 선진국의 일방적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한 불공정한 무역규범이라 하겠으며, 개도국의 참여가 없는 다자간 무역규범이나 다자간 무역체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관건은 동등한 무역규범의 적용을 공정성에 입각하여 주장하는 선진국의 이해와 경제여건에 따른 차별대우를 실질적 공정성에 입각하여 요구하는 개도국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WTO 체제하에서 존재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 상품무역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3.2.1. '1994년 GATT'상의 특별대우규정

'1994년 GATT'는 WTO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까지 개정된 '1947년 GATT'를 모두 포함된다.⁹⁰ 다만 '1994년 GATT의 국제수지규정에 관한 양해'에서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한 회원국(개도국 포함)의 수입제한조치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진 점이 주목된다. GATT 체제에 존재하던 개도국우대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일반협정(GATT)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도국 우대조치는 GATT 18조이다. 그러나 UR 협상의 결과로 합의한 GATT 1994에서는 18조 B에서 규정한 소위 국제수지 조항에 관련하여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규제조치는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며 가급적 수량제한 보다는 가격조치를 택해야 하고, 국제수지 위원회에

90) '1994년 GATT'에는 ① WTO 발효 이전까지의 개정을 포함한 '1947년 GATT' 규정, ② 1947년 GATT와 관련된 관세양허의정서, 가입의정서, 의무면제 및 기타 결정들, ③ UR 협상결과로 확정된 GATT 조문에 관한 7개 양해, ④ '1994년 GATT에 관한 마라케쉬 관세양허의정서'들이 포함된다.

의한 협의과정 및 국제수지 조치의 통보를 강조하고 있다. 즉 동 양해는 ① 국제수지를 이유로 취해진 수입제한조치의 철폐를 위한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공표할 것, ② 국제수지의 심각한 악화를 제외하고는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삼가고 무역왜곡효과가 적은 가격조치를 취할 것, ③ 수입제한조치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투명한 방법으로 취할 것, ④ 국제수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입제한조치는 국제수지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⑤ 개도국이나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정식협의절차 대신 1979년 12월 19일 승인된 단순협의절차(BISD 20S/47~49)를 적용할 것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28조에 대한 해석에서 소국 및 개도국들이 협상에 참여할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양허관세를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 당해품목의 수출의 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상협상을 위한 새로운 절차에 관하여 합의하였다.⁹¹⁾ 28조 b-3항은 관세협상에서 경제개발 및 정부재정 수입을 위한 개도국의 관세부과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GATT 1994에서는 개도국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2.2. 농업협정

‘(WTO) 농업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도 차별적인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요소라는 합의와 개도국의 특별관심품목에 대하여 시장접근기회 및 조건을 더욱 개선함으로써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와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합의에 따라서 공약과 관련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협정규정과 양허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문, 제25조 1항).

이에 따라 UR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에 대해 여러 가지 차별적이고 특별한 대우를 하는데 합의하였다.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 폭을 선진국의 2/3수준으로 하였고, 협정의 이행기간도 4년을 더 연장해 주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de-minimis)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의 영역을 넓혀 주었다. 개도국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감축률은 선진국의 2/3 수준까지, 국내보조의 경우 최소허용보조를 농산물 총생산액의 10%(선진국은 5%)까지 인정하였다(제9조 2항 (b), 제6조 4항 (b)). 또한 개도국은 선진국과는 달리 수출농산물에 대한 유통비용 지원과 국내운송비 지원에 한해 수출보조금 감축의무를 면제해 주었다(제9조 4항). 특히 농업 및 농촌개

91)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VIII

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접·간접적 지원은 개도국 개발정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개도국에 있어서 농업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보조, 마약작물에 대한 작목전환의 촉진, 영세농 보조와 농업투입재 보조 등을 감축의무에서 면제하였다(제6조 2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일체의 감축의무를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최빈개도국과 식량 순수입개도국에 대한 개혁계획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결정’에 규정된 데로 행동을 취할 의무를 선진국에 부과하고 있다(제15조 2항, 제16조 1항).

이와 같이 지난 UR 농업협정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감축폭이나 이행기간 등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즉, 관세와 보조금 감축의 폭과 이행기간에 대해 특별한 개도국우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UR 협정 이행 이후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고, 선진국 시장 장벽은 더욱 높아져서 개도국 농산물의 선진국 시장진입 기회가 오히려 더 좁아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도국들은 금번 WTO 농업협상의 주요과제로 개도국의 선진국시장에 대한 실질적 시장접근기회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 주요 수출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대폭적 인하, 시장접근물량의 특혜적 배분, 국내보조 사용의 융통성부여, 선진국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개도국의 주장에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개도국 우대 조치 및 방안 마련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2.3. 위생 및 검역협정

‘(WTO) 위생 및 검역협정’은 위생 및 검역조치의 수립과 적용 및 준수에 있어 개도국의 어려움을 인정하여(전문), 위생 및 검역조치의 준비와 적용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제10조 1항). 회원국은 쌍무적으로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특히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을 촉진하는 데 동의한다. 동 협정 제12조에 의해 설립된 ‘위생 및 검역조치 위원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 개도국의 재정과 무역 및 개발의 필요를 고려하여 동 협정에 따른 의무의 전체 또는 부분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한시적인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제10조 3항). 개도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전문지식, 기술적인 하부구조 또는 자원의 결여로 수입이나 수입제품에 영향을 주는 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이

방해받는 경우 자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해 동 협정의 적용을 2년 동안(1997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⁹² 최빈개도국은 5년 동안(200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제14조)

3.2.4. 섬유류협정

국제적인 섬유류 무역은 1960년대부터 GATT의 규제를 받지 않고 양국간 쌍무 쿼터형식으로 운영되는 국제면직물협정(1961~73년)과 다자간섬유류협정(1974~94년)이라는 차별적인 규제협정에 의해 규율되어 왔다. 특히 다자간섬유류협정(MFA)은 자국의 섬유산업보호를 위한 선진국들의 이해가 반영된 것으로 쌍무협정에 따른 쿼터의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품목별에 따른 선별적 수출입제한을 인정한 점에서 GATT 규범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WTO) 섬유류협정’은 GATT 규칙에 입각하여 섬유류무역을 GATT에 복귀·통합시킴으로써 섬유류무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섬유수출국들인 개도국은 국제섬유류사무소(ITCB)를 통해 단일협상안을 제출하였다.

전문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부여할 것을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섬유류협정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를 인정하였다. 먼저 섬유류협정이 적용되는 ‘대상품목의 범위’는 HS 11부의 50~63류 전체와 30~49류 및 64~96류 중 일부로서 이는 MFA의 폐지를 기본목표로 하는 주요 섬유수출 개도국의 입장이 상당히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MFA가 GATT로 복귀하는 잠정기간(10년)동안 섬유류무역에 적용되는 ‘잠정세이프가드제도’(transitional safeguard)는 본 협정에 의해 자유화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대상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수입급증으로 인해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실제 피해우려를 야기시킬 경우에 ‘국가별료’ 선별적으로 적용되나, 저개발국이나 소규모 수출국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잠정세이프가드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타회원국보다 ‘상당히 보다 유리한 대우’(treatment significantly more favorable)를 부여한다(제6조).

92) 다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제5조 8항(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위생 및 검역조치에 대한 해명요구에 관한 규정)과 제7조(투명성규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없다.

3.2.5. 기술장벽협정

전문에서 기술규정과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제정과 적용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WTO) 기술장벽협정’은 개도국에 대해 ‘차별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를 인정하였다(제12조 1항). 먼저 개도국의 개발과 재정 및 무역의 필요를 고려하여 기술규정과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가 개도국의 수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제표준이 개도국의 개발과 재정 및 무역의 필요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독자적인 국내표준을 채택할 수 있고, 기술규정과 표준 및 적합판정절차의 준비 및 적용의 경우 본 협정상의 의무전체 또는 부분에 대한 명시적이고 한시적인 예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개도국에 부여된 본 협정상의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1항~10항).

3.2.6. 반덤핑관세협정

‘반덤핑관세협정’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해 반덤핑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경우, 개도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고려’(special regard)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덤핑관세의 적용이 개도국의 본질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반덤핑관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본 협정에 규정된 ‘건설적 구제’(constructive remedies)의 가능성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제15조). 특히 덤핑마진이 최소한(즉 2% 미만)이거나 개별국가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수입국내 동종제품 수입량의 3% 미만의 점유율을 차지하되, 3% 미만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덤핑수입량을 모두 합산한 총 덤핑수입량이 수입국내 동종제품 수입량의 7% 이하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반덤핑관세부과를 위한 조사가 종결되도록 하였다(제5조 8항).

3.2.7.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에 관해 별도의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제27조 1항~10항), 먼저 회원국은 보조금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최빈개도국

과 소득수준이 1,000달러 미만의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의 금지규정(제3조 1항 ④)이 적용되지 아니하고,⁹³ 기타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건으로 WTO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8년 동안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7조 2항). 국산품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의 금지규정(제3조 1항 ⑤)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최빈개도국은 8년 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7조 3항). 따라서 일반개도국은 수출용 원자재구입 자금지원 등과 같은 수출보조금을 본 협상 종결 후 8년 이내에(2002년까지) 가급적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이 기간 중 수출보조금의 수준을 강화하지 못하며, 개발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보조금은 조기에 철폐한다(제27조 4항). 또한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조금(actionable subsidies)의 경우에 선진국은 총보조율(total ad valorem subsidization of a product)이 5%를 초과하면 조사없이 피해로 추정하지만, 개도국의 경우에는 피해추정을 배제하고 명시적 근거에 의하여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보조율이 1% 미만으로 추정되면 상계관세 조사를 종결해야하며, 개도국의 경우에는 보조율이 4% 미만이거나 피보조 수입이 총수입의 4% 미만으로 추정되면 상계관세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한편 관계당국은 당해제품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의 수준이 단위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제품의 수입물량이 수입국의 국내동종제품시장의 4% 이하라고 판정하는 경우, 4% 미만인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의 총합계가 수입국내 동종제품 총수입량의 9%를 초과하지 않는 한, 개도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모든 상계관세조사를 즉시 종료한다(제27조 10항).⁹⁴

3.2.8. 세이프가드협정

개도국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9조에서 수입국내의 시장점유율이 3% 이하인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3% 이하인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모두 합산한 총수입량이 수입국내 동종제품 수입량의 9%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한,

93) 즉 수출보조금은 방글라데시 등 최빈개도국이나 국민소득 100달러 미만인 콩고 등 20개 개도국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94) 개도국에 대한 상계대상보조금규정(제3부 : 제5조~제7조)의 적용에 관한 특별대우에 관해서는 제27조 8항, 9항, 13항 참조.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금하게 하였다(제9조 1항). 그밖에도 개도국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최대발동기간(8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며, 재발동기간에 있어서도 선진국보다 유리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제9조 2항).⁹⁵ 즉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대 적용기간은 선진국은 8년이고 개도국은 10년이다. 또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재발동은 선진국의 경우 적용기간만큼 경과한 이후에 가능하며, 개도국의 경우 적용기간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하다.

3.2.9.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조항과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하는 투자조치의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현지부품조달 의무를 부과하거나("local content requirements") 수입을 수출의 한도내로 제한하는("trade balancing requirements") 투자조치들을 금지하는 것이다. 협정을 위배하는 투자조치들은 선진국은 2년 이내에 철폐해야 하며, 개도국은 5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

투자조치의 무역제한 및 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WTO 무역관계투자조치협정'은 전문에서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무역과 개발 및 재정적 필요를 고려한다고 선언하였는데, 동 협정은 상품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만 적용된다.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규정인 제4조에서 개도국은 국제수지를 이유로 취한 무역관련투자조치에 대해 내국민대우원칙과 수량제한금지원칙의 적용을 '1994년 GATT' 제18조 '국제수지에 관한 1994년 양해', '국제수지를 위한 무역조치에 관한 선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면제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WTO 회원국은 본 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협정에 위배되는 모든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상품교역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선진국은 2년 이내(1997년까지), 개도국은 5년 이내(2000년까지), 최빈개도국은 7년 이내에(2002년까지) 통보된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철폐한다(제5조 2항).

95) 개도국의 경우 동일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재발동은, 비발동기간이 최소한 2년인 경우에 한해, 그 이전의 발동기간의 1/2(선진국은 동일한 발동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다(제9조 2항).

3.2.10 기타 규범제정분야

자의적인 관세평가로 인한 무역제한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채택된 ‘관세평가협정’[1994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은 전문에서 개도국의 국제무역을 위한 ‘추가적인 혜택’(additional benefits)을 확보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하였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규정한 제3부 제20조에서는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관세평가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개도국에 대해서는 본 협정 발효후 일정기간 동안(5년 이내) 본협정의 규정적용을 사무국장에게 통보한 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0조 1항). 또한 선진국은 요청하는 개도국에게 기술지원을 상호합의된 조건하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20조 3항).⁹⁶

전문에서 개도국의 특별한 무역과 개발 및 재정적 필요를 고려한다고 선언한 ‘수입허가절차협정’은 무역제한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동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제2조 2항 (a)의 (ii) 및 (iii)상의 요건과 관련하여 1979년 수입허가 절차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개도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수입허가절차위원회에 통보한 후, 2년까지 동 조항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2항 각주 5). 주로 수입개도국이 선적전에 수입제품의 품질, 수량, 가격 등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에 관한 ‘선적전검수협정’과 원산지표시에 관한 ‘원산지규정협정’의 경우에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이 없다.

3.3 서비스무역일반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WTO 설립협정’의 부속서 1B로 채택된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이하 ‘서비스협정’이라 약함)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서 개도국의 참여증진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하였다. 우선 전문에서 개도국의 서비스무역에의 참여증진과 특히 그들의 국내 서비스 능력과 그 효율성 및 경쟁력의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출의 확대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서비스규제의 발전정도에 있어 다양한 국가간에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별회원국의 국가정책목표를 존중하도록 하고, 국가정책목표를 충족시

96) 다만 생산비에 생산자의 이윤과 가타 관련경비 등을 가산한 ‘산정가격’(computed value)에 입각한 관세평가규정(제6조)은 3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제20조 2항).

키기 위하여 자국영역내의 서비스공급을 규제하고 신규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서비스협정’은 제4조에서 개도국의 ‘참여증진’(increasing participation)을 규정하고 있다. 개도국의 참여증진은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양허약속을 통해 촉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특히 개도국의 국내서비스공급능력과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유통망과 정보망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개선, 개도국의 수출관심분야 및 공급 형태에 대한 시장접근의 자유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조 1항). 선진국은 서비스공급의 상업적·기술적 측면, 전문자격의 등록, 인정 및 취득, 서비스기술의 이용가능성 등 자국시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도국 서비스공급자의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일 이내에 ‘접촉처’(contact point)를 설치한다(제4조 2항). 상기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최빈개도국에게는 특별한 우선권이 부여된다. 즉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경제상황과 개발, 무역 및 재정의 필요에 비추어 협상된 구체적인 양허약속을 수락함에 있어 최빈개도국의 심각한 어려움을 특별히 고려한다(제4조 3항).

지원을 필요로 하는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는 동 접촉처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제25조 1항).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은 사무국에 의해 제공되며,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제25조 2항). 이밖에도 ‘서비스협정’에 첨부된 ‘통신에 관한 부속서’에서 개도국의 국내통신서비스와 통신 및 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동 부속서 6항).

개도국의 참여증대에 관한 제4조는 점진적 자유화에 관한 제19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협상)를 통해 촉진된다. 점진적 자유화원칙에 입각한 개도국의 참여증대 규정은 기술이전, 고용요건, 합작투자요건, 국내서비스포함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운영에 관한 정보제공요건 등에 입각하여 외국서비스공급자에게 취하는 개도국의 규제조치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기술이전 문제는 개도국의 서비스부문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협정’에서 최초로 도입된 접촉처의 설치는 개도국으로 하여금 시장접근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리라 평가된다.

3.4 지적재산권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그 전문에서 건전하고 실행가능한 기술적 기반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규와 규정의 국내적 이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가져야 할 최빈개도국의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은 본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자국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8조 1항).

회원국은 1996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의무가 없으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제3조(내국민대우), 제4조(최혜국대우), 제5조(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협정)의 규정을 제외한 본 협정의 적용일을 추가로 4년간, 즉 2000년 1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제65조 1항, 2항).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선진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관행을 협정에 일치시키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일반 개도국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개도국에 대해 본 협정이 발효되는 일자에 자국영역내에서 그렇게 보호할 수 없는 기술분야에 대해 본 협정에 따라 물질특허보호를 확대할 의무가 발생한 개도국의 경우 추가로 5년간 즉 2005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기술분야에 대해 제2부 제5절의 물질특허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제65조 4항).

최빈개도국은 제3조와 제4조 및 제5조를 제외한 본 협정의 적용을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 동안, 즉 2006년 1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최빈개도국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지적재산권위원회는 동 기간의 연장을 허용한다(제66조 1항). 선진국은 최빈개도국이 건전하고 자생력있는 기술적 기초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자국영역내의 기업과 기관에게 이들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incentives)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제66조 2항). 그 밖에도 선진국은 요청시 또는 상호합의된 조건에 따라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을 위하여 기술 및 재정상의 협력을 제공한다(제67조).

개도국에 대한 이러한 특별대우규정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을 가진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과조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 등에 관한 실체법적 권리의무를 개도국에게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협정의 적용을 연기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⁹⁷⁾

97) 함정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국제법평론」(통권 제2호, 1994.3), p. 95.

3.5 분쟁해결협정상의 특별대우규정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은 ‘WTO 분쟁해결양해’의 적용에 있어 특별한 고려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특별대우는 GATT 체제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어 왔다.⁹⁸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해 제소하는 경우, 이러한 제소국은 ‘분쟁해결양해’ 제4조(협의), 제5조(주선, 조정 및 중개), 제6조(패널설치) 및 제12조(패널절차)대신 ‘1996년 4월 5일자 체약국단 결정’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동 결정은 신속한 분쟁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들 이외에는 보상 및 양허정지 규정 등을 포함한 ‘분쟁해결양해’의 규정이 적용된다. 동조항들과 상기 체약국단 결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후자가 적용되며(제3조 12항), 패널은 필요한 경우 제소국의 동의하에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12조 10항).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분쟁시 개도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패널위원 중 적어도 1인은 개도국출신을 포함한다(제8조 10항). 개도국과의 협의과정에서 회원국은 개도국의 특수한 문제점과 이해관계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하고(제4조 10항), 개도국에 대한 제소를 검토함에 있어 패널은 동 개도국이 자국의 논거를 준비하고 제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제12조 10항). 패널보고서는 개도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개도국 우대조항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명시한다(제12조 11항). 권고안 및 판정의 이행감시에 있어서도, 분쟁해결기구(DSB)는 제소대상조치가 개도국의 무역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고려하여 적절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제21조 2항, 7항), 개도국이 회원국인 경우 분쟁해결기구(DSB)는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제소대상조치가 무역에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동 조치가 관련개도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다(제21조 8항).

또한 최빈개도국이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최빈개도국의 특수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고, 최빈개도국이 관련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적절히 자제한다. 무효화 또는 침해가 최빈개도국의 조치에 의해 초래

98) WTO 협정상 개도국 관련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T. Brewer and S. Young, "WTO Disputes and Developing Countries", 33 Journal of World Trade 169(October, 1999), pp. 169~182 참조.

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제소국은 보상을 요청하거나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정지하는데 필요한 승인을 요청함에 있어 적절히 자제한다. 최빈개도국이 관련된 분쟁에 있어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협의과정에서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나 분쟁해결기구 의장은 최빈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설치 이전에 주선, 조정 및 중개를 지원한다(제24조).

3.6 무역개발위원회

WTO는 무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도국의 무역 증진과 경제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가 주로 다루는 분야는 개발도상국 특혜조항의 이행 방법, 기술협력 지침, 다자간 무역체제에 개발도상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최빈개도국의 입장조사 등이 있다. 또한 무역 개발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개발도상국 생산품에 대한 무역 특혜제도나 개발도상국끼리의 지역 협정에 대한 통보사항을 점검한다. 한편 최빈개도국 소위원회는 무역개발위원회의 산하기관이지만 특히 최빈개도국을 다자무역체제에 통합시키는 작업과 이들 국가에 대한 기술협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정기적으로 WTO 협정의 최빈개도국 특혜조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며, 최빈개도국이 다자무역체제에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WTO가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 WTO의 개도국 분류기준에 관한 논의동향과 전망

지난 UR 농업협상을 필두로 WTO 내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UR 협상 당시에 인도에 의하여 개도국 분류지표로서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 가계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품비 비중 등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지표는 협상에 의하여 보다 발전시킬 것이 제안되기도 하였다.⁹⁹⁾ WTO 농업위원회 분석 및 정보교환작업(AIE)의 논의 과정에서 각국의 농업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인구 중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즉 5-10%이내를 차지하는 국가를 선진국으로, 농업인구 차지 비중이

99) 최양부 · 김한호, op. cit., pp.95-96.

50%가량을 차지하는 국가를 개도국으로 설정하자는 제안도 행해졌다.¹⁰⁰

그러나 UR 협상 및 WTO 내의 논의는 대체로 개도국우대 및 감축의무이행내용 등에 집중되었으며, 실제로 개도국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도출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등 신흥공업국가들과 동구권 국가들의 WTO 가입에 따라, 향후 개도국지위는 종래와는 달리 좀 더 엄격하고 투명한 조건과 기준에 의해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와는 달리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상호주의를 강조하면서 개도국들도 경제발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시장의 개방혜택을 모든 국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한다는 종래의 입장에서부터 변화하여 앞으로는 교역상대국의 시장개방의 정도에 따라서 미국시장개방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적 또는 전략적 성격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WTO 체제하에서 과거 투명하지 못했던 개도국지위와 그들에 대한 우대 조치들은 다자 또는 양자협상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여전히 개도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명실공히 국제무역을 관장해 온 GATT/WTO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BOP 조항 및 GSP 수혜대상국 졸업,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 여타 제조업의 수출능력 등을 이유로 선진국과 일반개도국들이 동시에 우리나라를 일반개도국과 달리 취급하여 개도국우대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OECD 가입 이후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OECD 가입과 관계없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력이 신장되어 갈수록 이와 같은 경향은 심화되리라 본다.¹⁰¹

일단 지난 UR 농업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UR 농산물협상의 결과 및 WTO 협정문은 기존 합의내용대로 이행하면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 차기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졸업 압력은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협상대책과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 등 효과적 대응전략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0) 쿠바·도미니카 공화국·엘살바도르·니키라과·파키스탄·스리랑카·우간다, AIE/63.

101) 채욱, OECD 가입의 의의 및 효과, op. cit., pp.18-19.

제 7 장

개도국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방향

UR 농업협정에는 각 분야별로 개도국에 대해 이행기간 및 감축폭 등의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UR 협상 당시 우리 나라는 농업의 취약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개도국 우대의 혜택을 받아 왔다. 이렇게 UR 협상에서 확보한 우리 나라의 개도국지위는 실제로 지금까지 UR 농업협정을 비교적 원만히 이행해 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 과거 UR 협상 당시에도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더욱이 UR 이후 OECD에 가입하여 새로운 협상에서는 우리 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확보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압력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가 농업분야에 있어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논리로는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대한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에서의 일반적 평가, 그리고 UR 협정타결 이후에 나타난 한국 경제 상황 및 농업여건 변화에 대한 논리적 설득과 주요국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효과적이고 단계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 대응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1. 국제사회 및 국제기구의 일반적 평가

개도국의 정의 및 그 결정기준은 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관행상 당사국 스스로의 개도국선언과 각 국제기구가 내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1인당 GNP와 같은 단편적인 경제지표만이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선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를들어 한국의 경우 UR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WTO 체제상 이미 개도국으로 분류된 바 있으며, 세계은행(IBRD)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자료, 기후변화협약,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수혜국명단, FAO의 식량농업관련지표 등에서도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APEC 내 무역, 투자자유화 및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에서도 개도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밖에 국가별 발전 정도에 따른 유엔개발계획(UNDP)의 국가분류에서도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각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개도국문제는 각각의 특수한 목적과 이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도국지위의 문제도 다분히 상대적이라 할 수 있다. 각 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개도국지위의 기준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어느 한두 개의 협약과 국제기구를 통해 개도국지위가 강력히 부인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곧 그 국가의 일반적인 개도국지위를 부인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은 단지 3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동안 경제/사회체제가 정비되어 온 선진국과는 분명히 다르며, 아직도 한국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환기에 처해 있는 개도국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이란 경제적 측면 뿐만아니라 어떤 국가의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 국가부류라는 것이다. 또한 향후 강력히 우리에게 선진국과 같은 협상결과의 의무이를 요구하는 국가들에게는 왜 한국이 선진국인가를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통상적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FAO, IMF, IBRD 등 일반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데, 국별 통상이해관계가 큰 WTO 협상의 장에서만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려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논리피력도 가능하다.

2. UR 이후 경제 상황 및 농업부문의 여건변화

우리나라는 이미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개발이 완료된(developed) 여타 선진국과 달리 아직도 개발이 진행중인 단계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부문은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는 각종의 경제 및 사회 관련 지표, 그리고 국민의 심정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선진국이라고 단정하기에 큰 무리가 있으며,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는 여타 선진국들에게서 보여지는 개발지표와는 더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UR 협정의 이행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금융위기로 인해 아직까지도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업부문 역시 UR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여건은 개도국지위를 부여 받았던 지난 UR 타결 당시 보다 금융 및 외환위기의 여파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은 IMF 금융지원체제하에서 경제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수행하고 있고, 이때를 전후로 하여 1인당 GNP와 GDP를 비롯한 기초경제지표 및 국가경쟁력, 국가신인도, 인간개발지수 등 각종 사회적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어 한국과 비교 대상국이 될 수 있는 홍콩·대만·싱가포르·이스라엘·포르투갈·스페인·그리스 등에 뒤쳐지고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국가 발전 및 개발정도를 나타내는 경제 및 사회지표들이 기존의 선진국 및 OECD 회원국의 평균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농업지표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인구 중 농업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국내총생산에 대한 농림어업비율, 농가 호당 경지면적 및 영농선진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영농기계화율 등의 지표 역시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농업·농촌 현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한국의 농업부문은 여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왔으며, 특히 지난 1992년부터 농업구조조정을 위해 추진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통한 구조조정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채 경제위기로 인한 체계적 지원 감소로 향후 정책적 노력과 시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관례상 특정 국가의 개도국지위 여부는 자기선언적 차원에서 결정된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우리의 어려운 여건을 다른 나라에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에 있어서 구조조정의 부진 및 상대적 낙후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지금의 한국 농업여건은 UR 협정 타결 당시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설득하는 것이다. UR 협정 이행 및 IMF 금융위기가 현실화된 지난 1997년을 전후로 하여 농업부문은 더욱

침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업부문의 여건을 보여 주는 경제 지표는 매우 악화되었다. 구체적으로 UR 협정 타결 이후 농림업생산액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IMF 위기 후에는 총 농림업생산액의 절대액마저도 감소한 바 있음. 이외에도 UR 합의에 의한 시장개방과 국내보조 감축 등의 이행에 따른 과급영향으로 큰 폭의 농가소득 감소 및 둔화, 도·농간 소득격차의 심화, 농가교역조건의 악화, 농가부채의 증가 등 한국의 농업·농촌의 여건은 지난 UR 협상 타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각 국가별로 나름대로의 국가의 기본적 생존권 및 주권(특히 경제적 주권)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문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식량안보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경제적 주권은 식량안보의 확립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국가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개도국의 지위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산업분야보다 더욱 국제법상 국가의 생존권, 자기결정권 및 경제적 주권의 확보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개도국지위의 결정은 각국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3. OECD 가입과 개도국지위 관련 대응논리

한국은 지난 1996년 선진국 모임이라 여겨지는 OECD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OECD 가입이 자동적으로 개도국지위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다. OECD 설립협정은 개도국의 참여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OECD 내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되고 있는 회원국들이 WTO 협정 내에서도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OECD 회원국 가운데도 터키와 멕시코 등은 WTO 체제에서도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은 OECD 가입 당시에 이미 환경 및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의 OECD 가입과 관련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어 그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하여 견지해야 할 기본 입장은 다자간 협상의 장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특정 국가 경제의 성숙도와 능력에 따라 부문별로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OECD 가입시 천명한 대로 농업 및 기후협약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 향후 국제협약 및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업부문에 대한 개도국 지위유지의 필요성을 재차 천명하고 우리의 능력 범위안에서 최대한 의무 이행기간 단축 등 무역자유화에 공헌하겠다는 의사 표명하에 농업부문에 개도국 지위를 재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지난 UR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개도국 지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무역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 차원에서 WTO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의 분야에서 조기 자유화 이행에 노력해 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4. 주요국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설득 노력

현재 농업발전단계가 우리나라처럼 구조조정 단계에 처해 있는 협상 참가국을 규합하여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공조체제 구축이 가능한 국가의 숫자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우선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강한 협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멕시코, 터키, 이스라엘, 더 나아가 케언즈그룹 중 최근 공업화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는 아세안 개도국이 주요 잠재적 협력대상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조국가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문은 일반적인 농업발전단계에서 각국이 필연적으로 겪게되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잠재적 협력이 능국가들에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업부문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처럼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제고와 설득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등 WTO 협상 주도국에 대한 적극적 설득과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와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개도국들과의 관계도 돈

독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OECD 가입이후 탈퇴한 77그룹 국가들과의 관계 소원을 막기 위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증대 등 적극적인 경협정책을 추진하여 일반 개도국들의 협조도 구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향후 WTO, OECD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 참여하여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유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시키고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특정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정책상 대외공신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얻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경제에 놓여 있는 특유의 위상을 고려하여 WTO 등에서 선진국들과 개도국간의 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리더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이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고, 한국 경제의 발전수준에 비추어 시장개방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확보와 관련된 대외적 수용의 어려움을 근거로 현재 WTO 체제내 존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에 새로운 그룹(가칭 선진개도국)의 설정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같은 제안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보이지만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의 우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 보다는 우선 현행 개도국지위의 확보에 노력하면서 실제 양허협상과정에서 일반 개도국보다 진전된 상태로 우리나라의 능력에 상응하는 기여와 WTO 시장개방 약속이행을 추구하겠다는 선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협상이란 상대방이 존재하며, WTO 체제상 개도국지위의 문제는 일반 국제기구와 달리 국가 협상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만일 개도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협상전략도 설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농업부문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사실상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고 국내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의 지위와 관련된 입장을 어떤 방식과 시점에서 표명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5. 조속한 국내 대응체제 마련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 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는 매우 민감한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한국 농업은 향후 농산물 개방의 폭과 속도, 쌀 관세화 재협상 결과뿐만 아니라 개도국지위의 재확보 여부에 따라 그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 나라는 개도국지위 확보에 무엇보다 큰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더욱 면밀한 분석과 적절한 논리개발을 통해서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 확보에 최대한의 협상노력이 범부처적으로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사실상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는 낙후되어 있는 한국 농업부문의 효과적 구조조정 뿐만아니라 농업부문의 정치 사회적 민감성, 그리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발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전체 사회 및 경제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뉴라운드의 협상계획에 의한다면 한국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유지문제는 조만간 닥쳐올 현안 과제이다. 2003년 4월 이후 부터 제 5차 각료회의 전까지 이루어질 예정인 이행계획서 제출단계와 그 후 각국에 의해 작성된 시장개방이행계획서에 대해 2004년말까지 이루어질 이해관계국과의 이행계획서 검증작업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된 사전 준비작업없이 2003년을 맞이할 경우에는 더 큰 정책실패의 문제로 봉착될 우려가 큰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드러내 놓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책반 마련은 어려우리라 판단되나 빠른시일내 정부부처(특히 농림부와 외교통상부)간 우리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조율작업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처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확보와 관련된 대내외적 대처방안이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협상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을 줄이면서 우리의 일관된 입장표명을 통해 협상력을 최대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환경 관련 국제협약에서의 한국의 개도국지위

기존의 각종 국제환경협약에 우리나라는 개도국자격으로 가입해 왔으며,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환경규범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주세를 볼 때, 이는 국제통상규범에서 한국의 개도국지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개도국자격으로 가입한 대표적인 환경협약을 보면, 1992년에 채택된 기후변화협약(1993년 가입), 1989년에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1992년 가입), 1992년에 발효된 바젤 협약(1994년 가입),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1994년 가입) 등이다. 한편 지구환경금융은 1인당 GNP 및 국가정책을 고려하여 자금공여국과 지원대상국으로 구분하는데 자금공여국은 18개 선진국과 12개 개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자금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의정서에 따르면 186개 회원국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38개 선진국은 2008~2012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방출량을 평균 5.2%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 염화불화탄소(CFC) 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 경제발전단계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수요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선진국처럼 감축기준연도나 감축목표량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상당기간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선진국과 같이 경제성당과 에너지소비가 안정되는 시점에서나 선진국과 같은 의무부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은 OECD 가입국가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 다만 전세계 이산화탄소(CO₂)배출량의 1/4을 점하는 미국의 경우, 자국내 제조업부문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지구온난화 현상을 입증할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미국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이 교토의정서 탈퇴라는 강경한 입장변경의 또 다른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국에만 부과되고 개도국은 면제되기 때문에 이들 개도국의 무임승차로 선진국만의 온실가스배출의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는 불만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온실가스 방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으나, 기후변화협약·교토

의정서에서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올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부담압력은 점차 가중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면제받는 것이 불공평해서 개도국도 배출규제의 틀속에 넣으려고 할 경우에는 농업분야처럼 우리나라의 제조업분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것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 정부도 동 협약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록 2] OECD에서 논의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문제(요약)¹⁰²

1995년도에 우리나라는 소위 선진국 모임이라 불리우는 OECD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당시 가입조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문제는 주요 쟁점중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심사·검토하는 무역위원회(96. 5. 3) 및 환경위원회(96. 5. 10)에서 각종 국제협약에서 우리의 개도국지위 유지문제가 쟁점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그 후에도 서면질의를 통하여 양 위원회는 개도국 지위 유지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표명을 재차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내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I 무역위원회 및 환경위원회

1. 무역위원회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

(1) 무역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우리측 답변

<OECD 회원국의 질의 요지>

1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996년에 발간한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의 연구보고서 중 일부로 수록된 이창재박사의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문제”를 참고로 제작성하였음.

- OECD 가입후 우리나라의 WTO 협정 및 향후 통상협정에서의 개도국 지위 유지문제

<우리측 답변 요지>

- 지금까지 WTO 등 국제협약에서 확보한 개도국 지위는 계속 유지해 나가되, 가능한 분야에서 의무를 최대한 조기이행토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OECD 가입후 향후 협상과 협약에서도 회원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농산물 및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환경분야에서는 개도국 지위의 유지가 일정기간 불가피함을 설명하였다.

<회원국의 반응>

- 한국은 전체 경제규모, 산업별 경쟁력 및 1인당 GNP 등 여러부문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한국이 OECD 가입 후에도 개도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한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문간 성장불균형이나 몇몇 부문에서의 구조적 취약성 등을 이유로 개도국지위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기존 선진국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측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영국, 호주는 신규회원국들의 가입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2) 무역위원회 서면질의 및 우리측 답변

가. WTO 협정상의 의무이행 시기

<질의>

- 96년 7월 1일 이후 어떠한 WTO 의무조항에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예정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무역위 본회의(96.5.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개도국의 지위로서 UR 협정에 참여하였으므로 UR 협정의 이행도 기본적으로 개도국으로서 이행할 것이나, 농업분야이외의 경우에 한국의 능력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이행시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국정부는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UR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이다.
- 한국은 기존 WTO/TRIPs(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1995년 12월 특허법을 개정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도국의 의무이행기한을 앞당겨 이행하고 있다.

표 1 TRIPs 협정 관련 의무이행 기한

TRIPs 관련법규	시행일자
상표법	1996년 1월 1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1996년 6월
특허법	1996년 7월 1일
저작권법	1996년 7월 1일
농약관리법	1996년 12월 7일
종자관리법	1997년 12월 31일

- 또한 한국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과 관련, 1996년 4월 25일 동 협정 제25조에 의거하여 한국의 보조금 현황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WTO에 통보한 보조금 중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보조금의 경우 개도국의 철폐기한인 수출보조금 2002년, 수입대체보조금 1999년보다 앞당겨 1998년

내 철폐 또는 개선토록 할 것인 바, 이는 선진국의 의무이행시한인 1997년 보다 불과 1년이 늦은 것으로서 개도국의 이행기간보다는 1-4년 앞당겨 이행하는 것이다.

- 이러한 한국의 UR 협정 이행 가속화 노력은 다자간 무역확대 및 자유화를 추구하는 WTO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국이 능력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나. 농업에 있어서의 개도국 지위

<질의>

- 한국은 농업부문에 대해 언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인가?

<답변>

- 한국은 UR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로 참여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무이행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잘 알다시피 한국의 영농구조와 여건은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실정임. 호당 경지면적은 1ha 내외로서 매우 영세하고, 토지·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나 기술 및 경영발전 수준도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가고 있다.

2. 환경위원회

(1) 환경위원회 서면질의 및 우리측 답변

- 환경위원회는 5월 10일 당초 심사종결예정이었으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우

리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질의키로 결정하였다.

<질의>

- 한국은 언제까지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인가?

<답변>

- 한국은 능력범위내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OECD와의 협력을 긴밀히 해 나가고자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부속서 I/II 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한국의 산업구조 및 경제성장 단계상 비현실적임을 밝힌 바 있다.¹⁰³
- 1990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3.3톤이었으나 한국의 경우 1.53톤에 불과하여 한국의 의무를 OECD 회원국과 같은 기준인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 한국의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일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높은 에너지 소비증가로 현재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 그러나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영원히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감축목표 및 일정의 설정에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안정화 통제가 가능한 시점을 고려하여 한국의 능력범위내에서 기후변화협약의 정신에 따라 한국의 책임과 의무이행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

103) 1992년 기후변화협약은 당시 OECD 회원국가와 전환기 경제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Annex I 국가로 명명함. 이들국가는 Co2등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의무를 짐. 또한 Annex I 국가 중 OECD 회원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에 재정 및 기술지원을 요구하며, 이들은 Annex II 국가로 구분된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non-Annex I 국가에 속하고 있음.

(2) 환경위원회 추가 질의 및 우리측 답변

- Long OECD 사무국 환경국장은 7월 25일 EU 및 스위스의 추가질의를 통보 하여 옴.

<질의>

- 한국이 향후 AGBM¹⁰⁴에 OECD 부속서 I 국가로서 참여할 것인가?
- 한국이 부속서 I 국가들에 대한 지침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답변>

- 한국은 기후변화협약상 현 지위(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나 협상결과 이행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불가능하다.
- 한국정부는 기후변화협약상 현지위(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채 가능한한 자발적 차원에서 OECD 국가 보고서에 상응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II. OECD 사무국의 견해¹⁰⁵

1. 한국의 입장

(1) 무역부문

104) AGBM(Ad hoc Working Group on Berlin Mandate): 19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의 의사결정 기구인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ners)의 제1차회의가 1995.3.28~4.7 베를린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부속서 I 국가에 대하여 현 규제의무의 적정성 검토와 2000년 이후의 감축의무 수립 논의를 위해 구성된 실무협상기구임.

105) OECD 사무국이 96년 7월 25일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임.

- 한국은 1994년에 UR협정의 여러부문에서 개도국지위에 따른 특수조항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한 바 있다.
- 특히 무역위원회 토의과정에서 한국측은 농업부문과 관련하여 OECD 가입 후,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문제에 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시사하였다.
- 한국측은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아직까지 한국이 개도국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고 설명하였다.
- 한국정부는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중에 있으며 OECD 가입이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 한국은 농업 및 기후변화협약을 제외한 향후 모든 국제협약에서 개도국지위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다.

(2) 환경부문

- 한국에게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약에서 선진국에게 주어지는 특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왔다.
- 환경위원회에서 한국측은 한국이 OECD 가입후 국제사회에서 경제·사회발전 수준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질 것이란 점과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밝혔다. .

(3) 기타

- 참고로 1994년 11월 APEC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관해서도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 바 있다.

2. 개도국 지위의 개념

-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에 관해 합의된 정의는 없는 실정이다.
- 일부는 1인당 GNP와 같은 경제수준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일부는 당사국 스스로의 개도국 천명 여부에 달려 있음.

(1) 원조 관련

- 세계은행과 IMF는 다양한 형태의 수혜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경제수준을 개도국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음.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개도국 명단은 공적개발원조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적 목적이 있고, 일부 국가는 이를 원조 대상국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 한국은 DAC 개도국 명단에서 중상소득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2) 무역부문

- WTO 협정내에는 개도국에 대한 특수조항이 없으나, 1994년 UR에서 체결된 다수의 협약에 개도국에 주어지는 특혜가 있고 여기서 개도국 지위는 당사국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이에 대해 다른 회원국이 이의를 제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UR 협정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가 부여되는 주요한 협약은 농업, TRIPS 및 서비스교역에 대한 일반협약 등이다.

(3) 환경보호부문

- 환경부문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생긴 것은 1992년 리우선언에서다. 리우선언 제7원칙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도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갖도록 되어 있다.

3. OECD 절차

- OECD 설립협정은 OECD내 개도국 참여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제1(b)조 및 제2(e)조). 실제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및 터키 등이 최근까지도 개발원조와 관련 개도국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현재도 멕시코와 터키가 DAC 개도국 명단에 속해 있고 UR에서 개도국 대우를 누리고 있다. 멕시코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II 국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터키는 아직까지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체코공화국 및 헝가리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에만 속해 있고 부속서 II는 빠져 있다. 멕시코의 OECD 가입때 이사회는 77그룹에 속하는 것이 OECD 가입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멕시코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OECD는 멕시코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 무역위원회와 환경위원회에서 일부 회원국은 신규 회원국의 OECD 가입절차에 신청국가의 다른 국제기구에서의 입장은 고려될 필요가 없고 오직 OECD 가입규정 및 의무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부 다른 회원국은 OECD 회원의 공동 가치 및 견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규회원이 OECD 규정의 법적 의무의 이행외에도 다른 국제포럼에서도 OECD 회원들의 수준에 해당하는 책임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 결론

- 개도국에 대한 객관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개도국의 획기적인 경

제성장으로 개도국 개념자체가 '유동적'인 개념으로 되었다. OECD는 주로 선진국의 모임이나 적어도 일정부문에서는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간주하는 국가들을 항상 포함되어 왔다. 다른 포럼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이 OECD 신규 가입국이 다른 포럼에서 OECD 회원국 전부 혹은 대다수가 지기로 한 모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록 3]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관련 OECD 문서 원문 해석

C(96)174: OECD 무역위원회 작업반 최종 보고서

EXAMINATION OF TRADE POLICY ASPECTS CONCERNING COUNTRIES REQUESTING OECD MEMBERSHIP: THE REPUBLIC OF KOREA

I. 머리말

1. 이사회(Council)에 의해 승인된 지침에 따라 한국의 OECD 가입과 관련된 승인 과정의 일환으로 무역위원회는 한국과 함께 무역과 무역관련 정책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무역제도를 검토하였다.
2. 무역위원회의 결정[cf. TD/TC(95)9/REV]과 OECD회원국 가입요청국의 가입절차를 위한 동위원화 가입작업단(Working Party)의 결정에 따라, 1996년 3월 28일에 있었던 Working Party 모임에서는 사무국 보고서 TD/TC(96)12를 바탕으로 한국의 무역정책의 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토의가 이루어졌다. 무역위원회는 1996년 5월 2-3일 양일간 개최된 115번째 회의(session)에서 한국의 일반적인 무역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3. 한국은 OECD 승인을 위한 회의와 서면통보 절차 과정 중에 제시된 관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많은 조치들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이문서의 부속서에 나타난다.

II. 작업단회의 토론 요지(Oral and written discussion with Korea in the Working Party)

4. 통상산업부 장관이자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인 이석영씨는 Working Party에서 한국 무역분야의 상황과 발전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이장관은 한국 무역은 급속히 성장했으며, 오늘날 세계 12번째 무역국가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무역의 성장에 의해 촉진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oil shock과 외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수입을 자유화했으며, 무역 절차를 개선시켜 왔다. 외국의 직접투자와 경쟁이 촉진되었다. 한국은 환율 규정을 개혁 중에 있다.
5. 이장관은 현정부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자유화하길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무역정책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자유무역 원칙에 입각한 균형적인 무역 성장
 - 국제적 직접 투자를 포함한 산업 협력의 증진
 - 다자간 무역 체제의 강화
 - 개발 협력의 증대
6. OECD 회원국의 대표단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OECD 참여의사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많은 회원국들은 한국의 경제 성과와 무역성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 회원국 대표들은 무역국가 사이에서 두드러진 위치가 한국을 자연스럽게 OECD 회원국 후보로 만들었으나 이 위치는 또한 새로운 책임을 만든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믿었다.
7. The Working Party는 관세, 수입선 다변화제도(the Import Diversification Programme), 최혜국대우(MFN), 그리고 무역 관련 기술장벽, 검사분야, 유통기간, 관세청산절차, 분류문제, 원산지규정과 자동차 시장의 자유화, 지적재산권과 현행 규정의 적용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 또 다른 토론 쟁점들은 선박제조능력, 재정분야의 자유화 노력, 그리고 농산물 수입에 대한 제한 등이었다.
8. OECD 회원국들에 의해 제기된 많은 질문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Working Party는 CTI(Current Trade Issues)forum을 이용하여, OLIS에서 토론을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Working Party에서 토론을 포함한 모든 논의가 회원국들의 질문과 한국측으로부터의 답변을 포함하는 Room Document TD/RD(96)7에 수록되었다. 이 Room Document는 115번째 무역위원회 session에 제출되었다.

9. 이사회 의장은 Working Party가 한국의 OECD 가입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무역위원회에서 한국 무역정책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측면을 토론하기에 적합한 주제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했다.

- i) 한국이 OECD회원국 가입 이후에도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 ii) 한국의 자유화와 민영화(privatization)를 향한 일반적 입장과 OECD 내에서의 역할
- iii) 보호주의적 지표

III. 무역위원회 토론 요지(Oral and written discussion with Korea in the Trade Committee)

10. 115번째 무역위원회 session에서, 통상산업부 차관 한덕수씨는 한국대표단의 수석대표였다. 그는 국가 성장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현 정부는 특히 무역자유화를 포함하여 세계화, 민영화, 규제완화 그리고 자유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통계 수치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효율적이고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1. 위원회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7.9%라고 밝혔다. 일부 회원국들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이전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부과되는 조정관세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국은 이에 관해 이러한 관세율 증가는 Uruguay Round 양허관세율(concessionary tariff rate) 범위 이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수입은 관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관세 quota 제도는 실질 관세를 낮추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115개(1.1%)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수량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종적인

수량 제한은 2001년에 철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가장 문제가되는 제한은 수입선 다변화제도(Import Diversification Programme)로, 이는 사실상 일본으로부터 리스트에 오른 품목들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다. 한국은 이 Import Diversification Programme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있다.

12. 다수의 OECD회원국들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입후에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 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대부분의 한국인이 한국을 개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한국이 현재 지위를 전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에게 지위전환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 믿고 있다. 한국의 OECD 회원국 가입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향하도록 하는 움직임을 가속화 시킬 것이지만, 한국은 당분간 이러한 논쟁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개도국의 지위로 Uruguay Round에 참여했고,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어떤 대표는 한국은 Uruguay Round 협상 목적을 위해 농업분야에서 상당한 융통성이 주어졌으나,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의무를 감수해야만 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으로 있을 협상과 협정에서 한국은 농업부문과 UN 체제하 기후협약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로 분류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구조조정이 한국 농업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일부 회원국들은 한국은 국내적으로 가능한한 빨리 농업 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지위를 버려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머지 회원국들은 한국이 OECD 가입 이후에 있을 무역 협정에서 아직까지 예외없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13. 한국은 개도국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앞당겨서 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보조금 협정, 그리고 상계관세조치(Countervailing Measures)의 조기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선진국의 경우 1996년 1월부터 TRIPS 협정 이행이 발효되는 데, 한국은 1996년 7월 1일 개정된 특허법을 도입했다. 새로운 법은 수입품에 대해 한국 제품과 동등하게 15-20년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것이다. 1996년 상반기(1-6월)에 만기가 되는 특허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에 적용 받지 못

한다. 한 대표는 1996년 1월중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20년 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고, 이는 TRIPS협정에서 선진국들에게 설정된 기준에 일치하지 않으며, 그러한 회사들에 심각한 상업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TRIPS협정에서 선진국의 이행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관점에서, 한국의 특허법에 적용될 다른 수정안은 TRIPS협정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에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은 특허 보호가 소급되어 연장될 수는 없다고 했으며, 한국은 TRIPS 협정을 개도국보다는 3년 6개월 앞서서, 그리고 선진국보다는 오직 반년 늦게 이행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14. 일부 대표가 한국의 자유화와 민영화 정책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무역과 관련된 토론의 장에서 한국이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하였다. 한국 대표는 OECD 회원자격은 한국으로 하여금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한국은 초청된다면 Export Credit Group에 참여할 것이고, 공식적으로 지원된 Export Credits의 지침을 위한 협정(The 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s Credits)의 참가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5.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의 일부 보호주의적 태도나 외국 기업의 이익에 대한 차별 등 그들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산업 단체의 수입허가절정에 관한 당국의 규제와 자국 정부의 원조를 구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위협을 지적했다. 한국대표단은 정부의 태도가 자유화방향 일지라도 종종 그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으며,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 정부의 보호주의적 의도가 있다면 공격받을 수 있다. 한국 대표단은 정부의 역할이 한국 국민을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한국 정부는 1997년 5월 7일, 또 다른 “경제 관리 투명화 개선 계획(Economic Administration Transparency Improvement Plan)”을 착수했으며,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있었던 총 2,724개의 승인 또는 허가제도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규제철폐와 관계 제도의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6. 무역위원회 토론이 끝나고 일부 대표들은 한국의 답변과 발언에 대해 만족한

다고 전했으며, 또 다른 대표들은 한국의 무역자유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더 깊은 논의의 필요함을 지적했다. 무역위원회 의장은 한국의 기준이 다른 모든 후보 국가들의 기준과 동일해야 한다는데 역설하면서, 의견 교환은 OLIS(the CTI forum)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 결론지었다. 의장의 요청으로, 사무국은 Non-Member Economies[C/NM(96)53]의 위원회(the Group of the Council)를 위한 중간보고서를 준비했다. 6개 회원국(Six Members)은 무역위원회 회의 이후 추가적인 질문을 제출하였다. 위에 언급된 사항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7. 한 회원국 대표는 한국의 모든 교역대상국에게 이익이 확장되지 않고 쌍무적으로 특정국가와의 협약체결 등을 포함하여 MFN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여겨지는 한국 무역 정책의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 회원국 대표는 이 문제를 우려하는 실례로서 통신장비의 구입, 자동차 승인(automobile homologation), 그리고 공중위생(sanitary)과 식품위생(phytosanitary)규범을 통제하는 한국의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통신 조달 문제는 이제 WTO 협의하에 놓여졌다. 또 다른 대표는 이러한 제도의 유지 근거에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쌍무적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접근부족, 그리고 지적 재산권 보호의 결여라는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이 문제가 MFN에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조달은 MFN (Article 1. and Article 17.1 of GATT 1994)적용의 예외 사항이며, 이는 한국이 1997년 1월 1일부로 적용할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의해서만 중단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은 WTO와 정부조달협정에 종속된 조항에 명시된 구입 품목 리스트에 통신장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 정부당국은 WTO 체제내에서 만들어진 MFN 원칙을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18. 한 회원국 대표는 한국이 완전히 TRIPS 협정에서 구체화된 소급적 재산권 보호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국 내에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상표(trademark) 및 유명 상표 도용, 무역 기밀 절도, 의류 디자인 도용,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있다. 한국 대표부단은 한국정부가 1993년 이후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

한 구매단속을 강력히 하는 한편,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자발적인 공공캠페인을 벌여왔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강경한 보호시책의 시행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분야에서 명백한 효과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최종소비자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근절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OECD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19. 자동차 검사분야에서, 한국은 형식승인 절차를 능률적이고 간소화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예를들어 38개의 안전성 검증 항목중 5개의 항목을 폐지한 점이나, 1996년 1월로서 20,000KM 내구성 테스트 면제 등이다. 더욱이, 만약 EC나 US와 같은 외국 당국의 안전성 검증 항목 기준이 한국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더욱 높은 수준이라면,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서와 제조업체(US의 경우)에 의해 제작된 데이터 요약, 또는 이와 동등한 당국(EC)에 의해 발행된 검증 결과를 인정한다는 점 등이다. 약품 검사에 관해, 한국은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공동체의 약품조제서에 근거한 기준과 방법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20. 일부 회원국들은 화학적 가공을 요하는 무두질 된 가죽에 관한 공중위생 인증서의 필요성, 그리고 산업 단체들에의 수입 허가 결정을 위한 당국 대표단 활동에 지급되는 수행 보조금에 관한 조건과 같은 세부 내용의 필요성을 포함한 기술적 쟁점들을 제기하였다. 한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 철폐는 물론, 1995년 농약관리법(Agrochemical Management Law)과 1996년 총기류, 총검류, 폭발물에 관한 법들이 무역에 있어서 수많은 기술적 장벽들을 제거해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5년 10월중 개정된 식물보호법(Plant Protection Act)(1996년 10월에 발효됨)체제하에서 한국에 이미 널리 확산된 해충들에 대한 검역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밝혔다.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의 실험 검증은 1996년 10월에 실행될 것이며, 이런 데이터에 근거한 방식의 강화가 이미 진행 중이다. 모든 냉동식품에 대한 저장기간의 필요 조건 역시 1996년 7월 1일까지 자유화될 것이며, 부패하기 쉬운 식품과는 다른 모든 식품에 대한 저장기간 필요조건도 1998년까지 자유화될 것이다. 부패하기 쉬운 과일의 경우, 1995년에 식품 검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한 처리 방식이 도입되었다. 한 회원국 대표는

한국의 식품에 관한 보존기간 규제 이행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한국이 현행 의무를 이행하는데 불충분하며, 즉각적인 개선 움직임과 모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IV. 결론(Conclusions)

21. 일반적으로, 한국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에 걸친 수량제한의 철폐,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향후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자유로운 무역 정책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일부 문제는 일단 한국이 OECD회원국이 된 이후에 더욱 깊은 논의를 통해 다루어질 것이다.

i)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있을 WTO 협상에서 한국이 선진국 지위로 참여할 것이라는 한국의 진술에 대해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은 농업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거나, 또는 이 예외사항을 종식하는 시간예정표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주된 우려를 표시했고, 무역 협상과 국제사회에서 회원국들의 경제적 위치와 일치하는 다자간체제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OECD회원국이 일정수준의 책임을 맡아야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일부 회원국은 한국이 가능한 빨리 농업부문에서도 개도국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회원국들은 한국이 OECD 가입 이후에 있을 무역 협정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예외 없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확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한 회원국은 농업분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Uruguay Round 협정을 선진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ii) 이 위원회는 수입선다변화제도, 수입통관절차, 긴급관세의 적용, 외국기업의 상업적 이익에 대한 정부 방해, 수입반대 성향, 산업체에 대한 수입 허가 결정에 대한 당국의 개입, 특별 또는 차등 세금, 보존진열기간 규제, 일정한 인증서의 필요성과 보조금을 위한 국산 혼합규정 등과 같은 한국의 관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회원국은 이러한 기준들이 시간낭비적이고, 차별적인 수입

통관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 iii) 위원회는 TRIPS 협정 이행을 가속화하는 한국의 조기에정계획에 대해 환영했지만 아직은 한국의 새로운 이행계획이 선진국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과, 1996년 상반기 6개월 이내에 만기하는 특허에 대해 완전히 20년 동안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실패했다는 데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22. 무역위원회 작업반(Working Party)에서 한국의 무역정책에 관한 광범위한 토론과 검토, 그리고 무역위원회에서의 의견교환 및 위의 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무역위원회는 이사회(Council)가 고려할 만한 다음 사항들을 제시하는 데 동의했다.

- i) 한국은 한국과 위원회의 회원국 모두의 상호 이익을 위한 무역위원회의 작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비록 한국이 무역 자유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위원회는 특히 위 paragraph 21에 열거된 부문의 무역장벽을 감소시키거나 폐지하기 위한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발전과 OECD가입 이전 약속이행(부록 참조)에 대한 검토, 감시 및 동료적 검토 기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

부록(ANNEX): 한국의 약속이행(KOREAN UNDERTAKINGS)

23. 토론과정에서 한국은 회의 및 문서 작업과정에서 언급된 관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공표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a) 개도국지위(Developing country status)

24. 비록 일반적으로 한국이 개도국지위로 Uruguay Round를 이행할 것 이지만, 한국은 수용능력 범위에서 가능한 빨리 농업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적절한 지위로 WTO 협상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향후 협상

과 협정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부문과 기후협약에 관한 UN 작업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구조조정이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희망을 유지할 것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b) 수출신용(Export credits)

25. 위원회의 요구에 응해서, 한국은 정식으로 Export Credits과 Credit Guarantees Group(ECG)의 회원이 될 것과,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을 위한 지침에 대한 협정에 참가국이 되기 위한 신청을 했다. 이들 조직의 의장들은 한국의 가입신청을 승인하고, 가입작업을 위한 일정을 확정했다. 무역위원회 회의중 한국은 협정 이행약속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c) 보호주의적 조치(Protectionist attitude)

26. 한국 대표단은 한국과의 무역과 관련한 문제에서 자국 정부에 도움 요청했던 외국 회사들에게 한국정부가 공식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불만에 대해 어떠한 보복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한국 정부는 즉각적으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한 회원국 대표단은 위원회가 최근 OECD 회원이 된 국가들의 의무 이행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때,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하자고 제안했다.

27. 특정 화물을 한국 선박에만 예약하는 선박화물 시스템(cargo system)은 1998년 이후로 완전히 철폐될 것이다.

d)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27. 한국은 최근 마드리드 협정의 의정서, Nice Agreement, 그리고 WTPO Trademark Law Treaty에 대한 가입이나 승인을 검토 중이며, 또한 1996년 5월 21일에 있었던 베른협약(Bern Convention)의 가입을 기탁하였다. 한국은 1997년 말까지 WTO/TRIPS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1995년 12월 Seed

Industry Law를 제정했다. 이는 1999년 까지 새로운 식물 다양성의 보호를 위한 국제 회의인 UPOV 승인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e) 수량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s)

29. 한국은 1998년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Import Diversification Programme)하에, 금지 품목 리스트를 매년 10%이상씩 줄여나갈 것이고, 1999년 말까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화된 원산지 규정이 추진될 것이다. 한편 수입자들에게 주는 어떠한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이러한 요구사항이 검토될 것이다.

f) 검사(Testing)

30. 자동차 점검분야에서 1997년부터 한국정부는 만약 생산자가 한국정부에 의해 정해진 검증 방법과 동일한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고, 검증 결과가 한국의 기준에 맞으며, 또한 한국 당국이 생산자의 시설이 이러한 목적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제까지 한국에서 실제적인 검증을 해왔던 검증 품목에 대해서, 데이터 요약과 일치하는 승인된 생산자의 인증서를 허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의약품 검증에 관해서, 품질 인증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의약품에 있어서 기회가 생기는 대로 한국과 유럽공동체 사이의 상호 승인에 관해 한국은 기꺼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것이다.

g) 표시(Labelling)

31. 한국은 최종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모 직물의 품질 표기(by seals)를 요구할 것이나, 현재의 표기 조건(의무적으로 양쪽 가두리에 2 meter의 간격으로 원산지를 표시)은 판매자의 자발적으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된 방식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실행될 것이며, 현재의 표기 방식을 개정하고, 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고 있다.

h) 보전기간(Shelf-life regulations)

32. 모든 냉동음식에 대한 저장기간 의무화는 1996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상하기 쉬운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저장기간의 의무화도 1998년까지 자유화 될 것이다. 현재 관세정산단계에서 실시되는 부패한 과일의 의무적 분류는 1996년 10월 이후 없어질 것이다.

i) 농약수입(Import of agrochemicals)

33. 1996년 10월 7일부터 외국 제조업체들은 등록 조건만 충족된다면, 농약품목을 공식적으로 제조하고 수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진다. 이러한 최소 요구조건이 수입을 제한하는데 이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조와 수입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등록 조건은 Implementation Decree에서 규정될 것이고, 적절한 규정이 1996년 12월까지 만들어질 것이다.

j) 원산지과 가격증명(Origin and price certification)

34. 시계의 원산지를 식별하기 위한 시계 부품 가격 리스트를 제출하는 조건은 1996년 7월 1일부터 없어질 것이다.

k) 원산지표시(Origin marking)

35. 한국은 원산지 규정이 무역을 지나치게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1994년 GATT의 Article 9의 원칙에 따라 원산지 표기 방식을 통제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 정부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현행 규정에 대한 검토를 의도하고 있다. 한국은 그 검토를 수행하는데 있어 무역 동맹국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C(96)183: 한국의 OECD 가입: 가입을 위한 고려사항(ACCESSION OF KOREA TO THE ORGANIZATION: CONSIDERATION BY THE COUNCIL

OF THE INVITATION TO ACCEDE)

1. OECD 비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위원회에서의 한국의 입장에 관한 검토는 거의 마쳐진 상태이며, Secretary-General은 한국 정부로부터 관계 위원회에의 토론 결과로서 OECD 회원국으로서 수행해야할 의무에 대한 한국의 수용여부 등을 언급한 한국의 입장을 담은 초안(draft statement)을 받았다.(Appendix I)
2. 위원회의 견해과 회원국 의무 수락을 언급하는 한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이 OECD Convention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이사회의 몫이다.
3. 이 문서는 통계적 수치로 보여지는 한국의 상황 그리고, 한국의 회원국 승인을 위한 다음 단계 조치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보고서를 다시 개괄하고, 초안에서 제기된 주요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이사회의 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것이다.

위원회 보고서(Reports by Committees)

4. 위원회의 조사를 결론짓는 마지막 회의가 환경정책 위원회(Environmental Policy Committee)가 될 것이며, 이 보고서는 문서C(96)184에 간단히 언급될 것이다. CIME과CMIT 1996년 9월 6일에 열렸던 공동 session에서 긍정적인 의견으로 합의하였다. 위원회에 보내는 그들의 보고서는 문서C(96)180에서 다루고있다. 보험위원회(Insurance Committee)와 재무시장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Markets; CFM)의 결론은 문서 C(96)124 그리고 C(96)168에서 각각 다루고있다. Maritime Transport Committee(MTC)의 의견은 1995년 11월 2-3일에 있었던 위원회 회의의 요약 기록에서 다루고 있으며, 부록 II에서 재소개 것이다. Codes of Liberalisation 체제 하에서 maritime transport 논쟁에 관련된 한국의 입장은 부속서 5와 6에서 다룬다.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대로 [C(95)115], 보험위원회, CFM, 그리고 MTC의 검토는 Codes of Liberalisation에 관계된 CIME/CMIT의 전반적인 검토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회계 문제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의 의견은 문서 C(96)37에서 다루고 있다.

5. 경제적 발전과 검토 위원회(The Economic Development and Review Committee)는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정책의 검토를 수행하였는 데, 이러한 검토 내용이 OECD Economic Surveys 발간물로서 6월에 발간된 바 있다. 몇몇 다른 위원회들은 OECD 관련 비준상의 한국 입장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없이, 그들의 관할 영역내에서 한국의 정책 대한 검토를 해왔다. 문서 C(96)174는 무역위원회에서의 토론내용을 보고한다. 문서 C/NM(96)45에서는 고용, 노동, 그리고 사회문제 위원회(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에 의한 한국의 노동시장정책과 산업관계에 대한 검토를 제공한다. 한국 농업 부문과 농업발전 그리고 농업관련정책에 관한 설명을 문서 AGR/CA(95)26에서 다루고있다. 농업위원회(Committee for Agriculture)는 1996년 9월에 시작한 한국의 농업정책과 무역에 관한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문서 C(96)176은 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들과는 다른 사항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보여준다.
6. 무역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술된 UN 기후협약 관련 한국의 입장이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와의 토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포괄적인 한국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EPOC 보고서와 문서 C(96)184 30번째 단락에서 나타난다.

C(96)146: 한국의 OECD 가입과 개도국 지위

ACCESSION OF KOREA AND DEVELOPING COUNTRY STATUS

1. 대한민국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한국의 OECD 회원국 가입이 다른 국제적인 포럼에서 이것이 곧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같은 주장은 두 개의 산하기관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켰는데, 하나는 무역위원회(Trade Committee)이고, 또 하나는 환경정책위원회(Environment Policy Committee)이다.
2. 이 문서의 목적은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I. Korea's position

3. 무역에 관한한, 한국은 1994년 Uruguay Round 협정과 특히 농업협상 (Agreement on Agriculture) 및 지적 소유권의 무역관련 사항에 대한 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see paragraphs 10 and 11 below)에 수록된 개도국(LDCS) 관련 조항 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주장했다. 무역 위원회 회의과정 에서 한덕수(통상산업부 차관)씨가 수석대표인 한국 대표단은 특히 TRIPS 협 정에 관련하여 한국의 이같은 태도가 OECD의 가입 후에도 같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한덕수 대표는 대부분의 한국 국민이 아직은 한국이 개도국이라고 여기고 있고, 이러한 지위변화는 정치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국민들의 의식이 교육되는 중이나 이러한 의식 변화는 시간이 요구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정부는 한국이 개도국 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믿고있다. OECD 회원가입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촉진할 시킬것이지만, 현재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협상과 협정의 목적으로, 한국은 농업분야와 UN체제의 기후변화협약 부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지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4. 환경에 관한한, 한국은 선진국과 관련하여 다수의 국제 회의(특히 기후변화협 약;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의무이행을 취하지 않고 있다(see paragraph 13 below), 특히 기후협약분야이다. 향후 이에 대한 의향에 관해 질문 받았을 때, 한국은 EPOC에 한국의 OECD 승인 이 후 부속서 I(Annex I)의 국가로 분류될 의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EPOC 회원국 들 앞에서의 발언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이 되는 것에 관해, 한국은 경제적, 사회적 성장 수준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그러한 책임들은 한국의 경제적 상황과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의 되어져야만 하며. 더욱이, 한국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하는데 합리적인 일정기간이 주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5. OECD에서 한국 정부에 의해 채택된 입장은 더욱 일반적인 정책을 표명한다. 예를들어 1994년 11월 APEC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선진경제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들은 2020년까지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라는 스스로의 목표를 설정했을 때, 한국은 개도국으로 간주되어지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범주, 즉 중간 분류(신흥공업국가)의 창설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II . The concept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6. 개도국(LDC)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국제 기구와 협약이 주로 1인당 GNP와 같은 경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구나 협약에 따라 관계 국가들이 스스로를 개도국이라고 또는 개도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7. 개도국들은 오랜 기간동안 선진국에 대해 그들의 이익을 방어할 목적으로 다양한 국제 조직내에 단체들을 형성해왔으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특히 UN 시스템에 속해 있다. 개도국 단체들은 여러 다른 형태를 취하고있다.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국제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개도국 단체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하는 77그룹(Group of 77)이다. 1964년 첫 UNCTAD 회의가 열렸을 때 창설되었고, 창설목적은 선진국(North)측의 이익에 대응하여 개도국(South)측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었다. Group of 77는 현재 132개국이 가입해있고, 1인당 GNP가 다양한 국가들(Saudi Arabia and Singapore)을 포함하고있다. 그러나 Group of 77의 정치적 역할과 이념적 결속은 최근 남북간의 화해무드의 영향으로 줄어들고있다.
8. 현재 이렇다할 진정한 개도국 지위는 없다. 해당 개도국에 여러 분야에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주어지는 데, 이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원조(재정적, 경제적, 기술적)이고, 둘째는 국제 무역 관계이며, 마지막으로 환경의 보호이다.

Financial, economic and technical assistance

9. World Bank 또는 IMF 같은 재정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수혜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경제적 분류에 따라 개도국 범위를 결정하고 있다. OECD의 DAC는 공적 개발원조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개도국을 분류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계적 목적의 분류가 또한 일부 국가에 의해서 원조대상국으로서의 자격을 판단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DAC는 한국을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로 분류하고 있다.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10. WTO 설립협정문에는 개도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1994년 Uruguay Round 협상에서 합의된 많은 협정에는 개도국에 대해 특별하고 차등적인 우대 조치를 부여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협정에서 각 국가들은 자국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스스로를 개도국이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결정은 여타 회원국에 의해 침해되지 않는다. 우대 조치를 규정한 구체적인 주요 협정은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TRIPS 협정, 그리고 서비스(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협정 이다.

11.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로 수여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특정 의무이행으로부터 일시적인 유예: 예를들어 선진국에게는 WTO 설립후 1년후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으나 개도국은 5년후에 동협정이 적용된다.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하에서, 모든 개도국은 협정상(Article 15, paragraph 2)약속한 보조감축 약속이행이 10년간 주어졌다.
- 덜 제약적인 약속이행: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상 개도국은 특정 보조에 대한 감축의무가 면제되고, 보조감축률이 선진국에 비해 적은 것을 허용한다.
- 절차에 대한 신축성부여

- 기술적 지원 (cf, Article 11 of 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최대 노력 조항의 존재: 선진국들의 동의하에서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와 관심 사항을 고려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허용된다.

Environmental protection

12. 환경분야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의 개념이 Rio Declaration (1992)의 principle 7에 구체화되었는 데, 선진국과 개도국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는 선진국의 우월한 재정과 기술자원과 환경에 대해 놓여진 보다 무거운 의무에 의해 보장된다.
13. 몇몇 다자간 Convention은 차별화된 대우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자.
 -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은 물론이고 기술 및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의무를 규정했다.
 - 기후변화협약(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nvention에 관한 부속서 I에서 언급된 선진국과 그 외 국가들(Convention 채택 당시의 모든 OECD 회원국, 그리고 시장경제로 전환중인 특정 국가들)은 대기오염 배출 물질에 대한 추가적 감축의무, 부속서 II에서 언급된 선진국(모든 OECD 회원국)의 재정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III. OECD practice

14. OECD 협약은(Convention on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명시적으로 조직내 개도국의 존재를 인정한다. Article 1 (b)에서 OECD의 목적이 현재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회원국 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의 건전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촉진하는 것이라 언급하

고 있다. Article 2 (e)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적절한 조치를 통해 개발과정에 있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공헌할 것에 동의하며, 특히 개도국 경제에서 기술적 원조와 수출시장의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공헌함에 합의한다.

15. 사실상, 최근까지도 OECD를 창설에 기여한 몇몇 회원국들은 일부 경우에 있어, 특히 개발원조 목적을 위해 개도국으로 여겨져 왔다. 예를들어 그리스(Greece), 포르투갈(Portugal), 스페인(Spain), 그리고 터키(Turkey) 등이다. 현재에도 Mexico, Turkey 두 국가가 아직까지 공적개발원조(DAC) 리스트에 개도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Uruguay Round 협정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우대 조치를 받고 있다. 멕시코는 기후변화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부속서 I, II에 분류되지 않았으며, Turkey는 아직 Convention에 가입비준서를 기탁하지 않았다. 최근 the Czech Republic과 Hungary가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부속서 II에는 분류되지 않았다.
16. 멕시코의 OECD 회원가입과정에서 진행된 토론중에, 이사회(Council)는 77 그룹회화원국에 속하면서 OECD에 가입하는 것은 합치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이는 이 그룹이 자주 다른 fora에서 OECD에 반대하는 협상세력으로서 정치적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처음부터 이러한 OECD 입장을 인정했으며, 다음과 같은 회원국 의무 수락선언문에 명시되었다: 멕시코는 OECD 회원국으로서 OECD의 기본입장, 목적과 책임수행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다른 국제 조직이나 그룹에 참여할 것이다. [paragraph 9 of the Declaration]
17. 다른 한편으로, OECD는 멕시코에 다른 국제 fora에서 누렸던 개도국 지위 특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멕시코는 개도국지위 유지와 관련된 그들의 입장을 질문받았는데, 이에 대해 멕시코는 스스로를 아직은 개도국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면서, 국가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개도국지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발전될 것이라고 답했다.
18. OECD 협약(Convention)의 Article 16에서는 Council이 Convention에 따라 회

원국 의무이행을 준비하는 모든 국가를 초대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 서술한다. 회원국의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제 회원국의 몫이다.

19. 각료회의급 이사회의 마지막 회의에서, 각료들은 OECD는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들에 항상 열려있어야 하나, 선별적이어야 하며, OECD 회원자격을 위한 높은 기준의 전통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20. 무역위원회(the Trade Committee)와 환경위원회(EPOC)의 협의과정에서 일부 대표단은 OECD 가입절차 과정에서 다른 국제 조직이나 국제 기구에서 OECD 지원국의 태도가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OECD가입은 단지 조직의 회원국의 자격과 의무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21. 그러나 다른 대표단은, OECD 회원국은 OECD에 의해 합의된 단순한 법적 의무 수행이라는 기준만이 아니라 예를들어, 다른 국제적인 fora에서 OECD 회원국으로서 비교할만한 수준의 의무와 책임을 수락하는 것과 같은 OECD 회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가치와 공유된 의견의 보존이라는 기준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1996년 2월 20일에 있었던 환경부관련 각료들에 의해 채택된 선언문(communique)을 통해 각료들은 특히 기후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diversity)과 같은 국제 환경협약(convention)에서 신규 회원국들이 OECD 회원국 수준으로 그 책임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Conclusions

22. 사무국은 앞에서 다루었던 분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다.

- 무엇이 개도국을 규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objective) 정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에도 없다.
- 개도국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일부 개도국이 성취한 상당한 경제 발전의 결과

로 더욱 유동적(fluid)으로 변하고 있다.

- OECD가 상당수준 선진국가들의 모임이지만 회원국 사이에는 항상 하나의 또는 다른 측면에서 스스로를 개도국으로 간주하는 소수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다른 fora에서 개도국 지위(status)를 포기한다는 사실이 반드시 회원자격 지원 국가에게 있어 OECD회원국 또는 회원국 대다수에 의해 다른 fora에서 행해지는 모든 의무를 이행할 의향이 있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 OECD 협약(Convention) Article 16(회원국 가입의 결정)는 회원국들이 한 국가를 OECD회원국으로 가입을 승인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요인들을 결정 할 때 많은 융통성을 남긴다.

[부록 4] 다자체제 하에서 최빈개도국 분류현황과 시사점¹⁰⁶

1. 머리말

최근들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문제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UN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의 심화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의 빈곤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들이 세계평화는 물론 국제경제질서를 다소나마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999년 제3차 WTO 각료회의(1999.11.30~12.3, 미국 시애틀)가 개도국들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쳐 결렬된 이후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의 문제는 다자체제 전반의 관심사항이

106 이 부분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창배 전문연구원에 요청하여 작성된 원고임.

되었다. 이에 따라,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그들을 국제 경제체제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 노동시장의 안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출범한 ‘도하 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 이하 뉴라운드협상)의 성공여부가 최빈개도국들을 비롯한 개도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이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증하듯 마이크 무어(Mike Moore) WTO 사무총장은 1999년 9월 1일 취임이후 행한 각종 인터뷰 및 연설을 통해 WTO 뉴라운드협상 및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며 그들에 대한 지원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최빈개도국 지원문제에 대한 논의는 WTO내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World Bank, IMF, UNCTAD 등에서도 최빈개도국 지원문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바, WTO를 중심으로 각 국제기구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현황을 알아보고 최빈개도국 지원문제의 향후 전망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2.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과 다자무역체제하에서의 역할

가. 최빈개도국의 개념 및 지역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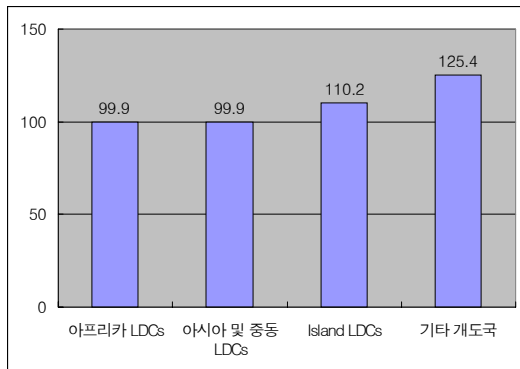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 LDCs)은 UN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 ECOSOC)가 1인당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 GNP)(<표-2> 참조), 1인당 칼로리 공급율(<그림-1> 참조), 신생아 사망률(<그림-2> 참조), 초·중등교육 등록율(<그림-3> 참조), 문맹률(<그림-4> 참조),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대비 제조업 비율(<그림-5> 참조), 산업고용비율, 1인당 전기 소비량, 수출집약도(<그림-6> 참조)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49개국을 의미한다¹⁰⁷.

107) 최훈外 譯, 『통상용어사전』(서울 : 범신사, 1998), pp. 268~9. 동 자료의 원문은 Walter Goode,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Univ. of Adelaide : Cent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1971년부터 시작된 최빈개도국 선정지표 및 최빈개도국 지정은 ECOSOC에 의해 3년마다 재검토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LDCs 선정은 2000년 3월 27일에 있었던 바, 이전의 48개국외에 세네갈을 추가함으로써 LDCs는 49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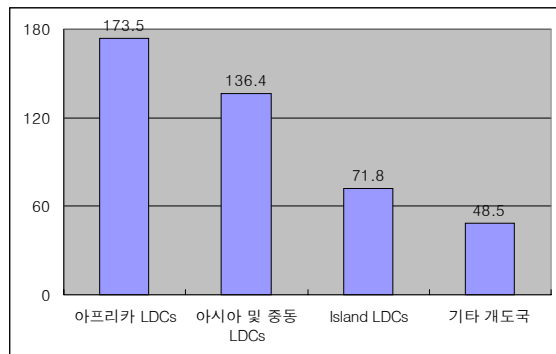
<그림-1> 1인당 칼로리 공급을 (1997)

(단위 : %)



<그림-2> 신생아 1,000명당 유아 사망률 (1995~2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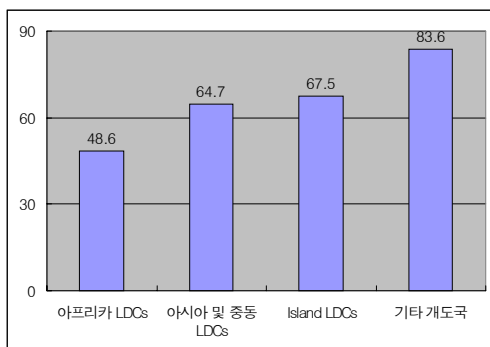


자료 : UNCTAD, *Statistical Profil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2001), p. 8.

자료 : <그림-1>과 同

<그림-3> 초·중등교육 등록율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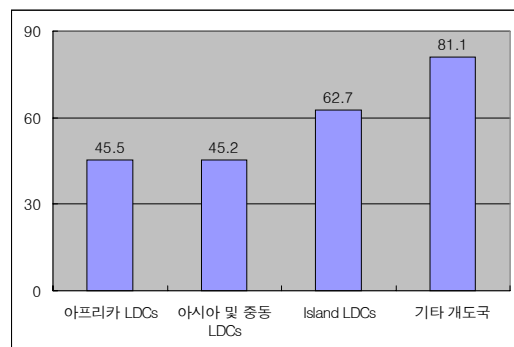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그림-1>과 同

<그림-4> 성인 문자해독율 (1996)

(단위 : %)



자료 : <그림-1>과 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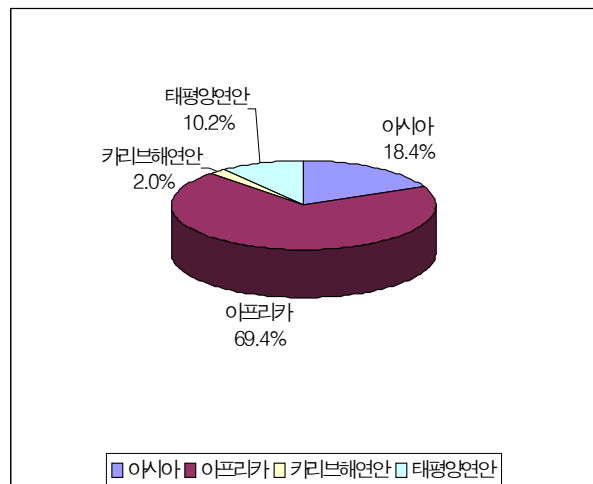
1997).

현재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된 나라로는 최근 포함된 세네갈을 비롯하여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이디오피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르완다, 소말리아, 예멘 등이 있다. 이들 국가들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34개국으로 전체 LDCs 중 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이 18.4%인 9개국으로 그 다음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태평양연안지역이 5개국(10.2%), 그리고 카리브연안지역이 1개국(2.0%)을 기록하고 있다(<표 1> 참조).

<표-1> 최빈개도국의 지역별 분포 현황

(2000.3.27 현재)

지 역	국가수	비율(%)
아프리카	34	69.4
아 시 아	9	18.4
태평양연안	5	10.2
카리브해연안	1	2.0
합 계	49	100.0



자료 : UNCTAD, *Statistical Profil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2001), p. 5 참조.

나. 최빈개도국의 경제 현황

UNCTAD가 발표한 「2000년 최빈개도국 보고서(*Least Developed Countries 2000 Report*)」에 따르면, LDCs는 세계화 및 자유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는 바, 최근들어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LDCs는 낮은 소득과 저성장으로 인해 국내 재원 동원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LDCs의 성장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LDCs 49개국은 세계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으나, GNP 규모에 있어서는 세계 GNP의 0.5%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2> 참조)¹⁰⁸. 1인당 실질 GNP의 경우, 1990~98년 동안 개도국들이 연평균 3.6%의 성장을 기록한데 반해 LDCs는 겨우 0.9%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¹⁰⁹.

또한, 국내 재원동원의 어려움에 따라 LDCs는 투자재원의 대부분을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와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 등 외부로부터의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LDCs는 현재 개도국들에게 유입되는 총 외자(外資)의 4% 미만만을 흡수함으로써 1987년의 18%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처럼 LDCs들이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프라구축 미비, 사업추진을 위한 서비스 체제 및 행정체제 미비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低소득-저축부족-低투자-低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부터 LDCs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ODA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 ODA 지원액에 있어서는 LDCs는 1990년대 들어 45%가 감소하였는 바, 현재는 1970년대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외채문제도 LDCs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LDCs의 외채총액은 1990년 1,212억 달러에서 1998년 1,504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원리금상환액도 40억 달러에서 4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한 과도한 외채부담은 LDCs에 대한 국내투자를 제한하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외자유치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은 LDCs의 경제적 취약성은 GDP 대비 제조업·서비스업 비중, 수출집약도 등 아래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108) UNCTAD, *Statistical Profil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2001), p. 4.

109) 세계 최대 LDC인 방글라데시를 제외할 경우, 동 기간동안 LDCs의 1인당 실질 GNP 성장률은 연평균 0.4%에 불과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CTA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0 Report*. [Online] Available [http : //www.un.org/events/ldc3/conference](http://www.un.org/events/ldc3/conference) 참조.

<표-2> 최빈개도국(LDCs)의 1인당 GNP (199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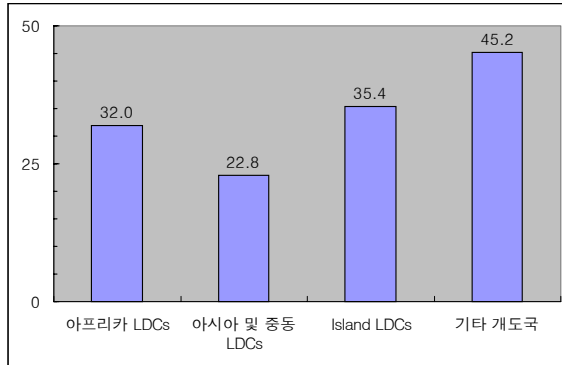
(단위 : US \$)

순위	국 가	1인당 GNP	순위	국 가	1인당 GNP
1	바누아투	1,260	26	상투메	270
2	카보베르데	1,200	27	캄보디아	260
3	키리바시	1,170	28	마다가스카르	260
4	몰디브	1,130	29	말리	250
5	적도기니	1,110	30	부르키나파소	240
6	사모아	1,070	31	차드	230
7	솔로몬제도	760	32	르완다	230
8	레소토	570	33	탄자니아	220
9	기니	530	34	말라위	210
10	세네갈	520	35	모잠비크	210
11	부탄	470	36	네팔	210
12	아이티	410	37	에리트레아	200
13	모리타니아	410	38	니제르	200
14	앙골라	380	39	기니비사우	160
15	베닌	380	40	브룬디	140
16	코모로	370	41	시에라리온	140
17	방글라데시	350	42	콩고	110
18	감비아	340	43	에티오피아	100
19	토고	330	44	아프가니스탄	N/A
20	잠비아	330	45	지부티	N/A
21	라오스	320	46	라이베리아	N/A
22	우간다	310	47	미얀마	N/A
23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00	48	소말리아	N/A
24	수단	290	49	투발루	N/A
25	예멘	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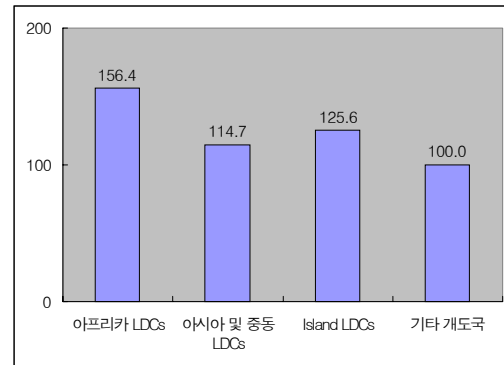
주 : <표-2>의 순위는 1인당 GNP 규모가 큰 국가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의미.

자료 : UNCTAD, *Statistical Profil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2001), p. 7.

<그림-5> GDP 대비 제조업·서비스업 비중 (199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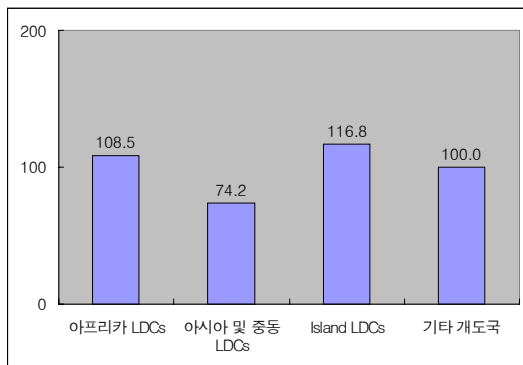
<그림-6> 수출집약도 지수 (1998)



자료 : UNCTAD, *Statistical Profil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2001), p.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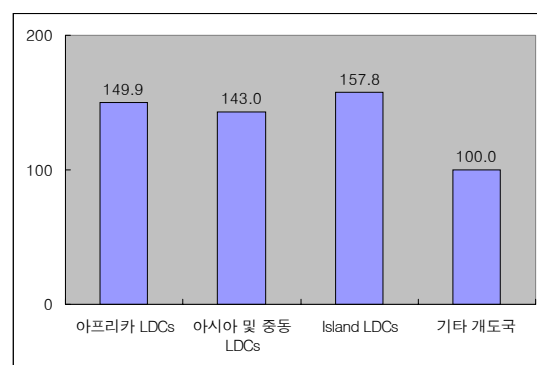
자료 : <그림-5>와 同

<그림-7> 농산물 불안정 지수 (1979~1998)



자료 : <그림-5>와 同

<그림-8>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불안정 지수 (1979~1997)



자료 : <그림-5>와 同

다. 최빈개도국의 WTO 참여 현황

2002년 1월 현재 49개국에 달하는 최빈개도국들 중 WTO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30개국으로 144개 WTO 회원국 중 20.8%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그 중, 아프리카지역이 25개국(17.4%)으로 가장 많

<표-3> 최빈개도국(LDCs)의 WTO 참여 현황

(2002년 1월 현재)

구 분	WTO 회원국		WTO 가입신청국		WTO 옵서버국	WTO 未참여국
	국 가	가입년도	국 가	가입신청 년 도		
국 가	앙골라(AF)	1996.12. 1	캄보디아(AS)	1994.12	에티오피아(AF) 상투메(AF)	아프가니스탄(AS)
	방글라데시(AS)	1995. 1. 1	라오스(AS)	1997. 7		라이베리아(AF)
	베닌(AF)	1996. 2.22	네팔(AS)	1989. 5		소말리아(AF)
	부르키나파소(AF)	1995. 6. 3	부탄(AS)	1999.10		에리트레아(AF)
	부룬디(AF)	1995. 7.23	예멘(AS)	2000. 7		적도기니(AF)
	중앙아프리카공화국(AF)	1995. 5.31	카보베르데(AF)	2000. 7		코모로(AF)
	차드(AF)	1996.10.19	수단(AF)	1994.10		키리바시(PA)
	콩고 (舊자이르)(AF)	1997. 3.27	사모아(PA)	1998. 4		투발루(PA)
	지부티(AF)	1995. 5.31	바누아투(PA)	1995. 7		
	감비아(AF)	1996.10.23				
	기니(AF)	1995.10.25				
	기니비사우(AF)	1995. 5.31				
	아이티(CA)	1996. 1.30				
	레소토(AF)	1995. 5.31				
	마다가스카르(AF)	1995.11.17				
	말라위(AF)	1995. 5.31				
	몰디브(AS)	1995. 5.31				
	말리(AF)	1995. 5.31				
	모리타니아(AF)	1995. 5.31				
	모잠비크(AF)	1995. 8.26				
	미얀마(AS)	1995. 1. 1				
	니제르(AF)	1996.12.13				
	르완다(AF)	1996. 5.22				
	시에라리온(AF)	1995. 7.23				
	솔로몬제도(PA)	1996. 7.26				
	탄자니아(AF)	1995. 1. 1				
	토고(AF)	1995. 5.31				
	우간다(AF)	1995. 1. 1				
	잠비아(AF)	1995. 1. 1				
	세네갈(AF)	1995. 1. 1				
소 계	30개국 - AS : 3 - AF : 25 - CA : 1 - PA : 1		9개국 - AS : 5 - AF : 2 - PA : 2		2개국 - AF : 2	8개국 - AS : 1 - AF : 5 - PA : 2
합 계	총 49개국 (아시아 : 9 / 아프리카 : 34 / 카리브해연안국 : 1 / 태평양연안국 : 5)					

주 : 1) 동 자료는 UN이 분류한 49개 최빈개도국을 WTO 참여여부와 지역 기준에 따라 연구자가 구분한 것임.

2) AF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AS는 아시아지역 국가, CA는 카리브연안국, PA는 태평양연안국을 의미함.

3) WTO 가입신청국도 WTO 옵서버국임. 그 차이는 WTO 옵서버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WTO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음.

- 4) WTO 옵서버국의 경우, 5년내에 WTO 가입협상을 개시해야 함. 단, 교황청 제외.

자료 : UNCTAD, *Statistical Profil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2001), p. 10 ; WTO, Members and Observers(2002.1.1) 및 List of applications to become WTO members, [Online] Available [http : //www.wto.org](http://www.wto.org) ; 서창배, “다자체제하에서의 최빈 개도국 지원 현황 및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1999년 9월호), p. 27.

으며, 아시아지역이 3개국(2.1%), 태평양연안국과 카리브연안국이 각각 1개국(각각 0.7%)씩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사모아, 수단, 바누아투, 부탄, 카보베르데, 예멘 등 9개국이 WTO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 상투메가 WTO 옵서버 국가로 등록함으로써 기존의 에티오피아와 함께 옵서버 자격으로 WTO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 라이베리아 등 8개국은 WTO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2001년 10월 29일 바누아투의 WTO 가입을 위한 최종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고, WTO가 옵서버 자격 취득후 5년내에 WTO 가입협상을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LDCs의 WTO 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국제기구별 최빈개도국 지원 현황

현재 WTO를 비롯하여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re ; ITC), UN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 UN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 등 6개의 국제기구가 최빈개도국들(LDCs)에 대한 지원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동 국제기구들은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통합된 작업틀’(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 이하 Integrated Framework)에 의거한 무역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최빈개도국들과 함께 공동 노력을 진행하

고 있다. 또한, 최빈개도국들은 통합된 작업들을 중심으로 UN공업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 UNIDO),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 등 여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EU 등 개별국가와의 협력 등을 통해 다자간 및 양자간 개발논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1) WTO 차원의 개도국·최빈개도국 지원 노력

가. 개도국·최빈개도국 지원 관련 WTO 규정

WTO 협정에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과 관련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WTO내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은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S&D Treatment)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WTO 협정상의 97개 조항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에서는 선·개도국간의 무역협상에 있어서의 非호혜주의 원칙(principle of non-reciprocity)¹¹⁰과 관련한 조항을 설명하는 특별한 부분(Part IV)이 있다. 또한, GATT는 일국(一國)이 개도국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할 때 다른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를 허용하고 있다. 동 조항은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가장 유효하고 핵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S&D규정은 WTO 협정상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개도국의 제도적인 취약성을 감안하고, WTO의 특별지원을 통해 개도국들이 다자간 국제무역체제에 완전히 편입됨으로써 선진국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존재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WTO 협정에 도입된 S&D조항들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시장접근에 대한 특혜조치, 기술지원 및 WTO협정 이행상의 유리한 조건 부여 등 선진국 또는 기타 국제기구가 개도국을 위하여 취해야 할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조항들이며, 다른 하나는 규

110) 非호혜주의 원칙이란, 무역과 관련하여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특혜를 부여할 경우 개도국은 선진국에게 동일한 특혜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완화조치, 자국산업보호 및 협정 이행상의 경과기간의 연장 등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협정상의 예외규정들에 대한 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경제통합’(GATS 제5편) 부분에서 개도국에 대한 일정 부분의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 WTO 협정에서 개도국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서비스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협정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의 무역증대를 위한 시장접근 폭의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반덤핑협정, 세이프가드협정, 무역기술장벽협정 등에서도 WTO 회원국이 국내 또는 국제적인 조치를 적용할 경우 개도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개도국들이 양허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들도 WTO 협정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나. WTO 차원의 개도국 지원 노력

1996년 제1차 WTO 각료회의(1996.12.9~13, 싱가포르) 준비과정에서 루지에로(R. Ruggiero) WTO 사무총장은 최빈개도국(LDCs)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는 바, 제1차 각료회의 결과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WTO 이행계획(the Plan of Action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이 채택되었다(<표 4> 참조). 그후, 1996년 5월과 7월에 개최된 WTO 주요 회원국그룹회의(Invisible Meeting)와 1996년 7월 개최된 G-7 정상회담, WTO 무역개발위원회 회의(1996.9, 1996.10), 그리고 1997년 10월에 개최된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고위급회의(the High Level Meeting on Integrated Initiatives for Least Developed Countries' Trade Development) 등을 통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특히, IMF, ITC, UNCTAD, UNDP, World Bank 등과 공동 개최한 고위급회의를 통해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통합된 작업틀(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을 구축하게 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EU와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들 외에도 모로코, 이집트, 태국 등 개도국들도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접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한국도 동 회의를 통해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도입을 추진중

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¹¹¹. 또한, 루지어로 사무총장은 1997년 7월 90여개 국가의 각료들에게 서한을 보내 최빈개도국의 주력 수출상품 112개 품목들에 대해 시장접근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1997년 10월 개최된 최빈개도국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제시된 각국의 對최빈개도국 시장접근 개선방안 및 구체적인 지원약속은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1998.5.18~20, 스위스 제네바)에 정식 보고되었다. 그 후, 1998년 12월 개최된 WTO 뉴라운드협상 준비를 위한 WTO 일반이사회 비공식회의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WTO 협정 이행기간 연장문제, 기술협력 제공 필요성, 그리고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시장접근 개선문제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또한, 2000년 7월에는 전술한 6개 핵심 국제기구들이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WTO는 2001년 2월 12일 개최된 제23차 최빈개도국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 즉 「통합체제 예비 검증(Integrated Framework - Pilot Scheme)에 대한 새로운 제안」¹¹²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최빈개도국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WTO는 현재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독자적으로 또는 여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들에 대한 WTO의 지원은 개도국 정부 및 민간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워크샵, 세미나, 요약보고 회의 등의 개최를 통해 다자간무역체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정부에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들이 인터넷을 통해 WTO의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훈련프로

111)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물론이고 WTO 무역·개발위원회에 최빈개도국 지원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이미 통보(2000.1.26)한 바 있다. 이는 1997년 10월에 개최된 최빈개도국 무역개발을 위한 통합조치에 대한 고위급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써 WTO 무역·개발위원회에 제출한 통보내용을 통해 최빈개도국들의 주요 수출상품들에 대한 무관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보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1월부터 최빈개도국들로부터 수입되는 HS 코드기준 80개 품목(주로 1차산품 및 경공업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던 바, 동 사항은 이미 시행중에 있다.

112) WTO 최빈개도국 소위원회에서 금번 발표한 새로운 제안의 원제목은 Integrated Framework - Proposal for a Pilot Scheme으로 되어 있음. WTO. *WT/LDC/SWG/IF/13*. 13 February 2001 ; Inside US Trade. *WTO Adopts New Proposal On Technical Assistance For LDCs*. 2001.2.16.

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표-4>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WTO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WTO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에 관한 결정」 이행 - 통보의무 충족을 위한 최빈개도국의 능력제고 차원 - 최빈개도국을 위한 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무역개발위원회에서 2년마다 검토 ○ 인적·제도적 능력 함양 - 최빈개도국의 무역관련 능력 함양을 위해 UNCTAD, ITC, OECD/DAC 등과 협력하여 종합적 지원방안 개발 - WTO/ITC의 교육과정 개발 - 선발개도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방안 모색 - 최빈개도국 공무원에 대한 WTO 회의 참가비용 지원 등 ○ 시장접근 - 선진국 및 자발적 참여 개도국의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無稅化 적용가능성 모색 - 섬유협정의 관련조항을 활용, 최빈개도국의 시장접근기회 증대 - 최빈개도국에 대한 UR 관세인하계획의 조기 이행

다. WTO의 최빈개도국 기술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안

WTO는 최빈개도국들의 기술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고 「통합체제 예비 검증(Integrated Framework - Pilot Scheme)에 대한 새로운 제안」의 전문(前文, Preamble)에서 강조하고 있다.

첫째, LDCs의 개발 및 빈곤감소를 촉진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무역의 중요성 강조, 둘째, 각 LDCs의 개발전략과 관련하여 일치된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는 무역의 필요성 인식, 셋째, 1997년 개최된 고위급회의 권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 : IF)의 무역관련 기술지원(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 TRTA) 및 무역관련 역량건설(trade-related capacity building : TRCB) 활동에 있어서 LDCs가 중심이 되

어야 한다는 인식 제고, 넷째, LDCs에 대한 TRTA 및 TRCB 구조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효과 증대 등 각 국제기구의 수용가능한 목표에 대한 추가적 인지, 다섯째, 통합체제(IF)의 위임된 검토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 6일 합의된 공동 선언문에서 국제기구 수장들의 결정에 대한 인식 제고, 마지막으로, UN 최빈개도국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DCs)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로서 IF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동 제안서는 밝히고 있다. 다음은 동 제안서의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이다.

(가) 예비검증단계

IF 개혁의 첫 번째 단계로서, WTO는 예비검증(pilot scheme)단계의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예비검증은 빈곤감소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 : PRSPs) 또는 UN 개발지원체제(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 UNDAF)와 같이 최빈개도국들의 개발전략의 일부분으로서 무역통합부문(trade integration chapter)이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확한 의지를 천명해온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WTO는 보고 있다. 또한, 예비검증을 통해 향후 TRTA 및 TRCB 활동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 무역중심의 개발전략

WTO는 IF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LDCs의 전반적인 개발전략에서 무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TRTA 및 TRCB 구조가 협력대상국가들의 개발 목표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보증할 것이다. 무역중심의 다각적인 지원은 LDCs에게 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며, 무역통합을 통한 국제경제에의 참여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에 있어 IF 기구들을 중심으로 LDCs의 현지관청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무역통합을 통한 LDCs에 대한 지원은 무역-개발과 빈곤감소간의 관계 정립, 해당 국가의 무역중심의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 및 발전에 대한 영향, 시장접근 쟁점들, 그리고 LDCs의 무역관련 역량의 필요조건 등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슈들과 관련되어 있다. 무역통합부문은 일관된 정책적

구조속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로부터 인적 자원에 이르기까지 무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것들에 대한 확인 및 우선사항의 결정을 포함할 것이다.

(다) TRTA 및 TRCB 규정

강화된 IF의 주요 목적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직면하고 있는 TRTA 및 TRCB 활동에 포함된 양자 및 다자간의 모든 관련국들간의 조정 및 협조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수혜자인 최빈개도국들은 각국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와 정렬된 프로그램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국제기구 또는 양자간 지원국들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관련 국가의 개발전략에 대한 보완 및 일관성을 갖게 된다. 또한, 동 프로그램은 세계은행 자문그룹(World Bank Consultative Group) 및 UNDP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며, 회의이후 동 프로그램 및 관련 프로젝트들은 비교우위에 따라 관련 다자 및 지역중심의 정부간 기구, 양자간 개발파트너들 그리고 민간차원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고 수행될 것이다.

(라) IF 신탁기금(Trust Fund)의 설립과 운영

동 제안서에서는 IF 및 IF의 예비검증에 대한 양자간 공헌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IF 신탁기금의 설립 및 자발적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국들의 지원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신탁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동 제안서의 부속서에 잘 나타나 있는 바, IF 신탁기금은 LDC국가들의 개발전략에서 무역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 즉, 개발전략을 위해 필수적인 분석 및 정책적인 틀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통해 LDC국가들에게 지원된다.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 신탁기금은 선정된 프로젝트들을 위해 재배치될 수 있다. IF 신탁기금에 의해 지원된 TRTA 및 TRCB는 단지 인적 역량건설에 관계되며, IF에 의해 구체화된 지원프로그램내에서 검증된 기타 관련 프로젝트들과 함께 적절하게 통합될 것이다.

(마) IF 관리체제

동 부분은 IF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및 신탁기금을 집행하는 국제기구간 작업그룹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IF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최소한 1년에 1회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IF 운영위원회는 6명의 LDC 대표들¹¹³, 6명의 국제기구 대표들, 그리고 공여국들로 구성된다. IF 운영위원회는 양자간 또는 IF 신탁기금으로 이루어진 금융재원들의 분할과 관련한 지침의 논의 또는 제공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은 기금 공여국들로 제한되며, 기타 이해관계국 및 예비검증단계에서의 LDC국가들은 옵서버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IF 운영위원회는 초기에는 공여국들이 의장직을 수행하고 LDC국가에서 부의장직을 수행하나, 향후 번갈아가며 의장직을 맡게 된다. IF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정책 가이드라인의 설정, 조정 및 감독 그리고 IF 진행상황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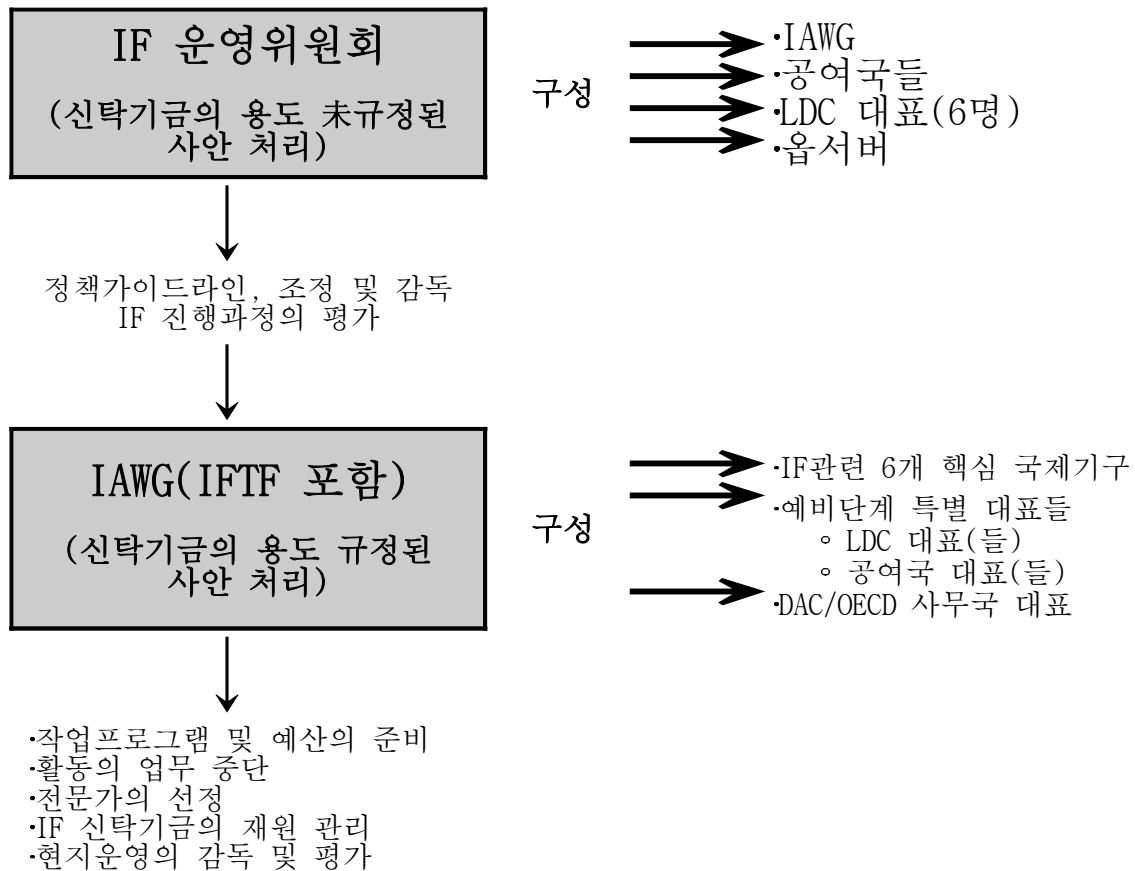
IAWG/IFTF는 6개 핵심 국제기구들, DAC/OECD 사무국 및 예비단계에서의 특별 대표들(공여국 및 LDC)로 구성된다. IAWG/IFTF는 자체적인 절차규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첫째, 정보의 교환, 둘째, 사안의 조정, 셋째, 작업프로그램 및 예산의 준비, 넷째, 활동의 중단, 다섯째, 전문가 선정, 여섯째, IAWG가 IFTF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 IF 신탁기금의 재원 관리, 일곱째, 현지 운영의 감독 및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IF 운영체계는 예비검증단계이후 공여국들, LDC국가들, 그리고 각 국제기구들에 의해 검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림 9> 참조).

(바) 진행상황의 평가

예비검증단계의 진행상황은 국가별로 감독하고 검토될 것인 바, IAWG에 의해 준비된 정기적인 진행보고서는 IF 운영위원회에 제출된다. 검증단계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WTO 제4차 각료회의이전에 기타 LDCs국가들에 대한 이니셔티브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113) 2000년 1월 10일 개최된 회의에서 수용된 LDCs국가들에 의한 결정에 따라, IF 운영위원회에 대한 LDC 대표들은 방글라데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매년 교대로 대표직을 맡도록 됨으로써 국제적인 LDC 조정자 및 순환임명되는 LDC 조정자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9> IF 운영체계 및 역할



(2) 기타 국제기구의 최빈개도국 지원 노력

가. UNCTAD

UNCTAD는 1981년과 1990년 파리에서 개최된 최빈개도국에 대한 UN회의를 위해 조직적인 작업들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 이후 최빈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81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빈개도국들을 위한 실질적인 새로운 활동 프로그램(Substantive New Programme of Action ; SNPA)을 채택하였다. 1990년 개최된 회의에서는 SNPA를 검토하고, 1990년대 최빈개도국들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활동계획의 이행에 관한 과정은 ‘1995년 국제적인 중

간검토(Mid-term Global Review in 1995)’에서 검토되었다. 또한, UNCTAD는 최빈개도국이 당면한 주요 개발관련 이슈들과 단기 예측 및 성장 전망을 다루는 최빈개도국보고서(Least-Developed Countries Annual Report)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UNCTAD는 최빈개도국들의 WTO 가입에 대한 지원, 상품의 다양화 및 위험 관리, 무역정책, 무역정보, 경쟁법 및 경쟁정책, 관세의 현대화 등을 포함한 기술협력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UNDP

UNDP는 최빈개도국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인적 자원의 강화, 정보네트워킹, 제도개발 등을 통해 무역 및 개발을 위한 역량을 건설하고, 둘째, 무역원활화, 기술이전, 품질관리 및 표준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WTO 등 국제기구나 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지역무역협정 등을 통한 시장접근 및 지역적인 그룹화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넷째, 민간 부문 즉 기업활동의 촉진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투명성 및 신뢰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다. ITC

ITC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및 관련 무역지원서비스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 및 시장 개발(Product and market development), 무역지원서비스의 개발(Development of trade support services), 무역정보(Trade information),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 국제적인 구매 및 공급 관리(International purchasing and supply management), 무역촉진을 위한 요구평가 및 프로그램 고안(Needs assessment and programme design for trade promotion) 등 6개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라. IMF

IMF는 세제개혁, 관세의 현대화, 무역자료, 소득세제 개혁 등을 통한 회계(fiscal)부문에 대한 기술지원, 환관리의 자유화 및 시장에 기초한 외환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통화 및 환업무(monetary and exchange affairs)부문의 기술지원, 자료수집, 처리, 검증, 수정, 통계자료, 통계의 보급 등에 초점을 맞춘 통계(statistics)부문에 대한 기술지원 등 3가지 주요 분야에서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최빈개도국들의 무역자유화 및 무역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마. World Bank

World Bank는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과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 IDA) 프로젝트, 신탁기금 프로젝트(Trust Fund Projects), 경제개발연구소의 활동(Economic Development Institute Activities) 등을 통해 최빈개도국들의 무역원활화를 도모하고 공항, 항구, 교통의 운영관리 및 수출가능한 제품 생산을 위한 역량 개선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5. WTO 차원의 개도국 지원에 대한 개도국의 입장

GATT체제 초기에 개도국들은 “산업화”를 토대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이른바 “수입대체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국제수지방어의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적극 지지하였다. 따라서, 개도국들에게 있어서 GATT체제의 기본 원칙인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시장개방 및 무역자유화조치는 자국의 이해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었다. 개도국들은 무역자유화가 국제분업화를 고착시켜 교역조건의 악화를 초래하고 선진국에 대한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며 자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개도국들의 무역정책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국제경제에 있어서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무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개도국들은 폐쇄적인 무역정책이 국내산업의 효율성 및 대외경쟁력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발전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은 수입대체정

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적극적인 수출장려정책으로 무역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그러한 무역정책의 전환은 다자체제내에서의 개도국의 입장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개도국들은 UR협상 당시 시장접근분야에서는 非호혜주의(non-reciprocity) 원칙에 입각하여 선진국의 일방적 특혜를 요구하기보다는 호혜주의(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시장개방을 통한 협상력의 증대 및 국익 확보를 지향하였다. 그 대신에 시장접근이외의 기타 분야, 예를 들어 선진국에 의한 기술지원 및 WTO협정 이행상의 유연성 등의 분야에서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WTO가 출범한지 5년이 경과한 지금, 개도국들은 UR협상에서 도입된 개도국 관련 S&D조항들을 통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규범적 측면에서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중 기술지원의 경우, 관련 조항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일반적이어서 형식에 그치거나 선진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협정상의 예외조치(예를 들어, 협정 이행을 위한 경과기간부여, 관세양허범위 축소)도 개도국의 필요에 완전히 부합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WTO의 개도국지원 조치가 원래의 취지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개도국이 각 분야별 WTO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S&D조항에 의거하여 개도국들에게 2000년 1월부터 TRIPs협정을 시행하도록 5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였으나,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수준 및 지적재산권보호체제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상기 경과기간내에 TRIPs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완전한 제도적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PS협정 및 TBT협정상의 S&D조항에도 협정 이행시 개도국들의 특수한 이익을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기술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독자적 기술력이나 재정능력만으로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한 국제 표준을 이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대한 시장접근확대, 특히 자신들의 주요 수출분야인 농산물과 섬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의 개방수준이 약속한 바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농산물의 경우에 선진국은 양극화

된 관세구조를 바탕으로 원재료보다는 가공품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동시에 관세할당 및 보조금지급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개도국 수출업자들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임으로써 개도국들이 실질적인 시장개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섬유 및 의복의 경우, 선진국들은 10년의 기한에 걸쳐 동 분야를 GATT규정에 통합시키기로 하였으며 쿼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쿼터제가 실제로 폐지된 품목은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세이프가드, 반덤핑 조치 및 특혜원산지 규정 등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개도국 제품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개도국들은 S&D조항을 비롯한 WTO 협정상의 개도국 지원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모든 S&D조항의 구체적인 이행약속으로의 전환, 반덤핑조치적용 제한, SPS협정이행시 개도국에 대한 융통성 부여, 섬유 및 의복에 대한 GATT체제내로의 완전편입, TRIMs와 TRIPs 협정 이행시 추가적 경과기간 부여,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지원에 대한 융통성 부여 등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개도국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원인 중, 개도국들의 WTO 체제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연설을 통해 개도국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의 의지로 미루어볼 때 WTO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4대 통상국들(Quad)도 무역과 관련하여 개도국에 대한 특혜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개도국 지원에 대한 WTO 차원의 노력은 더욱 힘을 신게 되었다. 1997년 10월 개최된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서 비롯된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의 도입은 WTO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기술지원조치의 뚜렷한 증가세를 가져왔고, 이러한 활동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4장에서 기술한 최빈개도국 지원에 대한 WTO의 새로운 제안에 따라 WTO 차원의 對개도국 지원은 더욱 적극적으

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제안을 통해 WTO는 최빈개도국들의 개발계획 및 빈곤감소를 위한 통합체제(Integrated Framework)의 중심전략으로 무역통합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특히, 금번 제안은 최빈개도국들에 대한 개별국가의 지원에 의해 진행중인 보완적인 활동 및 신탁기금(Trust Fund)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것은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통합체제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 국제무역센터(International Trade Center : ITC), UN 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UNCTAD), UN 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UNDP), 국제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 등 6개 핵심 국제기구의 수장들에 의해 2000년 7월 6일 채택된 공동 성명¹¹⁴에서 결정된 사항들의 이행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WTO 최빈개도국 소위원회가 채택한 동 제안은 IMF, UNCTAD, World Bank 등 핵심적인 6개 국제기구들로부터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최근의 일련의 조치들은 2001년 5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3차 UN 최빈개도국(LDC) 관련 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WTO 뉴라운드협상에 대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하는 WTO의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은 WTO 차원의 對개도국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WTO 체제에 대한 불신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WTO 비회원국인 19개 최빈개도국들의 WTO에의 조기가입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 WTO의 위상강화는 물론 앞으로 전개될 WTO 뉴라운드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에 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들을 다자무역체제의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각종 노력은 보다 안정되고 실질적인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이라는 대전제하에

114) WTO Document. *WT/LDC/SWG/IF/2*. 12 July 2000.

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국도 중심적인 위치에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물론이고 WTO 무역·개발위원회에 최빈개도국 지원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이미 통보(2000.1.26)한 바 있다. 이는 1997년 10월에 개최된 최빈개도국 무역개발을 위한 통합조치에 대한 고위급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써 WTO 무역·개발위원회에 제출한 통보내용을 통해 최빈개도국들의 주요 수출상품들에 대한 무관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동 통보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1월부터 최빈개도국들로부터 수입되는 HS 코드기준 80개 품목(주로 1차산품 및 경공업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수혜대상국가도 총 48개국에 이른다. 한국은 과거 개도국의 입장을 경험한 만큼 개발경험의 전수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는 개도국들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우리기업 및 상품의 對개도국 진출을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EU 등 개도국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多者體制를 보다 확고히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부표 1> 우리나라와 유사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1999년 기준)¹⁾

구 분 \ 국 가	한 국	멕시코	터어키	헝가리	이스라엘
인구 (천명)	46,480 (25) ^{b)}	97,365 (11) ^{b)}	65,546 (17) ^{b)}	10,076 (77) ^{b)}	6,101 (100) ^{b)}
면적 (km ²)	99,020 (108) ^{b)}	1,958,200 (15) ^{b)}	774,815 (37) ^{b)}	93,030 (110) ^{b)}	21,060 (150) ^{b)}
GDP 규모 (억달러)	4,069.4 (13) ^{b)}	4,749.5 (11) ^{b)}	1,883.7 (23) ^{b)}	483.6 (51) ^{b)}	990.7 (37) ^{b)}
GDP 성장률 (%)	10.7	3.7	0.4	4.5	2.0
1인당 GDP (달러)	8,755 (56) ^{b)}	4,878 (69) ^{b)}	2,874 (91) ^{b)}	4,799 (70) ^{b)}	16,237 (31) ^{b)}
수 출 (억달러)	1,436.9 (2.54%) ^{c)}	1,363.9 (2.42%) ^{c)}	265.9 (0.47%) ^{c)}	249.5 (0.44%) ^{c)}	257.9 (0.46%) ^{c)}
수 입 (억달러)	1,197.5 (2.07%) ^{c)}	1,486.5 (2.57%) ^{c)}	406.9 (0.70%) ^{c)}	279.2 (0.48%) ^{c)}	331.6 (0.57%) ^{c)}
무역수지 (억달러)	239.4	-122.6	-141	-29.7	-73.7
수출성장률 (%)	8.60	16.12	-1.43	8.67	12.18
수입성장률 (%)	28.38	13.52	-11.39	9.07	13.01
농산물 평균 양허관세율 ²⁾ (%)	62.2	42.9	64.0	22.0	74.9
GDP 대비 농업비중 (%)	5.0	5.0	15.8	5.7 ^{d)}	2.8
GDP 대비 광공업 비중 (%)	43.5 (31.8) ^{e)}	28.2 (21.1) ^{be)}	24.3 (14.6) ^{e)}	33.7 ^{d)} (24.7) ^{e)d)}	28.8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 (%)	51.5	66.8	60.0	60.6 ^{b)d)}	68.4
실업률 ³⁾ (%)	6.3	2.3 ^{d)}	7.3	7.0	8.9
2차 산업(공업) 노동력 비중 (%)	31.0	22.0	25.0	33.0	28.0
3차 산업(서비스업) 노동력 비중 (%)	58.0	53.0	36.0	59.0	69.0

주 : a) 동 통계표 중, 구분부문의 ()안은 기준단위를 의미.

b)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순위(ranking)를 의미

- c)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d) 1998년 기준.
- e) 제조업의 비중.

자료 : 1) 주로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1*. [Online] Available [http : //www.unctad.org](http://www.unctad.org)를 참조.

- 2) WTO, “Market Access : Unfinished Business,” *Special Report No. 6*, 2001 ; OECD, *Review of Tariff Synthesis Report*, 1999 ; UADA-ERS, *Profiles of tariffs in global agricultural markets*, 2001 등 참조.
- 3)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December 2001.
- 4) 이스라엘 중앙은행 데이터베이스(www.bankisrael.gov.il)

참 고 문 헌

- 강인수·채욱 外. 1998. 『경제통상론』. 서울 : 박영사.
- 고준성, WTO 상품무역규율체제, 「국제통상과 WTO법」, 아·사·연 법언론 연구총서 제5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6.
- 김성준, GATT 조문 해설, 「통상법률」, 법무부, 창간호, 1995.
- 김완순·한복연, 「국제경제기구론」, 박영사, 1998.
- 김종숙·민상기,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김학수, 「GATT 11조국 이행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신교역질서-분야별 내용과 시사점」, KIEP 정책연구 94-05, 1994.
- 박대식·김정호, 「농업 및 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박성재·김용택·황의식,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388, 1998.
- 서헌제, 「국제경제법 - 국제통상·통화규범 -(제2판)」, 율곡출판사, 1998.

- 서창배. 2001. 「WTO의 최빈개도국 기술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안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2001년 2월호).
- 서창배·윤진나. 2000.5. 「WTO의 對개도국 지원 노력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2000년 5월호.
-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일조각, 1997.
- 이영준, 「국제경제법론」, 법문사, 1997.
- 이은섭, 「국제통상법」,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9.
- 이재욱·임정빈·임송수·오세익·심영규, 「WTO 차기 농산물협상의 전망과 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연구보고서 C99-36, 1999.
- 이창재,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문제,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1.
- 이한기, 「신고 국제법강의」, 박영사, 1997.
- 임정빈, WTO 농업협정의 이행과 평가, 「UR 협정이행의 평가와 뉴라운드에 대한 대응」, KIEP, 정책세미나, 1999. 10.
- 장의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7.
-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8.
- 장효상, 「신고 국제경제법」, 법영사, 1998.
- 차동화,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황 및 제고방안, 「세계경제」 1999년 7월호, KIEP, 1999. 7.
- 채욱, OECD 개요,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1.
- 채욱, OECD 가입의 의의 및 효과, 「OECD 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11.
-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1998.
- 최훈外譯. 1998. 『통상용어사전』. 서울 : 범신사.
- FAO 「농업생산연감(FAO Production Yearbook)」 1997.
- FA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개도국의 농업발전, 교역 및 식량안보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 「국제식량농업」, 제41권 제9호, 1999. 9.
- John H. Jackson, 「GATT 해설」, 한국무역협회 역, 한국무역협회, 1988.
- UNDP,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1997 - 빈곤퇴치와 인간개발」, UNDP 한국대표부, 1998. 12.

- USDA-ERS, 개발도상국과 WTO 차기농산물협상, 「국제식량농업」 제41권, 제3호, 1999. 3.
- A. A. Fatouros, Developing States, in: R. Bernhardt(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 1986.
- C. Michalopoulos. 1999. *Trade and Development in the GATT and WTO : the Role of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 EU Presse 61-G(6506/01). *DUTY-FREE ACCESS FOR LDC : "EVERYTHING BUT ARMS" PROPOSAL* (http://www.insidetrade.com/secure/pdf2/2001_09_53.pdf).
- FAO, "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Strategies towards 2010," 1997.
- IM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Developments, Prospects, and Key Policy Issues(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September 1998.
- IMF,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IMF: Washington, DC), October 1998.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9.
- Inside US Trade. 2001.2.26. *EU ADOPTS PHASED-IN PREFERENCES FOR POOREST COUNTRIES BY MAJORITY VOTE* (http://www.insidetrade.com/secure/specials/sp022601_1.asp).
- Joachim Betz, Developing Countries, in: R. Wolfrum(ed.), United Nations: Law, Policies and Practices, Vol.1,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5.
- M. J. Trebilcock & R. Howse, Trade and Developing Countries, in: Robert Howse(ed.), The World Trading System, Vol. I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8.
- Murray Gibbs. 1998.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UNCTAD.
-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he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Vol.2, The American Law Institute(ST. PAUL, MINN.: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87.
- S. K. Chatterjee, International Law of Development, in: R. Bernhardt(ed.),

-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 1986.
- Stephen Zamora, Economic Relations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Legal Order, Vol.1, ed. by Oscar Schachter & Christopher C. Joyner, The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Implementation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Issues for the Next Round of Agricultural Negotiations, 1997.
- UNCTAD *Documents*([http : //www.unctad.org](http://www.unctad.org)). *Varous Issues*.
- UNCTAD. 1998.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1998 Report : Overview*.
- UNCTAD. 2000.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000 Report*. [Online]
Available [http : www.unctad.org](http://www.unctad.org)
- UNCTAD. 2001. *Statistical Profile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New York and Geneva : United Nations.
- WTO Document (WT/COMTD/N/12). 2000.3.22.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Least-Develoed Countries, Notification from Korea*.
- WTO Document (WT/COMTD/W/66). 2000.2.15. *Concerns Regarding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Provisions in WTO Agreement and Decisions, Note by WTO Secretariat*.
- WTO Press Release 175 : WTO Press Release WTO's Preliminary Report on Trade Developments in 1999 and the Outlook for 2000. 2000.4.6
- WTO. 1999. *Introduntion to the WTO : Trading into the Future*.
- WTO. 2001.2.27. *Moore applauds free access for LDC exports by EU*, Press/212.
- WTO. *Analysis of the Legal Provisions relating to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under WTO Agreements, Secretariat paper for 1999 HLS on Trade and Development*.